



전국금속노동조합울산지부

12기 1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 회의자료 목차

- 대회사	04
- 격려사	05
- 상징마크	06
- 선 언	07
- 강 령	08
- 금속노조가	09
- 총파업투쟁의 노래	10
- 금속노조울산지부 대의원 명단	11

| 안건자료

안건1. 11기 2년차 사업평가(안) 및 결산보고 승인 건	23
안건2. 12기 1년차 사업계획(안) 및 2022년 임단협 투쟁 방침 승인 건	73
안건3. 12기 1년차 사업예산(안) 승인 건	131
안건4. 금속노조 12기 1년차 중앙위원 선출 승인 건	139
안건5.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 승인 건	143
안건6. 규약 개정 건	153
안건7. 지부 감사위원 선출 건	157
안건8. 투쟁결의문 채택 건	161
안건9. 기타안건	163

대의원대회 진행순서

1부 기념식	감사 영상	사회자
	노동의례	사회자
	대회사	지부장
	격려사	윤장혁위원장 (영상)
	축사	진보정당울산광역시당 위원장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모범조직, 모범조합원 시상	사회자
	금속노조가 제창	전체

2부 기념식	영상상영	전체
	개회선언 및 성원보고	의장
	서기 및 감표위원, 사찰지명	의장
	회순통과	의장
	안건토론	의장
	결의문 낭독	전체
	폐회선언	의장

대회사

대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노동중심의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는 동지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장
최용규

대의원 동지 여러분!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20년 역사에 이제

칠천 삼백 대오로 거듭났습니다. 모두 동지들의 단결과 연대투쟁으로 이뤄낸 소중한 결과입니다.

오늘 정기대의원대회는 작년 사업을 평가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투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의원 동지들의 치열한 토론과 지혜를 모아서 사업계획과 투쟁이 힘있게 결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울산지부 지회에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한 노동악법 때문에 모비스 전동화지회 동지들이 모진 탄압을 뚫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여전히 작년 임금교섭을 매듭짓지 못하고 천막농성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신한중공업지회에도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지회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고강 알루미늄지회에서 타임오프제를 비롯한 민주노조의 씨를 말리려는 횡포가 자행 되고 있습니다. 모두 울산지부가 단결투쟁하여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금속노조는 올해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인 산업전환을 저지하고자 노동중심 산업전환 20만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사시켜 노정교섭을 쟁취해야 합니다. 울산지부는 그동안 거침없는투쟁과 정면돌파로 조직확대는 물론 단결과 연대투쟁의 모범을 창출했습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2022년! 울산지부답게 투쟁합시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확산에서도 확인하듯이 대한민국 사회는 불평등만 심화되고 노동자민중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별노조와 민주노총을 앞세워 불평등을 갈아 엮는 투쟁을 일상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노동자정치세력화로 지방선거에서 진보정치의 승리를 일궈내야 합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울산지부의 힘은 동지들과 현장에서 발현됩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동지들과 조합원들의 힘을 믿고 힘차게 투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울산지부답게 투쟁하고 또 승리하는 2022년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2022년 3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장 최용규

격려사



12기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윤장혁

지부 대의원동지 및 조합원 여러분!

2022년 20만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는 굳센 의지로 동지들께 인사드립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윤장혁입니다. 투쟁!!

대의원 동지여러분!

코로나한파가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욱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한파로 인해 노동자들과 중소·영세·소상공인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가파른 상승세이며, 청년 체감 실업률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만해도 43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다 중대재해로 사망하였습니다.

한국사회의 모습이 이렇게 처참한데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나선 보수양당 후보들은 민중들에 요구는 멀리하고 서로 누가 더 나쁜 대통령인지 경쟁을 하고 있으며, 자본들에게 얼마나 더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야만적 사회를 금속 노동자들의 힘으로 바꾸어 냅시다.

2022년 금속노조는 정권과 자본이 예상할수 없는 강력한 20만 총파업을 준비할 것입니다. ‘노동중심 산업전환’, ‘재벌중심 독점체제 불평등 타파’,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노조 할 권리’를 쟁취해 나갈 것입니다. 투쟁을 통하여 노정교섭을 쟁취하고 재벌중심 산업전환이 아닌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만들어 갈것입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대의원대회가 2022년 힘있는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조와 지부, 지회가 하나 된 힘으로 나아갈 때 2022년 승리는 바로 우리 앞에 와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언제나 투쟁하는 자리에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징마크



깃발을 움켜진 주먹을 기어로 받치고 있는 모습은 금속노동자의 노동과 삶에 뿌리 박고 선 산별노조를 만들고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기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흰색은 민주노조운동이 담고 있는 순수한 뜻과 열정을 뜻하며, 청색은 질푸른 우리나라 하늘과 동해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사랑으로 동지들을 끌어 안는 통큰 단결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자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생산의 주역으로서 금속산업 발전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또한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 구조, 외세와 맞서 한국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서 투쟁해 왔다.

우리는 선배 노동자들의 단결의 정신과 불굴의 투쟁의지를 이어 받아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금속노조를 힘차게 세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삶을 지키기 위해 예속과 차별, 빈곤의 확산을 가져오는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며, 이 땅의 민중, 진보세력과 굳건히 연대하여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사회, 억압과 차별이 철폐된 평등사회, 남북이 하나 된 통일조국 건설에 앞장 설 것이다.

【조직】우리는 임시·비정규·여성·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며 차별철폐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의 강화·확대를 위해 투쟁한다.

【노동조건】우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확보, 고용안정,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확보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한다.

【협약】우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속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산별협약을 쟁취하고 노동의 소유·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평등사회】우리는 초국적 자본과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수의 빈곤을 기반으로 소수의 부를 보장하는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평등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여성】우리는 운동과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각종 성차별제도의 철폐와 모성보호,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문화】우리는 노동과정에서 발전해온 문화전통을 이어받아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문화의 확산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환경】우리는 환경이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전 계급계층이 향유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며, 자본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환경친화적 사회발전을 위해 투쟁한다.

【국제연대】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가 간 예측과 불평등, 그 어떤 명분의 전쟁에도 반대하며, 신자유주의 타파를 위해 투쟁한다.

【정치세력화】우리는 노동자중심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노동자·민중의 정당강화를 통해 노동자·민중정권 창출을 위해 투쟁한다.

【통일】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김호철 글, 곡



2022년 울산지부 보급곡

총파업투쟁의 노래

글,곡 김호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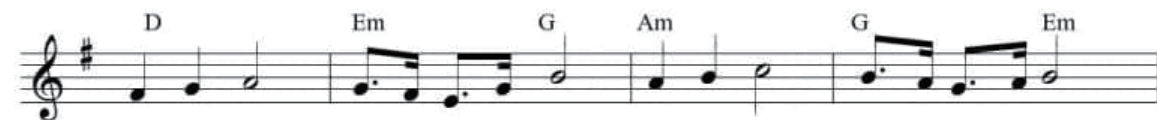
기 계 를 모 두 멈춰라 파업에 깃발을 걸라 암
권에 경고하나니 역사를 거역치 마라 우



제에 깃이겨진 노동자 그 가슴으로 정



리는 민주노조 깃발아래 한다면 한



자본의 돈을 따라 세상은 춤추고 있다



민중의 생존을 위해 노동해방을 위해



1.총 파업 투쟁이여 온누리에 불타들라라

2.총 파업 투쟁이여 희망차게 솟아올라라



1.잔악한 자본의 심장을 향해

2.내 조국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지부 대의원 명단

순번	소속	이름
1	지부장	최용규
2	고강알루미늄지회	이상원
3	고강알루미늄지회	권석진
4	고강알루미늄지회	김용득
5	고강알루미늄지회	최민중
6	대흥공업지회	황양규
7	대흥공업지회	허대영
8	대흥공업지회	고일권
9	대흥공업지회	김명수
10	두울지회	유재룡
11	두울지회	신민서
12	두울지회	이태희
13	두울지회	천은실
14	두울지회	박춘애
15	두울지회	황현선
16	두울지회	이인수
17	두울지회	민기만
18	두울지회	
19	부국산업지회	이용훈
20	부국산업지회	양애경
21	부국산업지회	백주호
22	부국산업지회	김동일
23	부국산업지회	김정환
24	부국산업지회	한은미
25	부국산업지회	박노식
26	부국산업지회	박윤희
27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명우
28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김광곤
29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이만호
30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이병훈
31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임정원
32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황주철
33	센트랄모텍울산지회	송기호
34	센트랄모텍울산지회	박승호
35	센트랄모텍울산지회	노창길
36	센트랄모텍울산지회	안두환
37	센트랄모텍울산지회	김재정
38	센트랄모텍울산지회	김민혁
39	정명지회	박춘성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40	정명지회	
41	정명지회	
42	한국ITW울산지회	배복한
43	한국ITW울산지회	진용호
44	한국ITW울산지회	양준옥
45	한국ITW울산지회	서홍주
46	대륙금속지회	김수현
47	대륙금속지회	김정구
48	대륙금속지회	임재언
49	대륙금속지회	김동수
50	대륙금속지회	김병기
51	말레동현울산지회	김민기
52	말레동현울산지회	김영미
53	말레동현울산지회	김미혜
54	말레동현울산지회	황수환
55	말레동현울산지회	김우람
56	말레동현울산지회	양현민
57	말레동현울산지회	박민석
58	서진산업지회	정호근
59	서진산업지회	이의종
60	서진산업지회	성상현
61	서진산업지회	김진영
62	서진산업지회	신동석
63	서진산업지회	강범수
64	서진산업지회	김성진
65	서진산업지회	정상민
66	서진산업지회	이종문
67	서진산업사내하청울산지회	손한락
68	서진산업사내하청울산지회	정선우
69	서진산업사내하청울산지회	윤진철
70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전승환
71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김원석
72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김재문
73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이경덕
74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이재규
75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최민준
76	현대모비스물류지회	안상호
77	현대모비스물류지회	김경민
78	현대모비스물류지회	이진기
79	현대모비스물류지회	김성오
80	현대모비스물류지회	
81	현대모비스물류지회	
82	현대모비스물류지회	
83	현대모비스물류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84	현대모비스물류지회	
85	현대모비스전동화지회	오혁진
86	현대모비스전동화지회	정의도
87	현대모비스전동화지회	홍준영
88	SHB사내하청지회	김태훈
89	SHB사내하청지회	윤정길
90	SHB사내하청지회	한동기
91	SHB사내하청지회	박세현
92	SHB사내하청지회	신동림
93	SHB사내하청지회	우승협
94	덕양산업지회	김병훈
95	덕양산업지회	김옥철
96	덕양산업지회	엄재학
97	덕양산업지회	권혁준
98	덕양산업지회	화상진
99	덕양산업지회	이봉인
100	덕양산업지회	양창석
101	덕양산업지회	정우철
102	덕양산업지회	장태철
103	덕양산업지회	김회근
104	덕양산업지회	박영걸
105	덕양산업지회	최우영
106	덕양산업지회	권영환
107	덕양산업지회	류양인
108	덕양산업지회	안재성
109	덕양산업지회	김대열
110	덕양산업지회	
111	덕양산업지회	
112	덕양산업지회	
113	덕양산업지회	
114	덕양산업지회	
115	덕양산업지회	
116	덕양산업지회	
117	덕양산업지회	
118	덕양산업지회	
119	덕양산업지회	
120	덕양산업지회	
121	덕양산업지회	
122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임송라
123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김태균
124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박기근
125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북한식
126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정종만
127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김미옥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128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차정훈
129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이상봉
130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장용민
131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김주원
132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윤현하
133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김돈현
134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이동은
135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정도영
136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정현우
137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이정한
138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이정희
139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김명수
140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이진욱
141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김기훈
142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정윤재
143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김진동
144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하태공
145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지현주
146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김성준
147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진성환
148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박영진
149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김대영
150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정민휘
151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박성진
152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선원빈
153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서준식
154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안홍정
155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오세용
156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김승배
157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우승우
158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이현진
159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홍중기
160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김형수
161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이현식
162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정동우
163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문창권
164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박승규
165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김용진
166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손양익
167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원혁진
168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임태환
169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김영훈
170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171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172	세종공업지회	박영태
173	세종공업지회	남동열
174	세종공업지회	이상용
175	세종공업지회	차귀재
176	세종공업지회	오경교
177	세종공업지회	박월영
178	세종공업지회	심문보
179	세종공업지회	김영창
180	세종공업지회	김태경
181	세종공업지회	박희승
182	세종공업지회	신행국
183	세종공업지회	박기덕
184	세종공업지회	박병일
185	세종공업지회	남성호
186	세종공업지회	임성효
187	세종공업지회	김선주
188	세종공업지회	
189	세종공업지회	
190	세종공업지회	
191	세종공업지회	
192	세종공업지회	
193	세종공업지회	
194	서연이화지회	이영석
195	서연이화지회	차흥우
196	서연이화지회	강성학
197	서연이화지회	신미진
198	서연이화지회	박찬상
199	서연이화지회	임미숙
200	서연이화지회	김민욱
201	서연이화지회	박동준
202	서연이화지회	김종해
203	서연이화지회	장병구
204	서연이화지회	윤영선
205	서연이화지회	이평호
206	서연이화지회	노영호
207	서연이화지회	남만희
208	서연이화지회	손희숙
209	서연이화지회	박용규
210	서연이화지회	김명곤
211	서연이화지회	김대희
212	서연이화지회	박한용
213	서연이화지회	구영모
214	서연이화지회	최정호
215	서연이화지회	박상혁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216	서연이화지회	박수민
217	서연이화지회	
218	대호물류지회	박상훈
219	대호물류지회	권순표
220	대호물류지회	김찬엽
221	대호물류지회	김영하
222	한국프랜지지회	엄태응
223	한국프랜지지회	최병일
224	한국프랜지지회	김준호
225	한국프랜지지회	최용재
226	한국프랜지지회	안계수
227	한국프랜지지회	김정종
228	한국프랜지지회	전조환
229	한국프랜지지회	명계순
230	한국프랜지지회	김국남
231	한국프랜지지회	박태경
232	한국프랜지지회	동방춘
233	한국프랜지지회	이달희
234	한국프랜지지회	김종천
235	한국프랜지지회	정호엽
236	현대제철울산지회	신동원
237	현대제철울산지회	권순목
238	현대제철울산지회	심길우
239	현대제철울산지회	이태호
240	현대제철울산지회	김문준
241	현대제철울산지회	최승명
242	현대제철울산지회	김현수
243	현대제철울산지회	손동진
244	현대제철울산지회	박재우
245	현대제철울산지회	김진영
246	현대제철울산지회	김현우
247	현대제철울산지회	이창형
248	현대제철울산지회	조동일
249	현대제철울산지회	정해룡
250	현대제철울산지회	박인호
251	현대제철울산지회	이호중
252	현대제철울산지회	구재영
253	현대제철울산지회	김형욱
254	현대제철울산지회	박성진
255	현대제철울산지회	
256	현대자동차보안지회	박진현
257	현대자동차보안지회	허성재
258	현대자동차보안지회	최정태
259	현대자동차보안지회	김용진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260	현대자동차보안지회	서인철
261	현대자동차보안지회	권용국
262	현대자동차보안지회	김성일
263	울산현대모비스지회	박유종
264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이기준
265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정지원
266	울산현대모비스지회	홍성호
267	울산현대모비스지회	김동연
268	울산현대모비스지회	김세광
269	울산현대모비스지회	백순범
270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신은호
271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조훈진
272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천재현
273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이강령
274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임균엽
275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정귀동
276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서현동
277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엄준호
278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최혁
279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정성윤
280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정대훈
281	울산현대모비스지회	김상완
282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정혜영
283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유태규
284	울산현대모비스지회	강성현
285	울산현대모비스지회	김주현
286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지승환
287	울산현대모비스지회	박용원
288	울산현대모비스지회	김지환
289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우병룡
290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장승우
291	울산현대모비스지회	
292	현대모비스울산지회	함형길
293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장기용
294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조현기
295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최규용
296	현대모비스울산지회	하효동
297	현대모비스울산지회	김훈
298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이동현
299	현대모비스울산지회	한상원
300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최승모
301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최병현
302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윤종현
303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이광교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304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최종훈
305	현대모비스울산지회	김수웅
306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차상욱
307	현대모비스울산지회	김정민
308	현대모비스울산지회	
309	현대모비스울산지회	
310	현대모비스울산지회	
311	현대모비스울산지회	
312	현대모비스울산지회	
313	동남지회	최병호
314	동남지회	최문우
315	동남지회	정세훈
316	동남정밀지회	김민근
317	동남정밀지회	김경민
318	동남정밀지회	심정환
319	동남정밀지회	강원구
320	동남정밀지회	신재식
321	동남정밀지회	이용희
322	동남정밀지회	이재림
323	동남정밀지회	김영훈
324	동남정밀지회	최석원
325	동남정밀지회	박정모
326	동남정밀지회	김태혁
327	동남정밀지회	정병윤
328	동남정밀지회	
329	신한중공업지회	황덕기
330	신한중공업지회	이해진
331	신한중공업지회	한경문
332	신한중공업지회	김형수
333	한주금속지회	임종환
334	한주금속지회	박현열
335	한주금속지회	최진혁
336	한주금속지회	김희성
337	한주금속지회	현지호
338	한주금속지회	김경식
339	한주금속지회	고을석
340	한주금속지회	
341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양승열
342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이영호
343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김혜련
344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김태선
345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송용숙
346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박유미
347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강경임

348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349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350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351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352	서연씨엔에프지회	윤성만
353	서연씨엔에프지회	최휘
354	서연씨엔에프지회	김한일
355	서연씨엔에프지회	이재민
356	서연씨엔에프지회	김지윤
357	서연씨엔에프지회	김세연
358	서연씨엔에프지회	노도원
359	서연씨엔에프지회	김대용
360	에스아이씨지회	이종근
361	에스아이씨지회	정기원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 안건1. 11기 2년차 사업평가(안) 및 결산보고 승인 건
- 안건2. 12기 1년차 사업계획(안) 및 2022년 임단협 투쟁 방침 승인 건
- 안건3. 12기 1년차 사업예산(안) 승인 건
- 안건4. 금속노조 12기 1년차 중앙위원 선출 승인 건
- 안건5.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 승인 건
- 안건6. 규약 개정 건
- 안건7. 지부 감사위원 선출 건
- 안건8. 투쟁결의문 채택 건
- 안건9. 기타안건

안건1 11기 2년차 사업평가(안) 및 결산보고 승인 건

1) 제출된 '11기 2년차 사업평가(안)을 심의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11기 2년차 결산감사' 보고를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기 2년차 울산지부 사업 평가(안)

I. 총괄평가

1. 11기 1년차 사업 및 투쟁 계획 수립 개요

- 코로나 19 팬데믹 2년차, 울산지부는 방역 차원에서 2021년 3월 8일(월), 현장 10곳에 분산하여 11기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이 △2021년 사업방향과 목표, △2021년 임-단협 투쟁 △부서 및 위원회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1) 2020년 사업 방향과 목표

1. 재벌개혁 투쟁, 구조조종 분쇄 및 민주노조 사수
2. 미조직 조직화 사업 전면화
3. 교육체계 혁신 및 교육사업 전면화
4. 반미 반제 자주화 및 자주 통일 투쟁
5. 2022년 대선투쟁 토대 마련 및 정치세력화
6. 안전하게 일할 권리,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쟁취 투쟁
7. 금속노조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2) 2021년 단체교섭 투쟁기조

첫째,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임금동결 복지축소와 임금체계 개악을 저지하고 생활임금 쟁취 투쟁으로 울산지부 조직력을 강화한다.

둘째, 중앙교섭 집단교섭 미 참여 사업장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중앙교섭 집단교섭 참가와 공동투쟁의 토대를 마련한다.

셋째, 현대자동차 재벌을 압박하는 공동투쟁으로 가이드라인을 분쇄한다.

2. 11기 2년차 사업 및 투쟁 총괄평가

1) 총괄평가

- 울산지부는 2021년 시작을 11기 1년차 울산지부 투쟁을 복기하며 코로나 19의 악조건 속에서 힘차게 투쟁해 온 지회 간부들의 결의를 드높이기 위해 지회 상집간부 교육사업(‘간부의 길’)부터 힘차게 진행하였다. 하지만 전체 지회 상집간부교육을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 모든 현안과 투쟁들이 코로나 19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문재인 정부는 언론 등을 통해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금속노조의 투쟁 포기를 종용했지만 울산지부는 2021년 완강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한국사회 불평등체제를 타파하고 사회 대전환기, 노동이 주도하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을 상반기부터 원기왕성하게 결의하였다. 지부운영위원회 총파업 교육(양경수위원장)을 통해서 정세의 엄중성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고 조합원 총파업 교육과 현장조직화 투쟁을 전개하며 10/20 불평등 세상을 멈추는 총파업 투쟁에 적극 복무하였다.
- 5.1절 시청 금속노조 울산지부 결의대회, 7/21 금속노조 1차 총파업, 10/20 민주노총 총파업, 11/13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울산지부는 정면돌파 돌격정신의 구호를 전면에서 들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파업지침을 완수하였다.
- 현대제철울산지회와 정명지회의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수차례의 울산지부 결의대회를 통해서 각 지회 간부대오의 힘찬 연대투쟁은 그야말로 코로나 19의 악조건 속에서 정면돌파 투쟁정신을 높여 투쟁제일주의 울산지부의 면모를 과시한 2021년이라 평가할 만하다.
- 11기 2년차 미조직 조직화 사업에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2021년 5백 7천 조합원을 시작한 울산지부는 지난 1년 동안 **15개조직**[동남정밀지회, 센트랄모텍울산지회, IHC지회, 두울지회, 동남지회, 부국산업지회,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대호분회, 정면분회, 정원분회, 제이피아이분회, 서광분회, 싸아이엠분회, 비케이분회, 에프유분회, 오에스분회), **1400여명**의 조합원을 조직하여 7천 대오를 넘어 울산지부 1만 시대를 구체적으로 전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미조직 조직화 과정에 지회단위의 조직사업이 어느 해 보다 큰 성과를 낸 한 해 였다.
- 신규노조 창구단일화 기간, 전개된 민주노조사수, 노조안착화를 위한 울산지부 전체 지회 간부 동지들의 헌신적인 연대투쟁은 3월부터 11월까지 가열차게 전개되었으며 이는 신규노조 안정화의 성과로 이어졌다.
- 울산지부는 진보정당 및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 공동후보로 출마한 4.7 남구청장 재보궐선거 투쟁에서 상반기 정치위원회를 적극 발동하여 울산지부 조합원 중 남구 유권자 1천여명

이 시민동행동 회원으로 가입하여 선거투쟁을 전개하였다. 결과적으로 기득권 거대 양당정치 심판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진보정당,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단결해서 선거에 대응했다는 점과 이러한 단결의 기운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진보정당들의 단결을 실현하는데 분명한 성과를 발휘할 것이다.

- 자주통일사업에 있어서 울산지부 통일담당 임원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통일위원장을 결의하면서 울산지역 통일운동에 금속노조울산지부가 그 역할을 가일층 드높였다. 11기 1년차에 이어 2년차에도 지역통일선봉대의 주도적으로 참가하였고, 성주사드투쟁, 월례강연과 월별실천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울산지부 통일역량을 신장시켰다.
- 지부 조직과 조합원이 배가 되는 가운데 조합원들의 계급성과 연대성, 투쟁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사업 체계를 명확히 세우지 못한 한계가 뚜렷하다. 울산지부 1만 시대 완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시점에서 간부교육 및 조합원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지부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높여야 할 과제가 나선다. 뿐만아니라 신규조직 조합원들이 20,30세대들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지부 청년위원회 신설 같은 조직 체계적인 과제와 더불어 청년노동자들의 정서를 감안한 혁신적인 선전방법 즉 유튜브 영상, SNS 활용등 청년세대에 친화적인 선전물제작과 공급망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1만시대를 준비하는 지도집행력 강화 사업에서는 지부간부의 부족문제가 두드러지게 제기되었다. 임원과 집행간부의 수적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과중 부분은 당장은 지부 임원 및 지부집행간부의 역량을 더욱 더 높여야 하고, 지부간부 양적인 부분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지부규정개정을 통한 임원 확충과 더불어 지부간부확충에 조직적인 대안 다시말해 재정적 한계가 분명한 가운데 각 지회에서 지부간부역량을 보충하는 현실적인 과제를 실현해야 한다.
- 조합원의 치료받을 권리 쟁취를 위한 산재보험제도 개선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였다. 금속노조의 조직적 방침으로 조합원의 산재 신청에 따른 적기에 치료받을 권리와 산재노동자들이 생존권 문제, 산재신청으로 인해 사직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울산지부-지회 노안담당 간부들이 85일간 헌신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로인해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서 사용자 의견서 제출을 법으로 삭제시키는 등 산재처리 기간을 2달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금속20주년 기념사업으로 곡 창작과 합창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가사공모를 시작으로 곡 창작에 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19상황과 안정적으로 전국 노동자대회를 준비할 수 없는 조건에서 합창 공연은 무대에 올리지 못하였나 뮤직비디오와 메이킹 영상제작으로 성과를 남겼다. 지부규모가 커진 조건에서 규모있는 집단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과 상시적인 진행방식에 대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Ⅱ. 2021년 임단협 교섭 및 투쟁 방침 평가

- 조합의 방침에 복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금속노조 총파업에 적극 복무하였고, 통일 요구(산업전환협약)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다.
- 여전히 현대자동차 협력사 및 유관한 사업장에 대해 현대자동차 그룹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년 이 연결고리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배치해 왔고, 2021년에는 코로나 19가 그어 놓은 투쟁의 가이드라인까지 겹쳤지만, 현대자동차 정문에서 원정에 대한 타격을 목적으로 한 집회를 조직, 전개하였다.
- 현대자동차재벌을 압박하는 투쟁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미참여 단위에 대한 조직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앙-지부-지회로 힘을 모으는 산별강화의 원칙을 기본 확인하였으나 강도 높게 조직 실현하지는 못했다. 신규 노조에서 일부 성과를 내어 오긴 하였으나, 2022년 단협에서는 금속산별 강화라는 기본원칙에 대해서 내용적 합의정신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토론을 조직하고, 선언적인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에 참가를 넘어, 지회단위에서 요구되어지는 의제를 찾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IV. 부서 및 위원회 사업평가

【 조직부 】

1.사업목표 및 방향

1)6천 조합원시대를 선도할 능수능란한 지도부 역량 강화

○일심단결의 구심으로 지부 관장력 강화

○특성별 구별 지회 블록화 담당 임원제 실시

2)6천 조합원과의 원활한 소통 강화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한 간부혁신운동

○면대면 1:1 방식의 조합원 소통

3)일사불란한 지도체계 확립

○지부 및 지회 회의체계의 혁신 : 회의 - 교육 - 실천

○지부의 일상적인 지회간부 대상으로한 간담회 및 교육 지도체계 강화

4)조직력강화, 투쟁력강화

○2021년 지부 슬로건, 주구호, 보급투쟁가 선정

○2,000대오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조직으로 지부 조직력, 투쟁력 총화

5)지부 조직쟁의부 강화

○전투적 선봉대로서의 조직쟁의부 성격 강화

○지부 조직부 차장제 안착화

-각 지회 조직부장 단체티셔츠, 정면돌파 모자 지급하여 조직쟁의부의 집단적 기풍 도모

6)집회문화혁신

○코로나시대 새로운 집회 방식 실시

○조합원 참여형 집회문화 개발

2.사업계획

1)6천 조합원시대를 선도할 능수능란한 지도부 역량 강화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임원, 집행부 트레이닝 캠프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소통하는 간부, 투쟁하는 간부, 학습하는 간부

○지회별 상집회의, 확대간부회의 및 수련회의 간담회 정례화

-지회별 요청에 따라 간부교육안 선동법 <선동하라!>, <간부의 길-참 고달프기도 하지 만 보람찬 여정> 순회교육을 통해 노동조합간부 지도역량 강화에 복무

- 정면돌파 구호 및 투쟁보급곡 교육을 통해 울산지부 집단적인 투쟁기풍 확립에 복무

2)6천 조합원과의 원활한 소통 강화

○특성별 구별 지회 블록화 담당 임원의 현장순회 방식 개선

○중식선전전후 쌍방향 소통을 위한 조합원 간담회 정식화

： 지부 교육선전부와 연계하여 쌍방향 소통의 결과 전달의 장으로 활용

-조직부 소통망을 이용하여 금속노조의 투쟁방향, 울산지부 각 지회의 투쟁소식, 지역투쟁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전파함

-지역별 조직부회의, 찾아가는 조직부회의, 차장회의를 통해 월 1회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함

3)일사불란한 지도체계 확립

○통일적인 지침 및 교육 전달 체계 확립

： 지부운영위원 - 지회의 부서회의 및 확대간부회의 - 조합원

○지부 운영위원회 지침 및 교육안 연구

： 슬로건, 선동, 정세, 지침

-47개 지회 분회 조직부장이 망라되어 있는 SNS소통방을 적극 활용함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조합원에게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조직부장단 소통을 통해 정세, 지침, 슬로건 전파에 노력함

4)조직력강화, 투쟁력강화

○2021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역대 최대의 조직화로 조직력을 총집결

： 목표 조합원 30% 조직 (또는 2,000명)

○2021년 지부 슬로건, 투쟁구호, 보급투쟁가 선정 보급

： 2021년 공식 슬로건 - 또다시 정면돌파!

： 2021년 보급 투쟁구호 - 거침없는 돌격으로 기필코 승리하자 (민주노조 사수하자)

： 2021년 보급 투쟁가 -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간부혁신운동의 시범 실천활동 지정후 시범실시

： 지부운영위원회 지침 해설 - 지회상집회의(확대간부회의) - 조합원 조직화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 1/4분기내 서명운동(청원운동)등 시범 실천활동 선정후 100% 조직화 목표달성

-코로나 시기지만 철저한 방역지침 아래 5.1절 시청 금속노조 울산지부 결의대회, 7월 21일 금속노조 1차 총파업,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11월 13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금속노조 울산지부의 정면돌파 돌격정신으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파업지침 완수

-사무처 간부 총 12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투쟁으로 정면돌파

5)지부 조직쟁의부 강화

○조직부 차장 선정 및 조직부 차장회의 정례화

○투쟁속에서 실천하는 조직쟁의부 활동 정형 정착

: 회의와 학습, 투쟁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정기회의

○정면돌파 선봉대 구성

: 지부 조직쟁의부를 중심으로 집회시마다 필요시 확대 조직 운영

○조직쟁의부의 정면돌파 선봉대로서 전투적 기풍 확립

: 강한 규율 동지애로 결속된 선봉대

: 정면돌파 선봉대 상징화 단체 투쟁물품 보급

: 실천력 배가 트레이닝 - 기수 열병식, 강력한 선동, 칼같은 몸짓

○2021년 지부 슬로건, 투쟁구호, 보급투쟁가 USB 제작 보급

-월 1회 회의 및 교육과 투쟁 실천을 병행하면서 노동조합 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전투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실천속에서 단련되는 조직부회의로 정착화 시킴

1차회의	간부의 길 (이한별)	6차회의	지회별 출정식 운영법(이한별) 합창과 깃발춤 교육 (정영순)
2차회의	투쟁보급극 배우기 (조일래) 선동하라! (이한별)	7차회의	7/21총파업 붉은깃발 문선 연습
3차회의 (수련회)	선동법 이론과 실제 (이한별) 선동몸짓 배우기	8차회의	금속노조 20주년 대합창 무비 깃발춤 연습 (정영순) 집회 사회 이론 교육(이한별)
4차회의	집권을 위한 노동운동 (윤장혁)	9차회의	센트랄모텍 파업 연대 준비
5차회의	출정식 판짜기와 진행법 (이한별)	10차회의	평가와 단합

-서연씨앤에프사내하청분회 투쟁 연대, 요양보호사노동조합 연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연대등 조직부 자체로 지역 투쟁사업장 연대함, 센트랄모텍울산지회 총파업에 연대함

- 조직부의 정면돌파 선봉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단체티셔츠와 정면돌파 모자는 조직부장 동지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단결력을 도모하는데 기여함
- 투쟁보급곡 73곡을 담은 USB 보급을 통해 다양한 노동가를 각 지회(분회)에 보급하는 계기가 됨

6)집회문화 혁신

- 코로나시대의 새로운 집회방식 실시
- 조직력을 기반으로 지회별(구별) 분산집회 및 캠페인 방식 실시
- 시간차별 집회방식 제고
- 조합원 참여형의 집회 문화 프로그램 개발

- 코로나시대의 분산집회 및 캠페인 방식을 계획했으나 금속노조의 집단적 기풍에 맞게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집시법 방역법을 정면돌파하기로 하고 각종 결의대회 사수
- 파업시 총파업승리 깃발은 금속노조 울산지부의 상징이 됨
- 초대형 정면돌파 깃발은 지부와 지회의 투쟁의식을 복돋는 2021년의 상징이 됨
- 정면돌파 구호를 울산지부의 상징 구호로 도입하여 전파함
- 울산지부의 2020년 투쟁보급곡 <자!가자>와 2021년 투쟁보급곡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전국적인 투쟁가로 확산됨

(총괄평가)

코로나 방역을 등에 업고 위기를 조장하며 자본과 정권은 친재벌정책속에서 노동운동을 탄압하였다. 침체되고 움츠러든 노동운동의 정세속에서도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현대제철과 현대그린푸드, 등 현대자동차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요구가 분출되었던 시기다. 또한 서열업체의 무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분출시키며 금속노조로 집결했던 시기이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정면돌파의 슬로건 아래 거침없는 돌격정신으로 코로나 뒤에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조할 권리를 강탈하는 자본에 맞서 힘있게 투쟁하였다.

10여건이 넘는 집시법 위반 법적 구속을 정면으로 맞받아쳐가면서 조직력을 확대하면서 7,300 조합원이 되면서 8,000시대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금속울산 조직부는 정면돌파 선봉대임을 자임하면서 정연한 조직체계속에서 집단성과 전투성을 높여내고 단결하여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기풍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였다.

【문화사업평가】

1. 사업목표

- 자주의 시대, 직접정치운동의 시대에 발맞춰 현장주체문예운동의 실천적 활동을 준비할 토대구축
- 대중에 대한 정서적 감동, 감화력으로 문예를 통한 선전선동사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
- 금속노조 창립 20주년, 청년 금속노조를 상징하는 '청년 금속노동자의 노래'를 통해 전국노동자대회 조직

2. 주요 사업 평가

1) 문예아카데미(문예학교)

- 매체별 특성과 교육을 통한 임단협 시기 문화활동 지원 및 현장 문예활동의 기초를 만들고 자 기획단을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였음
- 울산지역의 노동자 문화 강사 역량을 준비, 발국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문예일꾼들의 네트워크 구성과 현장 주체 발굴 사업을 장기적으로 준비하고자 논의 진행
- 몇차례 기획회의를 통해 사전준비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나 금속노조 20주년 기념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하고 2022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함

2) 다양한 현장 문화사업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현장활동을 미리 준비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까지는 무리한 상황이었음.
- 임단투와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한 현장 활동에 대한 개입력을 가질 수 있는 문화사업 고민이 필요함
- 노동자 문화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업이 필요하겠음

3) 금속노조 20년, 20살 청년 금속노동자의 노래 대합창

- 금속노조 20주년 기념사업으로 곡 창작과 합창을 중심으로 진행함
- 가사 공모를 시작으로 곡 창작에 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진행하였음
- 합창단 모집사업을 진행하여 70여명의 합창단을 모집하여 연습을 진행하였음
- 코로나19상황과 안정적인 전국노동자대회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합창공연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되어 뮤직비디오와 메이킹 영상제작으로 진행함
- 코로나19 상황과 현장상황등으로 합창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생김
- 12월 말 최종 마무리 함
- 규모있는 집단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과 상시적인 진행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3. 총괄평가

- 전체 문화사업이 금속노조 20주년 대합창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금속2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에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부분적으로만 진행된 측면이 있음
- 노동자 문화사업에 대한 현장의 이해와 실제 적용을 강화하여 현실적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사업이 필요함
- 임단협상황과 현안 문제로 인한 현장 투쟁에 조합원과 함께하는 문화사업에 대한 고민과 실천방안이 필요함.
- 두울지회의 전조합원이 함께 만드는 파업 출정식의 방식과 내용을 좀 더 다듬어 전 사업장에 일반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노동자 문화사업의 이해를 높이는 방향에서의 사업이 필요하겠음

【교육선전부】

1. 사업목표

- 조합원 및 임원·간부 교육프로그램 통한 역량강화
- 교육선전부 역량강화
- 교육위원회 재가동
- 다양한 선전사업 진행으로 조합원과의 소통강화

2. 주요사업평가

- 1) 조합원 및 간부 교육프로그램 통한 역량강화
 - 상·하반기 정세 및 민주노총 총파업 성사를 위한 조합원 및 확대간부 교육과 간담회로 민주노총 총파업을 성사함.
 - 10월 1차, 2차 정치학교를 개최하고 50여명의 간부들이 참가하였고 정치학교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성격과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 간부로 한걸음 진전하였음.
 -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해 단발성 교육을 진행한 아쉬움이 있음.
- 2) 교육선전부 역량강화
 - 각지회 교육선전부장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망고보드등 교육선전담당자 회의를 통하여 실무역량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통하여 교육선전부장들이 직접 유인물을 제작하는 지회 및 분회가 늘었음.
- 3) 교육위원회 재가동
 - 11기2년차 동안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 교육위원회 구성이 안되면서 조합원 및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만들지 못함.
- 4) 다양한 선전사업 진행으로 조합원과의 소통강화
 - 지부홈페이지의 접근성이 떨어져 지부자체 페이스북페이지와 유튜브채널을 개설하였고, 이를 통하여 지부홈페이지 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지부소식을 알릴 수 있게되었다. 하지만 소재부족으로 다양한 내용을 담지 못하였다.
 - 목표로 했던 유튜브 뉴스와 격월로 발행하기로 하였던 울산지부 신문을 실행하지 못함.

3. 총괄평가

- 상·하반기 정세 및 총파업 교육을 통하여 민주노총 총파업과 전국노동자 대회를 힘차게 성사한 성과가 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착시키지 못하여서 시기별 단발성 교육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어

12기에는 교육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여야 함.

- 하반기 정치학교를 통하여 간부들의 역약을 강화하고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에 한발 전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 조합원 및 확대간부들과의 소통공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고, 유튜브 및 페이스북페이지에 올릴 소재개발팀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 노동안전보건위원회 】

1. 사업목표

- 1) 조합원의 치료받을 권리 쟁취를 위한 산재보험제도 개선
- 2) 전 조직적 중대재해 대응활동 및 근본적인 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투쟁
- 3) 지회 노동안전보건활동 참여확대 및 노동안전 현장활동 강화
- 4) 사업장 일상적인 안전보건 점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척결
- 5)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역량강화 및 지회 노동안전보건활동 집행력 강화
- 6) 전 사회적 노동안전보건 제도개선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 전개

2. 주요 사업평가

1) 조합원의 치료받을 권리 쟁취를 위한 산재보험제도 개선

금속노조의 조직적 방침으로 조합원의 산재 신청에 따른 적기에 치료받을 권리와 산재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 산재신청으로 인해 사직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1달 이내에 산재승인을 요구로 2월부터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 1인시위를 시작으로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 3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그림자시위, 4월 7일~6월 30일까지 울산근로복지공단 농성 및 출근, 중식, 퇴근투쟁을 전개하고,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산재지연 문제를 2022년 6월까지 2달 이내에 산재신청 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울산에서 85일간의 근로복지공단본부 농성기간 동안 울산지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안담당자, 지회 상근간부와 교섭위원들의 철농 및 주말 당직 농성, 출근 및 중식 선전 투쟁, 근로복지공단 결의대회,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한 공익감사청구에 1주일의 짧은 기간에 조합원 2,936명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산재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대로 적기에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투쟁에 복무하여 산재 지연처리 문제를 100% 요구를 관철하지는 못했으나,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서 사용자 의견서 제출을 법으로 삭제시키는 등의 산재처리 기간을 2달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 중대재해 대응 활동 및 근본적인 재해 예방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투쟁

울산지부는 금속노조 중대재해 대응 방침에 따라 울산에서 발생한 현대중공업 3건, 현대자동차 2건 중대재해 대응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1월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울산운동본부”차원으로 집행하였다.

금속노조의 중대재해 대응지침은 재해 발생 시 해당 지부는 2시간 이내, 조합은 12시간안에 긴급 노동안전보건위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재해원인 및 대응 투쟁을 즉각적으로 돌입하는을 원칙으로 한다.

울산지부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의 중대재해 대응 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재해원인 조사 시부터 결합하여 정권의 부실한 재해조사와 사업주와의 결탁,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은 동일 유사 중대재해 발생 중요 원인으로 기자회견, 항의면담과 고소·고발을 통한 사업주 구속요구 등 고용노동부를 강제하는 투쟁에 복무하였다.

제도개선 투쟁으로 2022년 1월 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사 1인시위 및 제정촉구 결의대회 지회 간부들이 참여하는 대시민선전전을 통해 국민 66%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동의하는 여론을 조성하여 비록 부족하지만 생명존중의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였다.

또한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구속촉구 투쟁에서 울산지부 조합원 3,654명이 서명하여 안전한 일터를 염원하는 조합원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 노안사업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는 지부산하 39개 사업장 중 3개지회를 제외한 35개지회(분회)가 위험성평가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조합원의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교육은 지부운영위원과 노안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서연이화 위험성평가 실행위원 및 현대글로벌비스 신규분회 노안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부분을 노사합동으로 실시하는 지회가 늘어나는 성과도 있지만, 여전히 회사주동의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위험성 평가를 노동조합 주도의 내실을 기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3) 지회 노동안전보건활동 참여확대 및 노동안전보건활동 강화

지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회의체계의 안정화를 구축하였으며, 단위지회 노안담당자들의 역량강화와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중점에 두고 집행해왔다.

이는 노안사업의 집행체계는 확립되어 가고 있지만, 노안담당자들의 활동시간 확보 등 집행력을 확대 강화시켜 나아가야 할 과제를 또한 가지고 있다.

4) 사업장의 일상적인 안전보건 점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척결

자동차부품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지부 산하 사업장 동일 업종에 다한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상시적인 활동을 중점에 두고 진행하였다.

노안담당자들의 활동시간이 보장된 사업장은 월 1회 이상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만, 활동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장은 담당부장의 헌신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현장 안전점검 시 법규위반 사항 발견 시 즉각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고소·고발까지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노사관계가 아님을 선언해야 한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노사간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그동안 소수지만 관행적으로 안전문제를 교섭의 흥정대상으로 삼은 행위에 대한 반성과 혁신을 해

나가지 않으면 자본을 상대로 조합원의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는 것은 공염불일 것이다.

따라서 단위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할 시 시정 요구하고, 회사가 시정을 하지 않을 시 고소·고발 권한을 노동안전보건위에 위임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5) 총괄 평가 및 과제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비록 반쪽짜리 법률로 시행 하지만, 이윤보다 생명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사회구성원들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가져왔으며, 비록 반쪽짜리 번안이라도 안정적으로 안착화 시켜내고 나아가 법 재개정투쟁을 통해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완성해야하는 과제 또한 않고 있다.

산재자연치리 투쟁은 비록 2달을 앞당기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현행 산재보상보험 제도로는 적기에 치료받을 권리를 구현 할 수 없음을 고용노동부도 인정하였으므로 “선 보상, 후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부 노동안전보건위 회의체계는 확립하였지만 노안담당자들의 활동시간 확보와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단체협약 명문화와 지회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성화 과제를 앞두고 있다.

일상적인 노동안전 사업을 강화를 통해 조합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고 현장 조직확대 강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그동안 안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성찰과 반성, 혁신투쟁을 통해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 정치위원회 】

1. 사업 목표 및 방향

- (1) 2021년 남구청장 재선거 승리를 통한 2022년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 마련
- (2) 현장정치활동의 주체를 마련하여 노동자 직접정치의 토대 마련
- (3) 지부 정치위원회 활성화로 일상적인 현장 정치활동을 통한 노동정치 기반 확대
- (4) 조합원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현장 정치교육 강화
- (5)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대응 토대 마련

2. 주요사업 평가

- (1) 2021년 남구청장 재선거 승리를 통한 2022년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 마련
 - 남구청장 재선거 승리를 위한 지역 공동대응이 진행되었고,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조합원중 남구 유권자 1,000여명을 중심으로 한 시민공동행동 회원 가입을 포함한 3만 지지자를 조직하여 투표 참가 독려사업을 진행하였음.
 - 조합원과 면대면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투표참여 인증샷찍기, 가족, 지지자 찾기, 교육과 선전사업이 진행되었다.
 - 결과적으로는 기득권정치 심판과 진보정치의 구도가 형성되지 못하고 거대한 양당 구조에서의 진보 정치의 한계를 넘지 못함을 확인하는 선거였다
 - 울산의 진보정당,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단결을 기본으로 선거에 대응했다는 점과 이러한 단결의 기운을 2022년 지방선거로 가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정치적 의의와 성과이다.
- (2) 현장정치활동의 주체를 마련하여 노동자 직접정치의 토대 마련
 -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간부교육과 현장에서의 실천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현장에서 일상적인 정치활동은 내용과 상을 마련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만 실천적인 활동이 가능했었다.
 - 진보정당과 함께 진행한 우리 세금 우리가 결정하기 북구주민투표 조직위원회에 사업장별 참여를 통해 지역과 함께 투표진행에 참여하여 현장과 지역에서의 실천활동을 진행함
 - 금속노조 울산지부 3,894명의 참여를 포함한 34,871명의 투표 참여가 진행되었음
 - 이를 통한 직접정치의 상과 현장 정치활동의 상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실천활동이었다.
- (3) 지부 정치위원회 활성화로 일상적인 현장 정치활동을 통한 노동정치 기반 확대
 - 지부 정치위원회 회의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4.7재선거 평가회의 이후로는 일상적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 하반기 사업으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진보정당 후원사업을 위한 선전사업과 진보단일화를 위한 선전사업등 중앙 정치 방침에 따른 집행사업이 진행되었다.

- 지회 정치위원 선임이 10여개지회에 불과하여 정치방침에 따른 세부 집행에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야할 과제로 남는다.

(4) 조합원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현장 정치교육 강화

- 진보정당과 함께 진행한 우리 세금 우리가 결정하기 북구주민투표 진행에 참여 하여 현장 내 실천을 위한 교육, 선전사업이 진행되었다.
- 간부교육은 진행되었으나 조합원 교육까지 확대하여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5)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대응 토대 마련

- 대통령후보 진보단일화를 위한 선전사업과 정치후원금 선전사업을 진행하였다.
- 4.7 남구청장 재선거의 성과인 공동대응을 통한 지역의 단결의 기운을 이어 2022년 지방선거의 대응 토대를 만들어가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3.총평

- 4.7 재선거의 정치적 의의와 성과는 울산의 진보정당,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단결을 기본으로 선거에 대응했다는 점과 이러한 단결의 기운을 2022년 지방선거로 가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결의 틀을 2022년까지 이어가야 한다
- 4.7 재선거는 전국적으로 촛불 정신을 배신하고 무능한 정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민심의 표현이었다. 또한 이것은 적폐세력의 부활, 소생의 빌미로 작용하였다.
- 기득권정치 심판과 진보정치의 구도가 형성되지 못하고 거대한 양당 구조에서의 진보정치의 한계를 확인하는 선거였다
- 남구주민, 남구거주 조합원등 전체 3만 지지자 조직하여 투표에 참여하게 독려하였으나, 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지 못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투표로 이어지게 하지 못하였다
- 각 지회를 망라한 지부 차원의 조직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지금까지 진행한 선거운동과는 다르게 조합원과 면대면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투표참여 인증샷찍기, 가족, 지지자 찾기, 교육과 선전사업이 진행되었다.
- 성과는 투표독려를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현장 조합원과의 면대면 사업이 일상적인 현장활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조합원과의 다양한 소통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고 이는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고민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 이후 과제로는 현장 정치활동 뿐만아니라 노동조합 활동과 내용에 대하여 그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일상적인 현장 정치활동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지부 정치위원회회의가 선거시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이고 일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정치활동의 상과 내용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간부,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선전사업이 지속적으로 준비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것도 과제이다.

【 통일위원회 】

1. 사업 목표 및 방향

- 1) 통일위원회 회의 안정화
- 2) 자주교류사업 및 통일기행사업
- 3) 반미반일투쟁 및 자주통일운동 진행
- 4) 상급단체 수임사업 및 통일단체 협력교류사업 전개

2. 주요사업 평가

1) 위원회의 회의 안정화 및 주체역량 강화사업

- 매월 꾸준히 회의를 정례적으로 진행하여 지부 통일사업의 집행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 특히, 월 1회 회의와 월 1회 실천활동과 교육을 끈기있게 진행하여 지부 통일위원회의 사업과 활동방식이 진일보하였다.

2) 자주통일대회 및 시기별 주요사업에 대한 집중 투쟁

- 울산지역 노동자 통일선봉대의 조직에 함께하여 일상적인 통일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 6.15울산대회, 7.27대회, 8.15대회, 10.4대회등 시기별, 계기별 사업에 대한 선전과 실천활동을 수행하였다.
- 4.3 제주항쟁 기행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과 일정등의 문제로 집행되지 못하였다.
- 국가보안법 폐지 10만입법청원운동을 전국적으로 2021년 5월 10일(월)~5월 19일(수) 까지, 단 9일만에 10만입법청원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교육 선전 사업을 기본으로 2,300여명의 조합원 참여와 지역 활동을 진행하여 짧은 시간에 입법청원운동을 마무리 하는데 금속노조 울산지부의 역할을 다했었다.
-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 울산일정을 지역본부 통일위원회와 함께 전일정을 소화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 정당성을 실천적으로 울산시민들과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3) 반미반일 투쟁을 통한 자주통일 실천력 강화

- 지역 노동자 통일선봉대의 상시적 운영과 중앙통일선봉대 투쟁에 결합하여 실천적 통일사업을 진행하는 한해였다.
- 사드철거투쟁을 중심으로 한 불평등한 한미동맹 해체와 민족자주성 회복투쟁을 위한 소성리 지원투쟁을 각 지회 통일위원들과 진행하였다.

4)상급단체 수입사업 및 통일단체 협력교류사업 전개

- 지역본부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노동자 통일학교, 지역통일선봉대 사업등에서 금속노조 울산지부의 역할을 다해 진행하였다

3. 총괄 평가

- 현장 통일 사업의 활성화의 기본인 주체강화를 위한 지부 통일위원회 회의 안정화와 매월 1실천활동, 교육사업의 성과를 이어 각 현장에서의 노동자통일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실천이 필요하다.
- 노동자와 통일의 과제에 대한 조합원의 교육과 일상적인 현장 실천활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 울산지역 노동자 통일선봉대의 일상적인 활동의 성과를 이어 노동자통일사업 주체를 튼튼히 준비시키는 사람사업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미조직비정규직조직위원회 】

1. 사업목표

- 1) 미비위원회 성원 역량강화
- 2) 미조직사업에 대한 인식재고
=> 전조직적 사업으로 전환, 양적확대를 통한 금속노조 계급대표성 신장에 복무
- 3) 공단지역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적 공단조직화 사업 준비
- 4) 신규노조 조직화사업

2. 사업평가

1) 미비위원회 성원 역량강화사업

○ 미비위원회 성원 역량강화를 위해 노조 전략실 교육, 노조 교육수련회 및 하반기 복수노조 쟁점사례 교육 등 3차례의 교육사업을 진행하였음. (노조 교육수련회 19명 참가 /복수노조 쟁점사례 교육 24명 참가)

○ 미조직 사업장의 노조상담부터 신규노조창립으로 이어지는 조직화 역량에 있어서 11기 1년차에 이어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8개분회 조직) 서연씨엔에프지회(1개 지회 조직)의 미조직사업 역량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음.

○ 공단노동자 노조할 권리 금속노조 가입을 위한 미비위원회 실천투쟁을 진행(달천공단, 매곡공단) 하였음.

○ 지부 미비위 교육수련회는 기획단 구성 및 시기까지 결정하였으나 코로나 19의 이유로 진행하지 못함.

2) 미조직사업에 대한 인식재고

○ 미조직사업은 미비위원회 사업을 넘어 울산지부 전조직적 사업으로 전략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목표 아래 미비위 공단조직화 사업 등에 지부 운영위, 상근간부동지들을 적극적인 참가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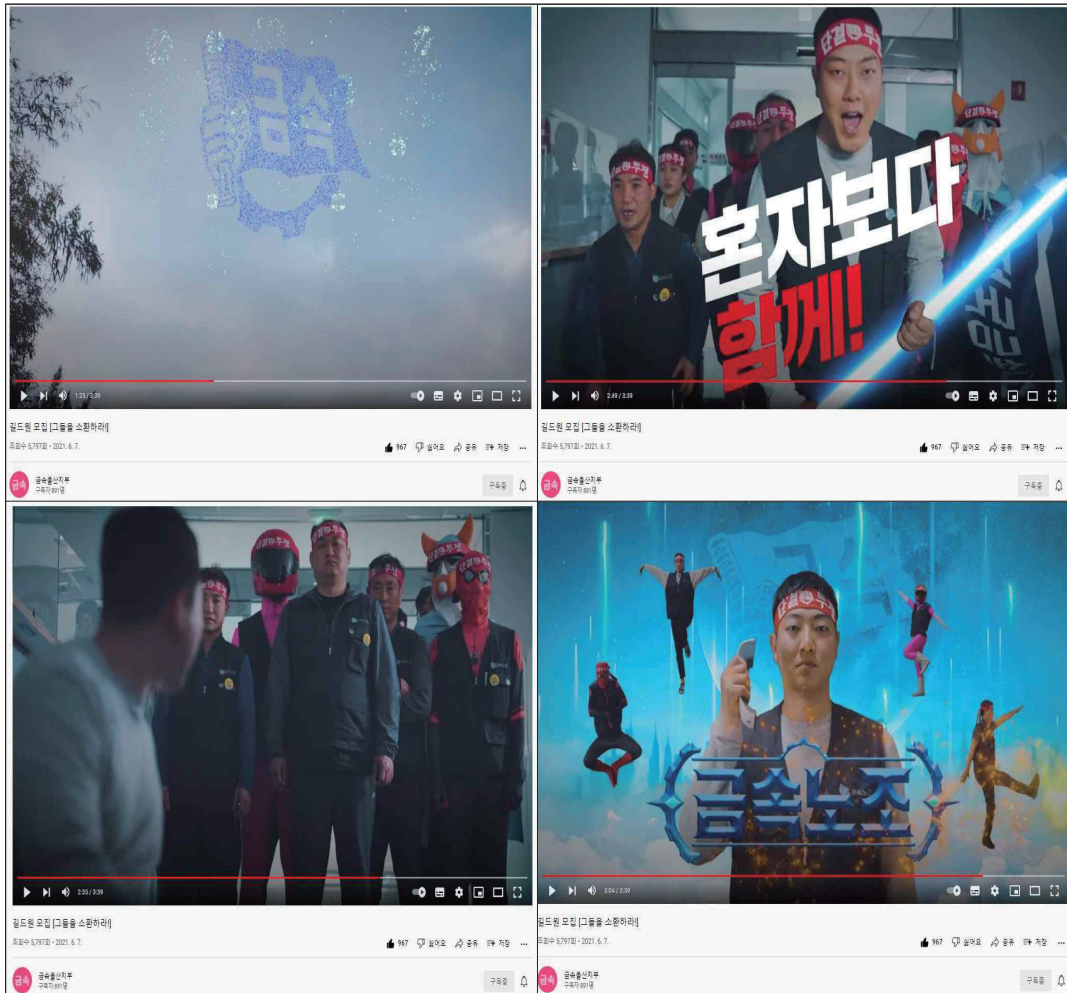
○ 1기 사업평가 과제로 제출된 청년노동자들에 감수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 시도,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신규노조 조합원들이 영상의 주체로 대거 참여한 가운데 제작된 영상

‘길드원 모집[그들을 소환하라]’은 제작준비부터 울산지부 미조직사업에서 청년노동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들 조직사업의 경험과 파악된 그들의 고민을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음.
영상은 단시간에 조회수 6천회를 육박했으며, 전국적으로도 신선한 도전으로 평가되고
있음. 과제는 이러한 선전물이 청년노동자들 속으로 넓고, 구체적으로 전달할 선전망 구
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울산지부 미비위원회 / 청년노동자 노조가입 홍보 영상)



3) 신규노조 조직화 사업

○ 울산지부의 신규노조 조직화 사업은 11기 2년차에도 상당한 조직적 성과를 냈음
15개 조직-1,427명의 조합원이 확대되었음.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 울산지부 간부들 전체가 미조직사업의 주체가 되었으며 지회단위 미조직사업도 상당한 성과를 낸 한 해였음.

○ 금속노조가 조직이 확대되는 만큼 자본과 정권도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용노조를 활용한 복수노조로 대응. 이를 극복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이후 동반되어야 함.

■ 11기 2년차 신규조직화 현황

※ 설립일자 : 2021. 1. 1. ~ 2021. 12. 31. /

	명칭	조합 원 수	설립일자	지회장(분회장)	업종/생산품/납품처
1	동남정밀지회	246	2021.03.14.	김민근 지회장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자동차 엔진, 전동장치 부품제조 ·현대기아차협력업체,테슬라납품
2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대호분회	70	2021.03.14.	차정훈 분회장	·자동차부품/서열 ·현대자동차
3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정명분회	150	2021.04.25.	오세용 분회장	·자동차부품/서열 ·현대자동차
4	센트럴모텍 울산지회	99	2021.05.09.	송기호 지회장	·생산품: 소프트어셈블리 아웃풋, 컨트롤 암, 볼스크류, ·납품처: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현대글로벌비스,위아,GM,BMW
5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정원분회	61	2021.05.16.		· 자동차 부품, 서열 ·현대자동차납품
6	IHC지회	28	2021.05.30.	최수혁 지회장	· 자동차 카시트 재봉(퀵팅)과 에어백 생산 (주)두울지주사
7	두울지회	138	2021.06.13.	류재룡 지회장	· 자동차내장재 중 시트원단사업과 시트사업
8	동남	32	2021.06.27.	최병호 지회장	·알루미늄 용해, 용광로 작업 ·현대자동차도요타,동남정밀에엔진블로납품
9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제이피아이분회	59	2021.07.11.	정동우 분회장	·자동차부품/서열/현대자동차 ·제이피아이도금업체청산테크,장원템프
10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서광분회	61	2021.07.11.		·자동차부품/서열/현대자동차
11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씨아이엠분회	114	2021.08.20.	북한식 분회장	·자동차부품/서열/현대자동차
12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비케이분회	53	2021.09.30.	이정환 분회장	·자동차부품/서열/현대자동차
13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에프유분회	124	2021.10.07.	지현주 분회장	·자동차부품/서열/현대자동차
14	부국산업	140	2021.11.03.	이용훈 지회장	·브레이크 튜브, 엔진연료 파이프 생산 ·BIC- 해외공장수출물류
15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52	2021.11.23.	서준식 분회장	·자동차부품/ 서열 / 현대자동차
	지회 오에스분회				
		1,427			

3. 총괄평가

- 울산지부 미조직비정규직 조직사업은 매년 상당한 수로 조직되고 있다. 미조직사업 영역이 지부 미조직비정규직조직사업위원회의 고유사업이 아니라 지부 전 조직적 사업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미조직사업을 진행하는 지부집행위의 헌신적인 노력이 매년 미조직사업의 높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11기 1년차 부터는 지회단위까지 미조직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며 11기 2년차에는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의 복구 모듈화 산업단지에서 8개 분회를 직접 조직하였고, 서연씨엔에프지회가 길천일반산업단지내의 1개지회 조직, 현대모비스울산지회가 온산공단 1개지회 조직건설에 지부와 공조를 이뤄 성과를 내왔다.
- 최근 조직되는 노동조합의 구성원 대부분이 청년노동자들임을 감안할 때 올해 첫 시도로 청년노동자들 조직화 사업의 맞춤형 영상은 금속노조 전체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를 실제 미조직 청년노동자들이 있는 곳으로의 전파력에는 아직 상당히 미흡하다. 12기 울산지부는 조직된 청년노동자, 그리고 미조직 청년노동자들에 노동계급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선전,홍보계획이 서야하며 금속노조 미래를 준비하는 눈높이에서 인력과 예산의 파격적인 사업집행이 요구된다.
- 울산지부 47개 지,분회 조직중에 복수노조 사업장이 10개 단사로 확대되었다. 이에 12기부터는 복수노조사업장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공동대응, 공동투쟁이 요구된다.

울산지부 11기 2년차 4/4분기 감사결과 보고서

1. 감사일자 : 2022년 01월 11일(화) 2. 감사장소 : 울산지부 회의실

3. 수검자 : 지부장 윤 장 혁
사무국장 고 은 아



(인)

2022년 01월 11일(화)

지부 감사위원

이 상 순
김 주 환

노조 감사위원

(인)

최 순 영
김 홍 규
문 윤 환
전 성 중
김 규 진

■ 11기 2년차 1/4분기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	-
2	-	

■ 11기 2년차 1/4분기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				
2		-				

■ 11기 2년차 2/4분기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	-
2	-	

■ 11기 2년차 2/4분기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미21-06-02	- 6월4일 노조가입선전전 25,500원 추가 지출되었습니다. 환입조치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2	미21-06-01 미21-05-02 미21-04-06	- 식사 후 커피숍 이용은 2중지출에 해당됩니다. 시정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 11기 2년차 3/4분기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	-
2	-	

■ 11기 2년차 3/4분기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21-09-43	- 노동안전부 수련회 저녁식대 79,000원이 과지출 되었습니다. 과지출 비용에 대해 환입조치 바랍니다.	예 환입하겠습니다.	●		
2		-				

■ 11기 2년차 4/4분기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	-
2	-	

■ 11기 2년차 4/4분기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				
2		-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울산지부 11기 2년차 4/4분기 결산 보고서

1. 조합원 현황(조합비 납부현황)

기간: 2021년 1월 1일~ 12월 31일 (단위 명)

지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1 고강알루미늄지회	51	51	51	51	51	51	51	51	51	51	51	51	
2 대륙금속지회	83	82	82	82	82	82	82	88	88	88	88	88	
3 대흥공업지회	65	65	65	65	65	65	64	64	64	64	64	64	
4 덕양산업지회	505	505	505	505	559	508	508	508	508	508	508	508	
5 말레동원펄터시스템지회	116	116	116	116	114	114	114	114	114	114	114	114	
6 서연씨엔에프지회	157	157	157	152	152	151	151	151	151	144	144	144	
7 서연이화지회	447	447	447	419	419	419	419	419	419	424	424	424	
8 서진산업사내하청울산지회	156	156	156	156	156	156	158	158	158	157	157	157	
9 서진산업사내하청울산지회	41	41	41	41	41	41	41	41	41	41	41	41	
10 세종공업지회	445	445	445	433	433	433	433	433	433	433	433	433	
11 신한중공업지회	50	50	50	56	56	60	58	58	58	58	58	58	
12 에스아이씨지회	11	11	11	12	12	12	12	12	12	16	16	16	
13 울산현대모비스지회	807	807	860	859	859	858	855	855	855	857	857	857	
14 정명지회	33	33	33	33	33	33	33	33	33	33	33	33	
15 한국ITW울산지회	116	116	116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6 한국프랜지회	292	292	292	292	292	292	292	284	284	284	284	284	
17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199	199	198	198	198	198	199	199	199	199	199	199	
18 한주금속지회	125	129	129	128	128	127	138	138	140	141	141	141	
19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203	203	203	203	203	206	212	212	212	214	214	214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20	현대글로벌스울산지회	479	499	555	569	760	782	963	985	1,031	1,200	1,234	1,320	04.26 17차 지부운영위 정명분회 승인 05.17 20차 지부운영위 정원분회 승인 07.12 28차 지부운영위 IP, 서광 승인 08.23 33차 지부운영위 CIM분회 승인 10.05 38차 지부운영위 비케이분회 승인 10.12 39차 지부운영위 에프유분회 승인 12.20 47차 지부운영위 오에스분회 승인
21	현대모비스울산지회	384	386	386	390	393	393	394	394	394	394	394	394	
22	현대모비스물류지회	145	146	146	147	147	147	147	147	147	147	147	147	
23	현대제철울산지회	590	590	590	592	592	591	593	593	593	593	593	593	
24	삼성SDI울산지회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9.07.01 129차중앙위, 정액납부 승인
25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124	122	121	121	121	121	127	127	127	127	127	127	
26	SHB사내하청지회	95	95	95	95	95	95	95	95	95	96	96	96	
27	동남정밀지회			56	216	216	216	229	231	231	240	240	240	21.03.10 10차 운영위에서 설립 승인
28	센트랄모텍울산지회					86	82	85	85	85	96	96	96	21.05.10 19차 운영위에서 설립 승인
29	IHC지회						22	22	22	22	24	26	26	21.05.31 22차 운영위에서 설립 승인
30	두울지회						140	144	144	144	145	145	145	21.06.14 24차 운영위에서 설립 승인
31	동남지회						21	36	29	29	29	29	29	21.06.29 26차 운영위에서 설립 승인
32	현대자동차보안지회											105	105	21.11.01 42차 운영위에서 판매 승인
33	부곡산업지회											140	140	21.11.08 43차 운영위에서 설립승인
34	개별조합원	19	19	19	19	19	19	15	15	15	22	22	22	
35														
합 계		5,752	5,776	5,939	6,081	6,413	6,617	6,786	6,801	6,849	7,048	7,329	7,415	

2. 일반회계 수입 현황

기간: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경정 전용	최종예산	수입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수입률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관	항 목																			
	교부 금	교부 금	267,801,000	0	267,801,000	21,631,705	22,396,294	21,617,439	22,172,621	23,721,738	25,009,083	25,208,913	4,000,000	48,245,535	27,010,941	28,422,320	24,546,463	293,983,052	-26,182,052	110%
	부과 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이자 수입	0	0	0	0	0	0	6,514	0	0	4,608	0	0	11,846	0	0	19,608	42,576	-42,576	0
	합계	267,801,000	0	267,801,000	21,631,705	22,396,294	21,623,953	22,172,621	23,721,738	25,013,691	25,208,913	4,000,000	48,257,381	27,010,941	28,422,320	24,566,071	294,025,628	-26,224,628	110%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3. 특별회계 I (투쟁기금) 수입 현황

기간: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단위: 원)

관	과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예산	수입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수입률 (%)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투쟁기금	이월금	일반 이월금	105,358,782	0	105,358,782	105,358,782	0	0	0	0	0	0	0	0	0	0	105,358,782	0	100%
		투쟁기금 이월금	28,706,908	0	28,706,908	28,706,908	0	0	0	0	0	0	0	0	0	0	28,706,908	0	100%
	본조 지원금	투쟁사업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595,000	595,000	-595,000	0%
		기타 수입	0	0	0	0	23,986	0	0	25,644	0	0	19,429	0	0	12,524	81,583	-81,583	0%
	합 계			134,065,690	0	134,065,690	134,065,690	0	23,986	0	0	25,644	0	19,429	0	607,524	134,742,273	-676,583	101%

4. 특별회계 II (미조직 기금) 수입 현황

기간: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전용	최종예산	수입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수입률 (%)		
관	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미조직 기금	이월금	7,587,598	0	7,587,598	0	0	0	0	0	0	0	0	0	0	0	7,587,598	0	100%	
		일반 아월금																	
	본조지원금	5,000,000	0	5,000,000	0	0	0	0	0	0	0	0	0	0	-3,060	4,996,940	3,060	100%	
		미조직 사업비																	
	산별기금	15,000,000			180,000	640,000	1,720,000	2,880,000	1,950,000	2,020,000	1,480,000	1,090,000	420,000	2,030,000	2,180,000	1,090,000	17,680,000	-2,680,000	118%
		직사업비																	
		복수노조 사업비	2,500,000	0	2,500,000	0	0	0	0	0	0	0	0	0	0	-45,530	2,454,470	45,530	98%
		사업비																	
	기타수입	0	0	0	1,600	0	0	3,448	0	0	3,612	0	0	3,765	12,425	-12,425	0	0%	
		이자수입 잡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 계		30,087,598	0	25,087,598	7,767,598	640,000	9,221,600	2,880,000	1,950,000	2,023,448	1,480,000	1,090,000	423,612	2,030,000	2,180,000	1,045,175	32,731,433	-2,643,835	109%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5. 공동회계 수입 현황

기간: 2021년 1월 1일~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당초 예산	경정 전용	최종 예산	수입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	수입률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이월금	공동사업 이월금	302,121,218	0	302,121,218	302,121,218	0	0	0	0	0	0	0	0	0	0	0	302,121,218	0	100%
지역 공동 사업 비	본 조	공동 사업비	137,985,336	0	137,985,336	11,145,733	11,078,627	10,635,464	10,682,632	10,668,814	10,714,294	10,784,602	0	6,028,453	11,109,620	11,155,552	26,599,461	130,603,252	7,382,084	95%
	지급금																			
	기타 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잠수입		0	0	0	0	66,288	0	0	71,754	0	0	78,086	0	81,168	297,296	-297,296	0%		
합계			440,106,554	0	440,106,554	313,266,951	11,078,627	10,701,752	10,682,632	10,668,814	10,786,048	10,784,602	0	6,106,539	11,109,620	11,155,552	26,680,629	433,021,766	7,084,788	98%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6. 일반회계 지출 현황

기간: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단위: 원)

과목		예산액			지출액												지출 율 (%)		
항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 예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유 지 비	관리비	8,400,000	0	8,400,000	210,000	1,040,356	292,167	242,380	215,404	218,218	0	0	530,931	220,358	209,205	320,981	3,290,000	39%	
	차량유지비	12,000,000	0	12,000,000	210,000	2,258,830	2,054,150	330,000	289,000	470,000	464,000	312,000	320,000	780,000	590,000	1,749,460	9,827,440	82%	
	신문도사비	500,000	0	500,000	0	0	0	0	0	0	0	0	32,000	0	0	0	32,000	6%	
	소모품비	10,000,000	0	10,000,000	446,950	470,310	636,280	812,120	684,570	398,590	425,040	361,200	897,200	420,600	1,236,050	1,011,120	7,800,030	78%	
	통신비	4,000,000	0	4,000,000	98,550	73,340	194,800	136,230	544,360	87,690	87,510	86,310	91,130	125,190	149,680	141,510	1,816,300	45%	
	비품비	10,000,000	0	10,000,000	474,080	370,000	0	0	0	0	0	0	0	136,091	0	4,630,500	368,800	5,979,471	60%
	인쇄비	1,000,000	0	1,000,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유지비	1,500,000	0	1,500,000		34,800	1,800	1,800	1,800	1,800	32,150	1,800	1,800	1,800	21,800	25,800	127,150	8%	
	항의 소계	47,400,000	0	47,400,000	1,229,580	4,247,636	3,179,197	1,522,530	1,735,134	1,176,298	1,008,700	761,310	2,009,152	1,547,948	6,837,235	3,617,671	28,872,391	61%	
	운영 비	복리후생비	29,484,000	0	29,484,000	1,755,020	1,344,900	2,302,600	1,473,350	1,464,200	1,409,000	1,431,000	1,476,000	1,527,400	1,561,900	1,448,600	1,467,750	18,661,720	63%
항의 소계		29,484,000	0	29,484,000	1,755,020	1,344,900	2,302,600	1,473,350	1,464,200	1,409,000	1,431,000	1,476,000	1,527,400	1,561,900	1,448,600	1,467,750	18,661,720	63%	
직무활동비		23,300,000	0	23,300,000	1,500,000	1,500,000	3,2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23,300,000	100%	
추진비		23,300,000	0	23,300,000	1,500,000	1,500,000	3,2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23,300,000	100%	
권의 소계		100,184,000	0	100,184,000	4,484,600	7,092,536	8,681,797	4,895,880	5,099,334	4,485,298	4,339,700	4,137,310	5,436,552	5,009,848	10,185,835	6,985,421	70,834,111	71%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 율 (%)	
관	항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예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여비	출장비		10,000,000	0	10,000,000	19,228	646,500	913,000	259,600	0	569,800	399,200	0	349,600	547,200	46,400	688,820	4,439,348	5,560,652	44%
		항의 소계	10,000,000	0	10,000,000	19,228	646,500	913,000	259,600	0	569,800	399,200	0	349,600	547,200	46,400	688,820	4,439,348	5,560,652	44%
	총회		6,000,000	0	6,000,000	16,500	217,500	0	0	0	0	0	0	0	0	0	3,342,690	3,576,690	2,423,610	60%
		대의원대회	23,000,000	0	23,000,000	0	244,000	11,724,140	0	0	0	0	0	0	0	0	0	11,968,140	11,031,860	52%
회의 비	운영위원회		6,000,000	0	6,000,000	0	306,450	174,000	0	481,200	0	0	0	0	216,000	0	0	1,177,650	4,822,350	20%
		집행위원회	3,000,000	0	3,000,000	0	200,000	0	0	0	0	170,000	0	0	0	170,000	0	332,300	872,300	2,127,700
	기타회의비		2,000,000	0	2,000,000	67,100	-67,100	0	0	0	133,000	0	0	0	0	400,000	322,160	855,160	1,144,840	43%
		항의 소계	40,000,000	0	40,000,000	83,600	900,850	11,898,140	0	481,200	133,000	170,000	0	0	386,000	400,000	3,997,150	18,449,940	21,550,360	46%
사업 비	교섭위원 수련회		5,000,000	0	5,000,000	0	0	0	1,772,480	0	0	0	0	0	0	0	0	1,772,480	3,227,520	35%
		항의 소계	5,000,000	0	5,000,000	0	0	0	1,772,480	0	0	0	0	0	0	0	0	1,772,480	3,227,520	35%
	총무사업비		4,000,000	0	4,000,000	0	40,000	40,000	40,000	0	40,000	40,000	0	40,000	0	439,000	324,000	1,003,000	2,997,000	25%
		조직사업비	23,000,000	0	23,000,000	540,520	1,880,060	2,032,040	2,362,280	2,157,940	2,035,100	2,609,330	1,387,500	2,184,590	1,957,140	1,078,640	2,431,570	22,656,710	343,290	99%
부서 사업 비	노안사업비		7,000,000	0	7,000,000	0	160,000	1,021,000	635,000	57,250	0	246,200	0	477,000	169,000	695,680	604,340	4,065,470	2,934,530	58%
		교육사업비	9,000,000	0	9,000,000	0	144,500	1,450,500	81,000	0	350,000	112,133	99,000	30,000	1,917,950	0	1,272,800	5,457,883	3,542,117	61%
	산전사업비		16,000,000	0	16,000,000	0	706,200	596,500	2,269,600	376,200	456,000	878,000	297,000	2,034,800	3,291,200	1,128,800	3,278,800	15,313,100	686,900	96%
		문제사업비	4,000,000	0	4,000,000	0	0	0	0	0	0	0	0	0	0	944,990	0	944,990	3,055,010	24%
	항의 소계		63,000,000	0	63,000,000	540,520	2,930,760	5,140,040	5,387,880	2,591,390	2,881,100	3,885,663	1,783,500	4,766,390	7,335,290	4,287,110	7,911,510	49,441,153	13,558,847	78%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연대사업비	대의협력비	7,000,000	3,000,000	10,000,000	1,000,000	1,010,000	870,000	0	700,000	980,000	800,000	560,000	980,000	300,000	900,000	1,700,000	9,800,000	200,000	98%
	항의 소개	7,000,000	3,000,000	10,000,000	1,000,000	1,010,000	870,000	0	700,000	980,000	800,000	560,000	980,000	0	0	0	9,800,000	200,000	98%
위원	총무위원회	6,000,000	0	6,000,000	0	103,000	550,000	140,000	0	70,000	2,411,800	538,850	0	0	300,000	331,200	4,444,850	1,555,150	74%
	정착위원회	6,000,000	0	6,000,000	0	0	97,000	355,000	0	200,000	0	551,300	1,322,000	449,150	419,000	50,000	3,443,450	2,556,550	57%
	여성위원회	2,000,000	0	2,000,000	0	68,000	436,000	68,000	100,000	0	323,000	0	0	432,000	0	500,000	1,927,000	73,000	96%
	미비위원회	15,000,000	2,000,000	17,000,000	52,000	1,648,170	3,156,600	283,560	797,390	2,452,130	2,329,340	1,124,680	1,198,110	646,640	882,340	1,415,870	15,986,830	1,013,170	94%
집회행사비	단체위원회	3,000,000	0	3,000,000	454,200	0	0	60,000	170,000	534,800	470,000	0	0	560,000	0	580,000	2,829,000	171,000	94%
	감사위원회	2,500,000	0	2,500,000	0	200,000	0	300,000	0	0	300,000	0	0	0	0	0	800,000	1,700,000	32%
	항의 소개	34,500,000	2,000,000	36,500,000	506,200	2,019,170	4,239,600	1,206,560	1,067,390	3,256,930	5,834,140	2,214,830	2,520,110	2,087,790	1,601,340	2,877,070	29,431,130	7,068,870	81%
	관의 소개	162,500,000	0	162,500,000	2,149,548	7,507,280	23,060,780	6,854,040	6,612,460	7,820,830	11,089,003	4,558,330	8,616,100	10,656,280	7,234,850	17,174,550	113,334,051	54,165,949	68%
예비비	예비비	5,117,000	-5,000,000	117,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7,000	0%
	항의 소개	5,117,000	-5,000,000	117,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7,000	0%
	관의 소개	5,117,000	-5,000,000	117,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7,000	0%
합 계		267,801,000	-5,000,000	267,801,000	6,634,148	14,599,816	31,742,577	11,749,920	11,711,794	12,306,128	15,428,703	8,695,640	14,052,652	15,666,128	17,420,685	24,159,971	184,168,162	83,632,838	69%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7. 특별회계 I (투쟁기금) 지출 현황

기간: 2021년 1월 1일~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예산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율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관	투쟁 기금	134,065,690	0	134,065,690	645,000	483,000	4,594,750	6,358,700	7,632,000	17,108,480	9,333,058	-3,349,000	11,930,400	12,560,660	59,747,350	4,731,920	131,776,318	98%
	기타 지출		0	0	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9,800	-19,800
합 계		134,065,690	0	134,065,690	645,000	484,800	4,596,550	6,360,500	7,633,800	17,110,280	9,334,858	-3,347,200	11,932,200	12,562,460	59,749,150	4,733,720	131,796,118	98%

8. 특별회계 II (미조직 기금) 지출 현황

기간: 2021년 1월 1일~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 예산	최종예산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율 (%)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미조직 기금	본조	미조직	5,000,000	0	5,000,000	364,700	0	26,220	692,530	884,250	1,754,380	274,560	182,500	383,010	420,290	0	14,500	4,996,940	100%	
	지원금	사업																		
		지부																		
		산별기금	미조직	15,000,000	0	15,000,000	96,550	0	273,850	1,007,746	1,136,280	1,178,840	0	0	0	516,350	2,555,330	1,486,300	8,251,246	55%
	복수노조	복수노조	2,500,000	0	2,500,000	0	0	0	0	592,350	0	0	442,000	419,000	228,000	201,000	572,120	2,454,470	45,530	98%
	사업비	사업비																		
	기타지출	기타지출	587,598	0	587,598	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9,800	567,798	3%
합 계			30,087,598	0	30,087,598	461,250	1,800	301,870	1,702,076	2,614,680	2,935,020	276,360	626,300	803,810	1,166,440	2,758,130	2,074,720	15,722,456	52%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9. 공동회계 지출 현황

기간: 2021년 1월 1일~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 전용	최종예산	지출액												합계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률 (%)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동 사업비	사업비	회의비	7,000,000	0	7,000,000	0	0	0	0	0	0	0	0	0	0	0	7,000,000	0%	
		투쟁단결 사업비	150,000,000	0	150,000,000	1,444,300	0	0	0	0	0	1,200,000	0	0	0	0	2,644,300	147,355,700	2%
		미비 사업비	125,000,000	0	125,000,000	0	0	0	0	0	0	0	0	0	0	0	0	125,000,000	0%
		공동 사업비	150,000,000	0	150,000,000	1,080,000	0	0	0	0	0	0	6,500,000	0	0	0	7,580,000	142,420,000	5%
	기타지출	8,106,554	0	8,106,554	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9,800	8,086,754	0%	
합 계		440,106,554	0	440,106,554	2,524,3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0,244,100	429,862,454	2%	

10. 총 수입 및 총 지출 현황

기간: 2021년 1월 1일~ 12월 31일 (단위: 원)

항 목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잔액	지출 륜(%)	비 고
일반회계		294,025,628	184,168,162	109,857,466	69%	
특별회계 1	투쟁기금	134,742,273	131,796,118	2,946,155	98%	
특별회계 2	미조직기금	32,731,433	15,722,456	17,008,977	52%	
공동회계		433,021,766	10,244,100	422,777,666	2%	
합 계		894,521,100	341,930,836	552,590,264	38%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11. 총수입, 총지출, 시제 현황

기간: 2021년 1월1일 ~ 12월 31일 (단위: 원)

구분	총수입	총지출	총잔액	통장번호	통장잔액	통장용도	비 고
일반회계	294,025,628	184,168,162	109,857,466	1002-460-826414	109,857,466	일반회계	교부금 수입 및 일반회계 지출
				현금보유			
	소계	184,168,162	109,857,466	소계	109,857,466		
특별회계 I	투쟁기금	134,742,273	2,946,155	1002-860-801258	2,946,155	투쟁기금	일반회계, 투쟁기금 이월금 및 지출
				현금보유			
	소계	134,742,273	2,946,155	소계	2,946,155		
특별회계 II	미조직기금	32,731,433	17,008,977	1002-260-843187	17,008,977	미조직사업	미조직사업 본조지원금 및 지출
				현금보유			
	소계	32,731,433	17,008,977	소계	17,008,977		
공동회계	공동사업비	433,021,766	10,244,100	1002-760-818272	422,777,666	공동사업비	지역공동사업비 교부금 및 지출
				현금보유			
	소계	433,021,766	10,244,100	소계	422,777,666		
합 계	894,521,100	341,930,836	552,590,264	합 계	552,590,264		

울산지부 11기 2년차 4/4분기 지역공동위 감사결과 보고서

1. 감사일자 : 2022년 01월 11일(화) 2. 감사장소 : 울산지부 회의실

3. 수검자 : 지부장 윤 장 혁
사무국장 고 은 아



2022년 01월 11일

울산지부 감사위원

이 상 순

조합 감사위원

영 (인)

현대자동차지부 감사위원

김 주 환 (인)

김 주 환 (인)

김 훈 (인)

현대중공업지부 감사위원

이 주 우 (인)

이 주 우 (인)

김 훈 (인)

오 영 성 (인)

오 영 성 (인)

김 훈 (인)

금 일 원 (인)

금 일 원 (인)

김 훈 (인)

■ 11기 2년차 1/4분기 지역공동위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사무국	'21년 지역공동위 사업계획을 수립했지만 코로나 방역지침 및 현대중공업 단체교섭 투쟁 등으로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운영위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과 긴박한 투쟁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급히 운영위를 개최해서 '21년 지역공동위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11기 2년차 1/4분기 지역공동위제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 11기 2년차 2/4분기 지역공동위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사무국		

■ 11기 2년차 2/4분기 지역공동위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 11기 2년차 3/4분기 지역공동위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사무국		

■ 11기 2년차 3/4분기 지역공동위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 11기 2년차 4/4분기 지역공동위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사무국	지역공동위 운영 관련 11기 2년차에도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 다. 12기 회계연도에는 운영위 회의를 반드시 개최해서 지역공동위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 집행 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11기 2년차 4/4분기 지역공동위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	전표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조치요구	
				환입	시정 주의
1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1. 공동회계 수입 현황

기간: 2021년 1월 1일~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최초 예산	경정, 전용	최종 예산	수입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수입률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지역 공동 사업 비	관	항	이월금	302,121,218	0	302,121,218	302,121,218	0	0	0	0	0	0	0	0	0	0	302,121,218	0	100%	
		본 조	공동 사업비	137,985,336	0	137,985,336	11,145,733	11,078,627	10,635,464	10,682,632	10,668,814	10,714,294	10,784,602	0	6,028,453	11,109,620	11,155,552	26,599,461	130,603,252	7,382,064	95%
		기타 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접수입		0	0	0	0	0	66,288	0	0	0	71,754	0	78,086	0	0	81,168	297,296	-297,296	0%
		이자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440,106,554	0	440,106,554	313,266,951	11,078,627	10,701,752	10,682,632	10,668,814	10,786,048	10,784,602	0	6,106,539	11,109,620	11,155,552	26,680,629	433,021,766	7,084,788	98%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2. 공동회계 지출 현황

기간: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당초예산	경정 최종예산 전용	지출액												최종예산 대비잔액	지출률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공동 사업비	항	회의비	7,000,000	0	7,000,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7,000,000	0%	
		사업비	투쟁단결 사업비	150,000,000	0	150,000,000	1,444,300	0	0	0	0	0	0	0	1,200,000	0	0	0	2,644,300	147,355,700	2%
	미비 사업비		125,000,000	0	125,000,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지출		공동 사업비	150,000,000	0	150,000,000	1,080,000	0	0	0	0	0	0	0	0	0	0	6,500,000	0	7,580,000	142,420,000
		기타지출	8,106,554	0	8,106,554	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9,800	8,086,754	0%
합 계			440,106,554	0	440,106,554	2,524,3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201,800	6,501,800	1,800	1,800	10,244,100	429,862,454	2%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3. 총 수입 및 총 지출 현황

기간: 2021년 1월 1일~ 12월 31일 (단위: 원)

항 목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잔액	지출 율(%)	비 고
공동회계	433,021,766	10,244,100	422,777,666	2%	
합 계	433,021,766	10,244,100	422,777,666	2%	

4. 총수입, 총지출, 시제 현황

2021년 1월 1일~ 12월 31일 (단위: 원)

구분	총수입	총지출	총잔액	통장번호	통장잔액	통장용도	비 고
공동회계	433,021,766	10,244,100	422,777,666	1002-760-818272	422,777,666	공동사업비	지역공동사업비 교부금 및 지출
				현금보유			
	433,021,766	10,244,100	422,777,666	소계			
합 계	433,021,766	10,244,100	422,777,666	합 계			

의결주문

제출된 '12기 1년차 사업계획 및
2022년 임,단협 투쟁방침(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기 1년차 울산지부 사업계획 (안)

I 2022년 정세 전망

1. 경제

1) 세계 경제

- 세계 경제 경제 성장률은 2021년 5.9%, 2022년 4.9% 성장 예상
-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긴축정책과 공급망 교란의 지속, 코로나 위기의 악화 여부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임

- IMF(국제통화기금) 10월 발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2021년 5.9%, 2022년 4.9% 성장 예상. 하지만 IMF는 지난해 12월 3일 오미크론 확산 사태에 따라 전망치를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혀. OECD는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9월 5.7%로 전망했다가 같은 해 12월 5.6%로 하향. 특히 미국 -0.4%p, 중국 -0.4%p, 일본 -0.7%p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춤.
-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라 코로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펼쳤던 경기부양책 기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 IMF는 지난해 10월 고용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긴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 미 연준은 같은 해 11월 3일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개시를 발표한 데 이어, 최근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총 8차례 금리 인상 시간표를 논의. 아울러 이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당기고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거나 양적긴축 시행까지 논의된 사실이 지난 1월 5일 의사록 공개로 확인되기도 함.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9월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의 채권매입 속도를 지난 2개 분기보다 낮추기로 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올해 3월 채권매입 종료 계획을 발표. 영국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 16일 3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10%에서 0.25%로 인상.
- 한편, 인플레이션 외에도 공급망 교란의 지속 기간과 여파, 코로나 보건 위기의 악화 여부(위드코로나의 성공 여부)에 따라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
- 다만 국가 간, 부문 간, 계층 간 회복 속도의 격차는 분명할 것. 국가 간 격차는 주로 국가별 백신 보급률 차이, 정책 부양 여력의 차이에서 비롯됨. 위드 코로나가 안착되기 전까지는 대면 서비스 부문의 회복은 더딜 것이며, IT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재화 생산 및 교육 부문의 성장세는 상대적으로 빠를 것임. 아울러 코로나 경기 불황의 피해가 저소득층과 여성, 청년들에게 집중되고 있어 계층 간의 격차가 발생.

2) 국내 경제

- 국내 경제성장률은 21년 4.0%, 22년 3.0%로 예상
- 국내 경제 또한 세계 경제와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임

- 국내 경제성장률은 21년 4.0%, 22년 3.0%로 예상(한국은행 8월 발표). 세계 경제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지만 2020년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높은 수준.
- 코로나 신종 변이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재확산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중의 패권경쟁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또한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
- 한국도 코로나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지난 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2~4분기 기간 가구소득 5분위(고소득)는 -1.5%, 1분위(저소득)는 -17.1%의 감소율을 보였음. 또한 2019년에 비해 2020년 지니계수가 2~4분기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

□ 다가오는 경제위기

- 전 세계 부채가 2007년 111조 달러에서 2020년 281조 달러로 무려 153% 증가.
-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은 전 세계 경제를 심각한 위기로 몰고 갈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위기 폭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은행의 대출한도 축소 및 부동산 시장 냉각, 집값 하락 등으로 가계 파산이 속출하고 부실한 은행들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또한 한계기업의 파산과 대규모 실업 사태 등의 고용위기 상황이 올 수 있음.

- 2010~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3.8%였는데 이는 부채를 통해 경기부양을 떠받친 ‘부채 주도 성장’의 결과였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실물 경제는 마이너스인데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 등 자산가격은 폭등했기 때문임. 전 세계 부채는 2007년 111조 달러에서 2020년 281조 달러로 무려 153% 증가. 2020년 전 세계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355%로 2019년 대비 35%p 폭등. 이는 자본주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임
- 특히,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 4조 5천억 달러 (2012~2014년), 2020년 팬데믹 위기때 3조 달러를 찍어내며, 금리는 제로, 은행은 대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더 큰 거품을 키워옴. 부채 위에 부채를 쌓고 버블이 또 다른 버블을 키우는 그야말로 모래성 위에 모래성을 쌓아옴.
- 그러나 부채 주도 성장이 한계에 도달,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으로 기축

통화 지위를 위협받는 상황. 2021년 12월 미국의 연준 회의록에 따르면 2022년에 총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계획했고 동시에 자산매입 축소에 이어 보유 중인 자산을 축소하는 강력한 양적긴축을 예고하고 있음.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및 투자자들이 “지 금껏 볼 수 없었던 끔찍한 위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미국의 인플레이션 과 금리 인상은 전 세계 경제를 심각한 위기로 몰고 갈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가계부채는 1,800조 원으로 GDP 대비 106%인데, 전세자금과 자영업자의 대출 이 포함되지 않은 통계임. 이를 감안하면 3,200조 원으로 GDP 대비 190%에 달함. 한국은행은 2020년 한계기업, 즉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 하는 기업 규모가 21.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위기 폭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금리 인상을 신호탄으로 거품이 붕괴하면서 40만의 고위험가구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40%를 넘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와 다중채무자들이 가장 먼저 위기에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은행은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대손충당금과 추가자본 적립, 원리금 분할 상환을 요구하 게 됨. 부동산 시장은 급격하게 냉각되어 집값 하락으로 인한 가계 파산이 속출하고 부실한 은행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됨. 이어 한계기업의 파산과 대규모 실업 사 태 등의 고용위기 상황이 올 수 있음.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 코로나 경제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

3) 업종별 전망

1) 자동차업종

- 2021년은 코로나 영향과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른 생산차질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회복 위축
- 2022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58% 증가한 633만대 판매 예상. 2025년까지 1,700 만대로 확대돼 전체 시장 비중이 20.6%가 될 전망
- 각국 정부와 완성차업체는 전기차 핵심 가치사슬을 배터리로 규정해 자국 내 생산 내지 자체 생산 기조를 강화. 이는 국내 완성사에게 수출이 아닌 현지 생산을 유도해 수출 중심 한국 자동차산업 구조 변화 국내 고용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 부품사의 경우 완성차 시장에 발맞춰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수출 부문 중심 으로 회복세 전망. 다만 현대기아차와 외투·중견 완성사 납품선에 따라 희비 엇갈릴 것.
- 정부는 미래차 전환 가속화에 따라 부품사 전환 지원 정책 구체화 중. 다만 현대·기아차의 수요독점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있는 수준이라 기술력과 해외 판로를 갖고 있는 일부 대형 부품사를 제외하면 미래 전망 불투명. 재벌 수요독점은 더욱 강화돼 원하청 불평등도 심화될 전망.

1-1) 자동차업종

- 2021년은 코로나19 영향 지속 및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회복 위축. 이에 따라 당초 전망(8,949만대, 10.8% 증가)보다 하향된 8,415만대로 추정. 2022년 세계 자동차 수요는 반도체 관련 병목현상으로 부품 공급 차질이 예상되지만, 미국·EU·중국 등 주요 시장이 성장하면서 21년 대비 +5.3%(LMC) 성장이 예상 됨.
- 2021년 국내 내수판매는 전년 대비 9% 감소한 173.5만대로 추정되고 내수부진을 205만대 수출로 만회함. 국내 생산은 2020년보다 더 축소된 348만대로 계속 축소되고 있음. 2022년 국내 자동차판매 전망은 전년보다 0.3% 증가한 174만대, 수출은 전년비 6.3% 증가한 218만대로 전망되며, 생산은 전년비 3.4% 증가한 360만대로 전망됨.(한국자동차산업협회)

< 2021년 자동차산업 동향 >

(단위 : 만대, 억불)

구 분	2019		2020		2021 E	
		%		%		%
내 수	180	-1.8	191	6.2	173.5	-9.0
수 출	240	-2.0	189	-21.4	205	8.7
생 산	395	-1.9	351	-11.2	348	-0.8

< 2022년 자동차산업 전망 >

(단위 : 만대, 억불)

구 분		2020		2021 E		2022 F	
			%		%		%
내 수		191	6.2	173.5	-9.0	174	0.3
	국산차	160	5.5	143	-10.8	142	-0.7
	수입차	30.3	10.0	30.5	0.8	32.0	4.9
수 출		189	-21.4	205	8.7	218	6.3
(수출액)		374	-13.1	466	24.6	494	6.0
생 산		351	-11.2	348	-0.8	360	3.4
KIET	내 수	188	5.3	174	-7.4	172	-1.0
	수 출	189	-21.4	205	8.4	219	7.3
	생 산	351	-11.2	348	-0.8	362	4.1
LMC	내 수	188	5.8	183	-3.1	184	0.8

(주) 수출액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수출액 기준(MTI 741)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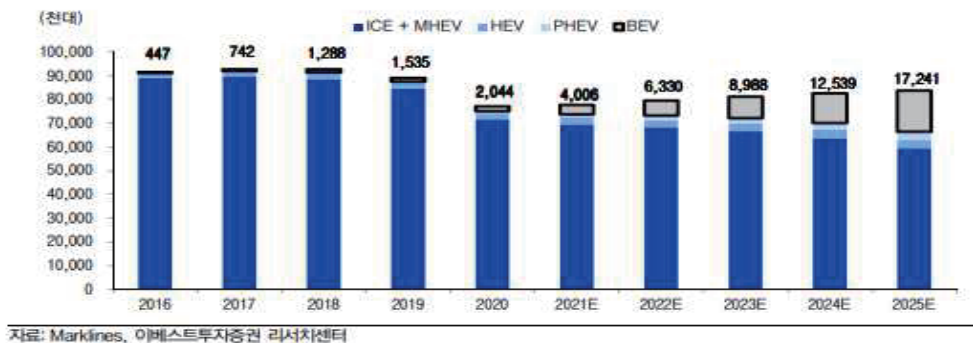
국내 및 해외 판매 현황				차종별 판매 현황(국내)				친환경차 판매 현황(국내)				
구분	2021년	2020년	증감율	구분	2021년	2020년	증감율	구분	2021년	2020년	증감율	
	국내	726,838	787,854	-7.7%	승용	223,741	307,090	-27.1%	전기차	42,448	18,612	128.1%
	해외	3,164,143	2,956,883	7.0%	SUV	210,033	213,927	-1.8%	하이브리드	68,416	66,181	3.4%
	계	3,890,981	3,744,737	3.9%	계	433,774	521,017	-16.7%	계	110,864	84,793	30.7%
	국내	535,016	552,400	-3.1%	승용	208,503	227,687	-8.4%	전기차	28,998	8,936	224.5%
	해외	2,242,040	2,054,432	9.1%	SUV	264,198	260,648	1.4%	하이브리드	80,743	62,048	30.1%
	계	2,777,056	2,606,832	6.5%	계	472,701	488,335	-3.2%	계	109,741	70,984	54.6%
	국내	54,292	82,954	-34.6%	승용	22,195	37,156	-40.3%	전기차	1,016	1,579	-35.7%
	해외	182,752	285,499	-36.0%	SUV	24,861	33,268	-25.3%	하이브리드			
	계	237,044	368,453	-35.7%	계	47,056	70,424	-33.2%	계	1,016	1,579	-35.7%
	국내	61,096	95,939	-36.3%	승용	5,226	11,002	-52.5%	전기차	1072	1032	3.9%
	해외	71,673	20,227	254.3%	SUV	54,282	80,916	-32.9%	하이브리드			
	계	132,769	116,166	14.3%	계	59,508	91,918	-35.3%	계	1,072	1,032	3.9%
	국내	56,363	87,888	-35.9%	승용				전기차			
	해외	27,743	19,436	42.7%	SUV	56,363	87,888	-35.9%	하이브리드			
	계	84,106	107,324	-21.6%	계	56,363	87,888	-35.9%	계			
총계	국내	1,433,605	1,607,035	-10.8%	승용	459,665	582,935	-21.1%	전기차	73,534	30,159	143.8%
	해외	5,688,351	5,336,477	6.6%	SUV	609,737	676,647	-9.9%	하이브리드	149,159	128,229	16.3%
	계	7,121,956	6,943,512	2.6%	계	1,069,402	1,259,582	-15.1%	계	222,693	158,388	40.6%

(2021년 1월~12월, 단위: 대)

(2021년 1월~12월, 단위 대)

- 국내 자동차 5사는 모두 내수 판매가 축소되었으나, 한국지엠을 제외한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 쌍용차는 해외 판매가 증가.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경우 2020년 판매 635만 1,569대에 비해 2021년은 666만 8,037대를 판매하여 전년 대비 4.9% 증가. 한편 2021년 현대차는 글로벌시장에서 총 432만 3,000대를, 기아차는 315만대를 판매 목표를 설정함.
- 글로벌 자동차수요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전기동력차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함. 주요국 환경규제 강화,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중국, EU 시장에서 큰 폭으로 성장하며 글로벌 판매 958만대(전년대비 62.1% 증가)로 확대됨.(LMC Automotive) 특히 테슬라는 전기차 생산을 주도하며, 2021년 93만대를 판매하였고, 2022년의 경우, 상해 Gigafactory의 추가 생산능력 확대와 더불어 Texas, Berlin 두 곳에서의 생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연간 총 170만대 수준까지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파워트레인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추이 전망



- 2022년 글로벌 전기차(BEV) 시장은 전년비 58% 증가한 633만대를 기록할 전망.(2021

- 년 404만대-자동차시장 비중 8%, 2025년 1,700만대-자동차시장 비중 20.6% 전망)
- 2021년부터 시작된 반도체 공급 부족은 2022년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중국 자동차시장은 2020년 전 세계 비중의 33%를 기록했는데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는 34%로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친환경 규제를 가속화하고 있음. 한국정부도 지난 10월 18일 NDC(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함. 주 내용은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 누적 보급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수송부문 온실가스배출을 2018년 대비 약 37.1백만 톤 감축하고, 사업용 차량을 우선 무공해차 전환(50만대 이상), 노후차 조기교체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은 “그룹의 미래 사업은 50%가 자동차, 30%는 UAM, 20%는 로보틱스”라고 밝히면서, 디젤엔진 신규 개발 중단에 이어 엔진개발조직을 전기차 개발 조직으로 개편한 상황임. 그리고 제네시스는 2025년부터 전동화 모델만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며. 현대차그룹의 이런 흐름은 2019년 현대자동차 ‘2025 전략’, 2020년 기아차 ‘Plan S’, 2021년 현대모비스 ‘Transformation 전략’과 ‘ES프로젝트’, ‘수소공장 1조원 투자’, ‘현대모터에버 IT개발사로 전문화’,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건설로 이어지는 현대차그룹의 모빌리티 전략이 구체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21년 현대자동차는 친환경차를 총 11만 ,9386대를 국내에서 판매했고, 기아는 10만 9,741대 판매 기록을 세움. 2022년은 현대/기아의 E-GMP 차량 해외판매가 본격화되는 두 번째 해로 2022년 BEV 판매량은 39.3만 대(YoY +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23만대, 16.3만대의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짐.
 -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전동화 상품의 핵심인 모터, 배터리, 첨단소재를 비롯한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개발-생산-판매-고객관리의 전 영역에서 ‘전동화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완성차 이외의 사업부문에서도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사업 포트폴리오와 밸류체인을 재정비하고, 스마트 시티, 스마트 물류, 신소재 등과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키워나가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힘.

내연기관 차량의 부품 수 및 전기차 비교 : 자동차 공급망 파괴를 일으키는 주요변수

구분 (단위: 개)	내연기관차 전용부품수	전기차에서 사라지는 부품 수	사라지는 비율
엔진부품	6,900	6,900	100
구동/전달 장치	5,700	2,100	37
내연기관 전용전장품	3,000	2,100	70
차체부품	4,500	0	
전기 및 제동부품	4,500	0	

- 이에 발맞춰 정부는 전기차 보급계획을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과 수입의존 핵심부품 국산화와 자동차 부품기업 1천 개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상태임.
- 2022년에 기존 내연차 외에 현대차는 GV70 EV, 아이오닉6, 기아차는 니로 EV, EV6 등이 출시할 예정임. 그리고 2023년에는 현대차의 아이오닉7, 기아차의 EV5, EV7/8 등이 출시될 예정이고, 쌍용차는 첫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을 출시할 예정임. (르노삼성과 한국지엠은 한국에서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조예와 볼트EV를 수입해서 팔고 있음)

1-2) 자동차부품

- 2021년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겪은 심각한 수출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매출실적이 전년대비 큰 폭의 회복세를 기록함. KAICA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기준 자동차부품산업의 누적 매출액은 78.6조 원으로 2020년 대비 16.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은 3.0조 원, 3.8%로 전년대비 각각 93.3%, 1.5%p 증가함. (KAICA 상장부품사 경영실적 조사기준). 그러나 작년 하반기 불어닥친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에 따른 생산차질로 인해 연간 영업실적은 이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2년 자동차부품산업은 완성차 시장에 발맞춰 수출부문 중심으로 생산량 및 매출실적이 일정 수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견실한 판매실적을 달성-계획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와 매각, 내수부진, 글로벌 헤드쿼터로부터의 신규아이템 수주 지연 등을 겪고 있는 외투완성차 3사의 상황이 상이한 까닭에 납품선(원청사)에 따른 부품사 간의 분절-양극화 현상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한편 2022년에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미래차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강화되고 내연기관차 판매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어지며 이는 2022년 자동차부품산업의 경기회복 국면에서 미래차 체제로의 산업전환이 핵심 화두로 등장할 것임을 시사함.
- 2019년 10월 <2030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 2020년 10월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2021년 6월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 등을 거치면서 정부의 미래차 전환 정책은 보다 정교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위계적-전속적인 가치사슬 속성장 독자적인 산업전환 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운 자동차부품산업에 특화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정책 주도권은 수요독점적 위치에 있는 극소수 완성사에게 쥐어져 있는 실정이며, 고강도의 산업전환 위기를 겪고 있는 내연기관 부품사만이 아닌 모든 부품사들이 미래차 진입을 시도함에 따라 자동차부품산업 내 산업전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임. 이 같은 시장선점 경쟁은 미래차 시장이 일정 규모로 성장하고 기존 수주 아이템이 고갈되는

2024-2025년 이후에 가장 첨예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2) 조선업종

■ 2021년 전세계 선박수주 국가별 점유율은 중국 1위(50%), 한국 2위(38%). 다만 한국은 고부가가치 선박(LNG, LPG 운반선) 비중이 커 적당 평균 선가가 중국 대비 3.5배. *12월 수주 실적 제외

■ 선박 수주 증가에 따라 조선산업 인력부족 문제 대두. 지난해 9월 정부는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해 2022년까지 8천명 양성 목표 제시했으나 근본적 대책은 없고 이주노동자 수 확대 등 부작용 우려되는 단기처방만 담겨

■ EU 공정위의 현중-대우조선 합병 불승인에 대해 현중자본은 취소 소송 제기. 산은은 3월 경 구체적인 플랜B를 밝힐 예정.

- 21년 세계적으로 조선업종은 매우 양호한 흐름을 보임. 이는 23년 시행 예정인 환경규제에 대비하여 컨테이너선, LNG선에 대한 신규 투자 발주가 이루어진 결과임.
- 2021년 전세계 선박수주 국가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중국이 2,280만CGT, 965척(점유율 50%)을 수주하여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2위로 1,735만CGT, 403척(점유율 38%)을 수주(12월 수주실적 제외). 선종별 점유율(CGT 기준)을 살펴보면, 중국은 벌커에서 압도적인 우위(89%)를 점하고 있고, 컨테이너선 역시 점유율(55%)이 높은 편임. 한국은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운반선(90%), LPG운반선(76%), 탱커(62%)에 강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11월 기준 적당 평균 선가도 1억 2,300만 불로, 중국의 3,500만 불 대비 3.5배 높았음.
- 국내 빅3 조선사는 2021년 총 466억불 수주 실적을 기록, 2021년 연간 수주 목표의 47%를 초과 달성하는 등 2~3년치 일감을 확보함. 한국조선해양은 225억 불 규모의 224척(해양 3기 포함)을 수주, 연간 수주 목표인 149억 불을 51% 초과 달성했으며, 삼성중공업은 122억 불 규모의 80척 신조선을 수주해 연간 목표인 91억 불을 34% 초과 달성, 대우조선해양은 108억 불 규모 60척 물량을 수주해 목표치 77억 불의 40% 이상을 초과 달성함.
- 2022년 발주량은 컨테이너선 발주 감소의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의하면, 2022년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전년 대비 15.3% 감소한 3,500만CGT, 발주액은 10.9% 감소한 860억달러 내외로 전망.
- 선박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조선산업 인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음. 21년 9월 정부는 조선산업 인력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조선 인력 8,000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실성 없는 정책임.
- 지난 수년간 진행되었던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산업'에 대한 관점보다 '금융'의 이해관계에 중점을 두고 비용 절감과 인력감축을 진행하여 2016년 이후 10만 명 이상 조선

산업 노동자들이 퇴출당하였음. 불과 7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 다시 인력 부족 문제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은 이러한 근시안적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를 보여줌.

3) 철강업종

- 세계 철강 수요는 2021년 18억 5540만 톤, 2022년 18억 9640만 톤 전망
-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전기로 확대(2020년 26%에서 2035년 42~47%로 증가) 예상
→ 스크랩 확보 경쟁 치열.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적용에도 박차.
- 신보호주의 강화, 미중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 철강시장 블록화 강화 전망
- 미래 모빌리티 전환 → 경량화 소재 수요 증가, 비철소재 경쟁 치열

- 세계철강협회(worldsteel)은 2021년 세계 철강 수요를 18억 5540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고, 2022년 세계 철강 수요는 약 18억 9640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음. 2022년은 기저 효과 축소로 올해와 비교해서 상승 폭이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세가 지속되

[단가수요전망 (백만톤, %)]

지역	철강 수요(백만톤)				철강 수요 전년비(%)		
	2019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EU(28)	158.7	140.8	158.7	167.4	▲ 11.2	12.7	5.5
독일	35.1	31.2	34.3	38.8	▲ 11.3	10.0	13.3
이탈리아	25.0	20.4	25.5	26.7	▲ 18.3	24.7	5.0
CIS	58.3	58.1	59.9	61.7	▲ 0.3	3.1	3.0
러시아	43.5	42.4	43.4	44.7	▲ 2.6	2.4	3.0
USMCA	135.3	114.0	129.6	136.5	▲ 15.8	13.4	5.4
멕시코	24.7	21.7	24.5	25.6	▲ 12.1	12.9	4.3
미국	97.6	80.0	92.3	97.5	▲ 18.0	15.3	5.7
중남미	41.8	38.8	47.9	48.3	▲ 7.2	23.2	0.9
아프리카	39.2	35.4	39.1	42.0	▲ 9.7	10.4	7.5
중동	49.3	47.2	48.1	50.5	▲ 4.4	2.0	4.9
아시아&대양주	1,258.4	1,305.0	1,330.2	1,345.1	3.7	1.9	1.1
일본	63.2	52.6	58.0	59.2	▲ 16.7	10.2	2.1
한국	53.2	49.0	53.4	54.2	▲ 8.0	9.1	1.5
중국	911.9	995.0	985.1	985.1	9.1	▲ 1.0	0.0
인도	102.6	89.3	104.3	111.4	▲ 12.9	16.7	6.8
ASEAN(5)	78.0	70.1	74.8	78.8	▲ 10.1	6.6	5.4
베트남	24.3	23.3	23.9	25.1	▲ 4.0	2.4	5.0
전세계	1,774.0	1,775.4	1,855.4	1,896.4	0.1	4.5	2.2
중국 제외	862.1	780.3	870.3	911.3	▲ 9.5	11.5	4.7

출처 : worldsteel

면서 2019년과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수요가 전망됨.

- 22년 철강산업이 맞닥뜨린 주요 이슈는 크게 네 가지임. 첫째는 탄소중립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임.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고로사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전기로의 비중은 2020년 26%에서 2035년 42~47%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전기로가 확대됨에 따라 스크랩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DRI 등 고급 철원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수

소환원제철이나 탄소포집 등의 기술 확보에도 전 세계가 나서고 있음.

- 둘째 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음. 특히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경제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고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빨라 지고 있음. 최근의 신보호주의 양상을 보면 수입규제를 넘어 자국산 구매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기후위기 명분의 수입규제 등을 통한 시장의 블록화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셋째 산업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플랫폼 비즈니스 확산에 따라 철강산업도 전자상거래가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전방산업에서 신모빌리티 전환에 따라 경량화 소재 수요가 증가, 철강과 비철강의 소재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음.
- 넷째 중국 철강 대형사 주도의 M&A 추진에 따라 중국의 대형 철강사들이 부상하고 있음.
- 국내 철강 전망을 보면 21년에는 국내 철강 수출은 감소한 반면 내수는 호조세였음. 22년은 국내수요 규모 자체는 견고할 것으로 예측되나 수요 증가세는 둔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임. 다수의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무역 규제 확산으로 철강 교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22년 철강 내수는 수요산업 회복세의 둔화로 2% 이하의 완만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수요 규모는 5,500만 톤을 상회하면서 2017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

4) 전기전자 업종

- 반도체 공급난 올해 점진적 완화 전망(위드코로나, 신규 팹 가동)
- 메모리 반도체는 D램 시장이 작년 3분기 반등하며 업황 개선 예상. 낸드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가격하락 전망
- 5G폰 선진국 시장 점유율은 정점에 근접. 인도 등 신흥시장 전환 본격화로 수요 강세와 경쟁 심화 예상

- 전기전자업종은 작년부터 문제 되었던 공급난이 완화될 것으로 보임. 반도체 등 주요 부품의 조달 차질이 장기화되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동남아 지역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으며 물류난으로 인해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음. 그러나 위드코로나로 인해 신흥국 생산이 정상화되고 비메모리 반도체 신규 팹이 점진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며 동계 올림픽 이후 중국의 전력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어 공급난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
- 반도체시장은 22년에도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의 영향이 예상됨, 다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공급망 리스크가 점차 희석되어 출하량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수그러들 거라고 예상됨.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D램 시장이 작년 3분기에 반등하면서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낸드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5G폰의 경우 선진국 시장에 점유율은 이미 정점에 근접해 가고 있지만 인도 등 신흥시장이 본격적으로 5G로 전환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보급형 5G폰의 수요 강세와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보임. 폴더블폰은 삼성이 갤럭시 Z3 시리즈 성공을 계기로

새로운 플래그십으로 정착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이외에 제조사가 다변화되고, 롤러블폰 등 품팩터 차별화 경쟁이 가속화됨.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2% 늘어난 2억800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지며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110% 늘어난 137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TV의 경우 주요 부품 부족, 패널 가격 강제로 인해 원가 상승 영향으로 역성장 국면에 접어들어, 그러나 OLED TV의 경우는 최상위 프리미엄 영역으로 자리 잡았고 라인업 확대 등을 통해 대중화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음. OLED TV 시장 점유율은 LG전자가 약 60%를 차지하며 경쟁사 대비 높은 프리미엄 제품 비중을 가지고 있음.
- 20년 팬데믹의 영향으로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교류가 확대되며 메타버스 및 AR/VR 기기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도가 증가함. 코로나는 AR/VR 관련 생태계가 확장되는 변곡점으로 작용하여 시장 성장이 본격화되고 향후 확장 현실 세계(XR)를 구현하기 위한 AR/VR 기기 출하량이 우선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2. 정치정세

- 헌정사상 최악의 20대 대통령선거가 노동과 민중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로지 정치권력을 지키려는 민주당과 정치권력을 빼앗으려는 국민의 힘 양당 간의 치졸한 네거티브 선거로 그 막을 내렸다.
- 우리가 목도했듯이 5년 전 촛불항쟁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최임 1만원 등 다양한 노동의제를 공약화했지만 이번에 20대 대선에서는 노동의제의 유실은 물론, 노동개악을 후보들이 앞다투어 공공연히 남발하는 반노동 대선임을 확인
- 보수양당기득권 정당 누가 당선되더라도 노동의 문제는 우리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기 위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노동계는 과제와 교훈으로 삼아야 함.
- 민주노총의 진보정당(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대선후보 단일화 방침이 실현되지 않았고, 진보정당 각개전으로 치러진 대선이었지만, 진보와 노동의 모든 의제가 양당수구보수정당 중심의 블랙홀로 빨려들어가는 선거전에서 노동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는 의미있는 득표를 하였음.
- 대선 이후 노동현안 해결에 주동성을 갖기 위해서는 진보와 노동당론이 민심을 움직여야 가능하다는 것, 즉 노동이 앞장서는 진보정치의 견인력이 없으면 현실정치에서는 아무도 노동을 신경쓰지 않고 오히려 노동개악, 노동탄압이 일상이 될 것임.
- 따라서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는 노동이 앞장서서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켜내야 하는 과제가 요구 됨.
- 대통령 선거이후 대통령 인수위원회 기간이 정부 정책 개입에 있어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했을때 노동중심의 산업전환을 위한 금속노조의 20만 총파업 성사 투쟁은 이후 노정간의 힘대결에서 노동이 주동을 쥐느냐 마느냐 시금석이 될 것임을 명확히 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함.로 하고 중국,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는 신냉전이 강화되고 있음.

- 한국은 미국의 반중 연대 참여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는 상황. 한국 정부의 선택에 따라서는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관계 경색과 경제적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음.
-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무산된 이후 경제의 자립성 강화를 통한 유엔제재의 무력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음.
- 미국은 오바마정권에서 추진했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바이든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고도화, 극초음속미사일, 잠수함발사 미사일 개발 등 지속적으로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북중러의 공조를 강화하여 미국주도의 국제제재를 돌파하고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국제정세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미국의 패권 약화 및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표출됨. 작년 말, 군사독재와 신자유주의의 실험장이었던 칠레를 ‘신자유주의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30대의 좌파대통령 보리치가 당선되었음. 칠레만이 아니라 2020년 볼리비아, 페루, 멕시코에서도 좌파대통령이 당선되었으며 올해 선거를 앞둔 브라질에서는 노동자당 룰라의 재집권 이 예상되는 등 남미전역에서 체제전환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음.
- 미국은 쿼드, 파이브아이즈, 오키스 등의 체계를 통해 추종 국가들을 규합하며 중국을 겨냥한 외교적 행보를 가속화. 이는 미국만의 힘으로는 중국과의 대결에서 힘에 부친다는 것을 방증.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8월 31일 아프간 철군에 대한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과의 격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이유를 밝히기도 함.
- 미국은 중국에 대한 봉쇄만이 아니라 나토의 확장과 우크라이나 분쟁 개입을 매개로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일본, 호주 등을 한편으로 하고 중국,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는 신냉전이 강화되고 있음.
- 한국은 미국의 반중 연대 참여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는 상황. 한국 정부의 선택에 따라서는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관계 경색과 경제적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음.
-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무산된 이후 경제의 자립성 강화를 통한 유엔제재의 무력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음.
- 미국은 오바마정권에서 추진했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바이든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고도화, 극초음속미사일, 잠수함발사 미사일 개발 등 지속적으로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북중러의 공조를 강화하여 미국주도의 국제제재를 돌파하고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4. 노동정세

1) 노동정세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 국내 공식실업률은 3%미만이지만 만성적 실업인구를 포함한 실질실업률은 12.3%로 임. 청년실업률은 공식적으로 6% 내외지만 한국경제원에 따르면 청년 체감 실업률은 작년 상반기 25.4%에 달함. 이는 2019년 22.9%에서 2년 6개월만에 2.5%포인트 급격히 증감.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 고용률은 75.2%로 OECD 37개국중 31위에 그침.
- 자동차산업에서 전기자동차의 확산, 발전산업에서 석탄발전의 퇴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2022년에 자동차부품사, 발전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2025년 전기차 생산량이 전체의 20%에 달하면 고용은 3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소부품사 퇴출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플랫폼산업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확대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문재인 정권 내에 시민재해와 중대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으나 5인 미만 적용제외 및 50인 미만 적용유예로 중대산업재해의 80%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실질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감독행정 개혁은 진행되지 않고, 일부 감독 인력 증원만 진행된 채로 중대재해발생 시 사고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책 수립에 노동자와 시민 참여도 배제된 상태임.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과 인과관계 추정, 공무원 처벌 도입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중대재해 사고조사 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노동자·시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이 요구되는 상황임.
-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115만 4,000명으로 민주노총 113만 4,000명보다 2만 명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노총이 3년 만에 제1노총으로 다시 되어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부 기구 등에서 한국노총의 입김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
-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80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6만 5,000명(10.4%) 증가하였으며 노조 조직률은 14.2%로 전년대비 1.7%p 증가. 단, 30-99인 사업장은 2.9%, 30인 미만 사업장은 0.2% 조직률에 그쳐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조 조직이 과제로 제기됨.

2) 주체정세

- 21년 민주노총 총파업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이후 민중진영이 코로나를 뚫고 거리로 나서기 시작함. 금속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5만 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전 조직적 결의를 모으지 못한 한계가 있음.
- 12기는 위축된 현장을 극복하고 당면하여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부품사 현장의 위기 대응, 조선산업의 발전전망을 요구하는 조선업종 현장의 요구, LG·삼성 등 무노조 대기업 현장에서의 투쟁 요구 등을 하나로 모아 투쟁으로 전환기 제조업의 전망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음.
- 또한, 금속노조 내에 매년 수천 명의 조합원 정년퇴직이 현실화 되는 상황이고 정년퇴직 문제와 신규채용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음.
- 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현대제철 비정규직 투쟁, 현대위아·평택비정규직 투쟁 등이 해를 넘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지엠 비정규직 특별교섭 등 연초부터 비정규직

투쟁이 조직 내 확산 될 예정임.

- 금속사업장 내에서는 복수노조 사업장이 120개 사업장이 되는 등 복수노조의 노조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이 필요한 상황임.
- 노조 조직화는 올해도 끊임없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삼성·LG 등 재벌사 조직 확대에 대한 조합 차원에 대책과 산업전환 위기 속에서 가장 고용불안을 느끼는 자동차 부품사에 대한 조직화 대책이 필요함.
- 현대, 기아차 지부는 작년 말에 진행된 차등성과급(탈런트 리워드)과 관련하여 공동투쟁을 모색 중. 향후 현대, 기아차 중심으로 계열사 원하청 연대투쟁을 만들어 내기 위한 조합 차원의 계획이 필요함.

II. 사업방향과 목표

투쟁 중심! 조합원 중심! 울산지부 답게!!

● 투쟁 중심!

21년 금속노조 역사에서 최선봉에 서서 투쟁해온 울산지부 투쟁 제일주의!

● 조합원 중심!

조합원들의 이익 앞에서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해내고 마는 간고분투 투쟁정신!

● 울산지부 답게!

자본과의 대결에서 정면돌파 비타협정신으로 연전연승을 이어가는 금속노조 울산지부에 대한 자부심!

[사업방향과 목표]

1.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위한 20만 총파업투쟁 적극 복무
2. 구조조정 분쇄! 민주노조 사수! 승리하는 투쟁
3. 1만 시대 완성을 위한 울산지부 조직 강화!
4. 미조직 사업 전면화! 청년간부 육성!
5. 2022년 지방선거 승리! 노동자 정치세력화 기반확대!
6. 한반도 평화실현, 자주통일 운동 역량 강화
7. 계급, 계층 연대투쟁 강화

Ⅲ. 주요사업 계획

1.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위한 20만 총파업 투쟁 복무

노동이 철저히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는 자본중심 산업전환은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과 그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권력이 결탁해 그야말로 자본 천국 노동지옥 대한민국을 획책하고 있는 지금, 개별 단사의 대응으로는 그 활로를 모색하기조차 벅찬 현실이다. 수많은 지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금속노조의 강력한 투쟁으로 노동이 숨 쉴 수 있는 산업전환 정책으로 정부를 견인할 것을 바라고 있다.

자동차산업 부품사와 유관한 협력사가 집중되어 있는 울산지부는 지금의 자본중심 산업전환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12기 금속노조의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위한 금속노조 20만 총파업은 상투적인 구호가 아니라 울산지부 7500 조합원들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사활적인 투쟁이다. 반드시 20만 금속노조 총파업투쟁을 성사시키자.

- 울산지부 1천 확대간부 20만 총파업 결의대회 성사(5월)
- 집단교섭 사업장, 대각선교섭 사업장 쟁의권 확보 시기 일치(6월 말)
- 간부 교육 및 전 조합원 총파업 교육 성사(3월 ~ 6월)
- 20만 총파업 성사를 위한 현장대장정(6월 중순 ~ 7월 중순)
- 현장대장정 시기 1간부 1일 1조합원 파업결의 조직사업 전개

2. 구조조정 분쇄! 민주노조 사수! 승리하는 투쟁

알루코 자본의 고강알루미늄 기업청산 기도, 복수노조사업장 확대 및 노노갈등 예고, 각 단사별로 자행되는 자본의 일방적 단협위반 등 2022년 초반 현장정세가 심상치 않다. 여기에 권력재편기 수구회귀 정세를 이용해 민주노조 탄압이 예상된다. 노동탄압 정세에 각을 세우고 구조조정 분쇄 및 민주노조 사수투쟁의 결의를 높이자.

- 구조조정 분쇄 및 민주노조 사수 투쟁으로 고용안정
- 현안투쟁 사업장 순환 연대투쟁 상시적 전개
- 복수노조사업장 대표자 연석회의 구성 및 공동대응력 제고

3. 1만 시대 완성을 위한 울산지부 조직 강화!

울산지부 1만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1만 울산지부 전체 대오가 일사분란한 하나의 대오로 조직력과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강화가 요구된다. 지부 전체 조합원이 금속노조와 울산지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지도체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 지부 운영위 성원 지도력 강화

노동조합은 대표자 중심의 조직체계로 운영된다. 조합원들에 대한 지도가 단위 사업장 담장을 넘어 울산지부 소속 지(분회)까지 집단적으로 보장되도록 지부운영위 성원들의 광폭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 지부 위원회 및 부서별 지회 담당강부 안정적 확보로 1만 시대를 준비하는 간부체계 운영 및 단련

- 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이 당사자 특성과 조건 고려 지속적이고 안정적 전개.

- 지부 교육위원회의 정비 및 강화, 세련된 선전홍보물(영상) 제작 및 공급망 구축

4. 미조직 사업 전면화! 청년간부 육성!

최근 몇 년간 미조직 사업의 성과는 울산지부의 규모를 3배로 성장시켰다. 양적 성장은 질적 변화를 담보한다. 울산지부 선배들의 투쟁 전통을 계승하는 청년노동자들의 투쟁은 지부의 전망을 밝게 한다. 젊은세대가 보수화 되는 경향이 보이는 현실에서 금속노조로 조직된 청년노동자들은 그 자체로 가장 선진적이고 조직적이며 동시에 전투적인 노동자의 고유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해답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사업에 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청년노동자들을 민주노조 금속노조로 조직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 금속노조의 사명이다. 따라서 12기 울산지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공격적으로 미조직 사업에 임해야 하며, 동시에 청년노동자들을 민주노조운동을 이어나갈 청년간부로 육성, 발전 시켜야 한다.

- 전 조직적 공단 조직화 사업 강화

- 신규노조 청년간부 역량강화 사업 전개

- 자주성, 투쟁성, 연대성, 계급성, 변혁관이 투철한 청년간부 육성

- 지부 청년위원회 신설, 다양한 역사, 문화 기행, 교육 활동 전개

5. 2022년 지방선거 승리! 노동자 정치세력화 기반 확대!

대통령선거, 국가 권력교체기에 노동이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진보정당 운동이 죽을 쓰고 있다. 민주노총이 주도한 진보 5당 후보 단일화가 불발되었다. 하지만 진보대단결의 원칙을 2022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방침은 유효하다. 문재인 정권의 민주노총에 대한 지배 개입 배제 전략은 노동운동을 한적이 있는 출세주의자들의 변절로 이어졌다. 노동현장에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비판적 지지가 여전히 난무하고 있다. 아직 현장의 노동자 집권의지가 거대 보수 양당정치를 넘어서지 못한 결과이다. 이대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강령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중도반단할 수 없다. 금속노조의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노동자 중심의 진보집권으로 완성된다. 다행히 울산지역 진보 3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대단결의 원칙으로 공동대응하기로 하고 손맞잡고 나서고 있다. 울산지부 7천500 조합원과 그 가족이 노동자를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재벌이익만을 옹호하는 기득권 보수 양당정치를 심판하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진보정당 단일후보의 당선을 위해 앞장서자.

-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방선거 방침 수행
- 진보정당 후보 당선을 위한 노동자 정치실천단 가동
- 진보정당 후보 당선을 위한 조합원 계급투표 조직
- 현장 내 진보정치에 대한 허무주의 -반정치주의 극복
- 정치위원회 강화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기반 확충
- 정치위원회의 일상적 정치활동 강화, 진보정당과 연대강화

6. 한반도 평화실현, 자주통일 운동 역량 강화

지구상 단 하나의 분단국가 한반도,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며 반목과 대결로 점철되어 온 70여 년, 민주노총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자주통일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선지 22년.

분단국가의 노동자 통일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대통령선거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이 호전될 수 있도록 조국통일의 기운을 높여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운동을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울산지부의 또 하나의 자랑스런 역사는 노동자 자주통일운동의 선봉대로 힘차게 전진해온 역사이다. 12기 울산지부 통일위원회를 더욱 강화하여 조합원들 속에 자주통일 의식이 고취되고 7,500 조합원들이 자주통일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전환적 해로 만들어 나가자.

- 지부 통일위원회 안정화 및 일상적 통일운동 전개
- 자주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교육, 실천 프로그램 진행
- 불평등한 한미공조 반대투쟁 전개
- 반미반제, 반일 투쟁 전개
- 울산지역 통일운동 역사 기행
- 민주노총 통일사업 및 통일선봉대 참가

7. 계급, 계층 연대투쟁 강화

금속노조는 민중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연대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연대는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다. 한국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고통받는 민중들의 처지를 함께 느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이것은 금속노조의 투쟁정신과 일통한다. 우리 금속노조 노동계급은 자본의 탄압과 착취, 노예취급을 받으면서 절치부심 민주노조를 건설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우리보다 처지가 못한 사회적 약자, 탄압받고 있는 민중들과 함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이 금속노조, 노동자들의 사명이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계급, 계층과 다양한 연대연합투쟁에 복무하자.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연대투쟁
- 우리세금 우리가 결정하기 조직위원회 연대투쟁
- 그 외 울산지역 계급, 계층 연대투쟁 강화

IV. 부서사업 계획

【 조직부 】

1.사업방향 및 목표

1)조직쟁의담당자회의 안정화

- 조직쟁의담당자회의 안정화
- 지부 조직부장의 전투적기풍 강화와 실천형 노동운동간부로 육성

2)울산지부 조직강화사업

- 슬로건 : 울산지부답게!
- 울산지부의 단결과 결사관철의 기풍 확립
- 실천형 노동간부 육성 프로그램 실시

3)현장조직력 강화 및 확대사업

- 신생지회 조직강화를 위한 지회별 간담회 실시
- 50개 지회, 분회 조직부 네트워크 강화

4)총파업투쟁 성사

- 조직부사업의 20만 총파업 성사에 총력 복무
- 금속노조 울산지부 조직력 강화사업의 총화는 총파업투쟁으로 집결
- 구조조정 분쇄 투쟁, 노동법 개정 투쟁 의식화 조직화

5)투쟁사업장 지원 및 신생지회 설립 연대 지원

- 투쟁사업장 및 노동조합 불안정 지회의 지원 및 연대 투쟁사업 관장

2.사업계획

1)조직쟁의담당자회의 안정화

- 월1회 조직쟁의담당자회의 정례화 사수
- 조직쟁의담당자 역량강화와 단결력 높이기 위한 조직부수련회 개최
- 투쟁과 교육의 효율적 배치로 실천가형 노동운동 간부로 육성
- 조직부장의 투쟁전술 및 선동능력 배양 교육 실시

2)울산지부 조직강화사업

- 울산지부답게! 계급성, 연대성, 투쟁성, 변혁성의 모범적인 롤모델 창출
- 울산지부답게! 자긍심 고취 위한 프로그램 및 물품 보급
- 지회, 분회와의 소통 강화로 울산지부 투쟁지침의 결사관철 기풍 확립
- 조직부 네트워크 강화로 신속한 투쟁요구시 대응력 강화
- 실천형 노동간부 육성을 위한 교육과 투쟁 프로그램 보급

3)현장조직력 강화 사업

- <현장대장정> 실시
- 일상적인 지회별 간담회 조합원 간담회 및 교육 실시
- 구별 투쟁체계 구축 및 구별 조직부장단회의 운영
- 상시적인 지부-지회(분회) 조직부 소통으로 즉각적인 투쟁 지원
- 조직부 네트워크를 통한 일상적인 노동자 의식 교육 전파

4)총파업투쟁 성사

- 금속노조 울산지부 조직력 총화를 2022년 금속노조 총파업으로 집결
- 20만 총파업 성사를 위한 울산지부 총파업을 통해 8,000대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승리하는 금속노조의 위상을 조합원 모두의 가슴에 새길수 있는 대규모 총파업 집회 성사
- 금속노조 울산지부 조직부는 총파업투쟁의 돌격대
- 구조조정 분쇄 투쟁, 노동법 개정 투쟁 의식화 조직화

5)투쟁사업장 지원 및 신생지회 설립 연대 지원

- 2022년 각지회 임금 및 단체협상 승리를 위한 투쟁 지원
- 투쟁사업장 및 복수노조로 인한 노동조합 불안정 지회의 투쟁 지원
- 신생지회 준비위원회 과정과 설립 안정화기간까지 투쟁 지원

【 문화부 】

1. 사업목표

- 문화부 회의 안정화를 통한 현장 문화사업의 토대 구축의 발판을 만든다
- 노동자 문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문화패 건설 지원사업 진행한다.
- 20만 총파업 투쟁 성사를 위한 문화선동사업을 위한 지부 문선대 구성
- 현장의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모색
- 노동자문화교육을 통한 노동자 문화사업의 주체 발굴

2. 2022년 문화부 사업계획

1) 문화부 회의의 안정화

- 격월 1회 정기적인 회의를 안정적으로 운영
- 지부, 지회 문화사업에 대한 이해와 실행 방안 모색
- 노동자 문화사업에 대한 역량 강화와 단결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수련회 진행
- 노동자 문화사업을 지원할 문예 역량 준비 및 현장 주체 발굴

2) 다양한 현장 문화패 조직 지원사업

① 현장문화패 조직 지원 사업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현장 문화패 활성화 사업 지원
- 현장 문화패 조직사업 시도 지원

② 문화사업 지원 시스템 구축

- 노래, 풍물, 몸짓, 기록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 마련
- 매체별 강사단 확보 및 현장과 문화일꾼의 연결 시스템 구축

3) 20만 총파업 및 임단협투쟁 승리를 위한 울산지부 투쟁 문선대 구성

- 전체 조합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울산지부 보급 울동 마련
- 투쟁의 의의에 맞게 선전선동이 가능할 수 있게 2022년 울지부 투쟁 문선대 구성
- 각종 현안투쟁 및 20만 총파업투쟁에 전체 조합원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선전선동 부대 구성

4) 현장 조직문화, 집회문화의 다양화를 위한 연구사업

- 문화투쟁 기획단 구성을 통한 연구와 현장 적용
-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집단적인 공동체 놀이 연구, 보급
- 노동계급성을 강화하고 투쟁과 노동, 생활의 공동체를 위한 조직문화, 집회문화에 대한 연구

5) 노동자 문화운동을 위한 교육사업

① 노동자 문화학교

- 노동자 문화운동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높이고, 현장 문화 사업의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사업 진행
- 매체별 특성에 대한 이해와 실습을 통한 노동자 문화사업 집행의 토대 구축

② 음향 기초 강좌

- 각 지회별 방송장비에 대한 기본 이해와 운용에 대한 실습

③ 조합원과 함께하는 문예강좌

- 분기별 문화예술 강좌 개설 및 역사기행
- 소품을 통한 문화예술 체험 강좌

④ 유튜브, SNS의 활용을 통한 조합원과의 일상적 소통을 위한 시스템과 콘텐츠 마련을 위한 교육

- 지부 선전부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진행

【 선전부 】

1. 사업방향 및 목표

- 다양한 형태의 소식지 발행으로 조합원 및 확대간부와의 소통강화
- 선전물 기획 및 제작 운영팀 구성
- 변화하는 시대 트렌드에 맞는 선전물(영상매체 등) 기획, 생산
- 전조합원에게 전달되는 선전물 체계(구축망) 마련
- 노조, 지부 선전물에 인식 재고

2. 사업계획

- 1) 다양한 형태의 소식지 발행으로 조합원 및 확대간부와의 소통강화
 - 카드뉴스 등 웹자보 발행
 - 유인물, 대자보 정기적 발행
 - 페이스북 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조합원 소통강화
 - 확대간부 텔레그램 채널 개설로 소통강화
 - 월1회 월간브리핑(지부장) 영상제작
- 2) 선전물 기획 및 제작 운영팀 구성
 - 울산지부 소식지 및 영상제작을 위한 운영팀 구성
 - 12기 동안 내용생산 교육 및 영상제작 교육을 통하여 이후 울산지부 선전팀 활동
- 3) 투쟁소식지를 넘어 전조합원들의 투쟁성, 변혁성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선전매체 생산
 - 시기성, 정기성, 지속성을 보장하는 선전매체 개발 배포
 - 지부선전 매체에 대한 전 조합원 공급체계 구성.
 - 선전매체 강화 발전을 위한 피드백 체계 구성.

【 총무부 】

1. 사업방향 및 목표

- 1) 지회 회계 담당자 역량 강화
- 2) 지부 감사위원회 사업 지원
- 3) 지부 산하 사업장 경영분석 지원
- 4) 문서수발 업무 체계 완비

2. 주요 사업계획

- 1) 지부 회계 역량강화
 - 노조 회계 프로그램 사용지원
 - 회계담당자 회의 진행
 - 지회 회계 담당자 감사지원 및 회계 교육 실시
- 2) 지부 감사위원회 사업 지원
 - 일, 주, 월 단위 구분 회계 정리 체계 정비
 - 월 단위 감사 준비
- 3) 지부 산하 사업장 경영분석 지원
 - 경영분석 실무교육
- 4) 문서수발 업무 체계 완비
 - 규정에 따른 문서 관리 강화

【 노동안전보건부&위원회 】

1. 사업 목표

- 1) 근원적 재해예방체계 구축 및 노동재해 예방 활동 강화
- 2) 부당한 산재불승인 대응 및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쟁취
- 3) 노동안전보건활동 집행강화 및 지부, 지회(분회) 활동체계 구축
- 4) 지회(분회) 노동안전보건담당자 역량 강화 및 선전사업
- 5) 전 사회적 노동안전보건 제도개선과 전체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 전개

2. 사업내용

1) 근원적 재해예방체계 구축 및 노동재해 예방 활동 강화

-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 참여권 확대를 통한 사전적 산업재해 예방체계 정착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시 주도적인 노동자 참여를 통한 예방체계 정착
-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시 금속노조 중대재해 대응지침에 따른 전 조직적 대응과 근본 예방대책 마련
-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활성화를 통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응 활동 지원 및 노동자 보호 대책 추진

2) 부당한 산재불승인 대응 및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쟁취

- 조합원 직업병(업무관련성 질병) 요양신청서(관련 증빙자료 등) 지부 검토 후 산재신청 지원
- 산재 불승인 및 부당한 치료받을 권리 침해 대응 활동
- 근골격계 산재 지연처리 대응 및 집단 요양 투쟁 전개

3) 노동안전보건활동 집행강화 및 지부, 지회(분회) 활동체계 구축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지회(분회)노안담당자회의 (매월)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지회(분회)노안담당자 수련회 (년 2회)
- 지회(분회) 노동안전보건 주요 현안 파악 및 활동지도
- 지회(분회) 노동안전보건사업 담당자 선임 촉구 및 활동체계 구성을 통한 집행력 강화
- 지회(분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상화 지원
-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노안담당자 활동시간 공동요구 투쟁

4) 지회(분회) 노동안전보건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선전사업

- 월 1회 노동안전보건위 회의 시 1강좌 교육육 통한 역량강화
- 지회(분회) 노동안전보건 교육 지원
- 지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소식지 분기별 1회 포함, 년 6회 발행

5) 전 사회적 노동안전보건 제도개선과 전체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 전개

- 주요 산업재해, 직업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제도 정책 개선
- 중대재해처벌법 안착화 및 법 재개정 투쟁
- 산재보상보험 전면 개혁 투쟁
- 명예산업감동관 내실화 통한 사업전개

【 통일위원회 】

1. 사업방향 및 목표

- 1) 위원회의 안정화 및 주체역량 강화
- 2) 민족(재일동포)자주교류사업 활성화
- 3) 자주통일운동 실천강화를 통한 반일반미, 반제투쟁
- 4) 상급단체 위원회 수임 사업 및 지역통일단체와의 협력사업 전개

2. 사업 목표에 따른 사업계획

1) 위원회의 안정화 및 주체역량 강화사업

- 지부 통일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안정화, 각지회 통일담당 및 주체 조직사업
- 위원회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 통일정세 교육사업 전개
- 주체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노동자통일학교 참가 조직
-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상.하반기 역사기행: 4.3제주항쟁 역사기행, 여순항쟁 역사기행)

2) 민족자주교류사업 활성화

- 민족자주교류사업 성사를 위한 국가보안법, 대북제재 철폐 투쟁 전개
- 재일동포(조선학교)와의 교류사업 및 지원사업을 통한 민족자주교류사업 전개
- 일제 강제징용 사죄배상운동, 식민지역사청산을 위한 수요행동 참가 조직

3) 자주통일운동 실천강화를 통한 반일, 반미, 반제투쟁 전개

- 중앙통일선봉대, 지역통일선봉대 참가 조직과 일상적인 실천 투쟁사업 전개
- 시기별 노동자 자주통일대회(3.1, 4.27, 6.15, 8.15 전노대, 10.4 등) 참가 조직.
- 사드철폐 및 세균실험부대 철폐, 불평등한 한미동맹 해체 투쟁 등 반미투쟁 전개
- 시기별 정세별 자주통일운동 전개

4) 상급단체 위원회 수임 사업 및 지역통일단체와 협력사업 전개

- 상급단체 및 금속노조 통일위원회 사업 수임 및 연대사업 전개
- 지역통일단체와 협력사업 확대
- 노조, 타 지부와 연대하는 투쟁사업 전개

【 정치위원회 】

1. 사업방향 및 목표

- 1) 지부 정치위원회 강화
- 2) 정치위원회 현장 정치활동 강화 및 노동정치 기반 확대
- 3) 조합원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현장 정치교육 강화
- 4) 2022년 지방선거 진보정당 당선에 복무

2. 주요사업 계획

1) 지부 정치위원회 강화

- 금속노조,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와 연계 강화
- 지부 산하 전조직 정치위원 구성
- 상반기 월 1회 지부 정치위원회 개최 / 하반기 격월
- 지부 정치위원회 성원 진보정치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2) 정치위원회 현장 정치활동 강화 및 노동정치 기반 확대

- 현장 직접정치 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 및 담당자 수련회 개최
- 현장 직접정치 모범단위 선정 및 지원
- 현장정치활동을 위한 울산지부 정치위원회 정치아카데미 진행

3) 조합원 진보정치 교육 강화

-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연계, 전체 조합원 노동자 정치세력화 교육 전개
- 금속노동자 정치학교
- 노동현안-정치현안에 대한 긴밀한 대응(지부정치위 유인물 및 대자보 등 선전물 발행)

4) 2022년 지방선거 진보정당 당선에 복무

- 울산지부 노동자 정치 실천단 가동
- 진보정당 후보 당선을 위한 지부 전 조합원 계급투표 조직
- 진보정당과의 협력을 통한 현장직접정치활동을 지원
- 반노동, 보수정당에 대한 대응력 강화
- 진보정당 후보 및 진보정당 지지후보 2022년 정치후원금(세액공제) 모집사업
-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방선거 방침 복무

【 미조직비정규직조직위원회 】

1. 사업방향과 목표

- 1) 울산지부 1만 조합원 시대 조직 복무
- 2) 각 지회 미조직사업 주체 형성 및 미조직활동가로 역량 강화
- 3) 공단 조직화 사업
- 4) 일상적인 노조상담, 상담역량 강화
- 5) 복수노조 사업장 대응투쟁

2. 주요사업계획

1) 미비위원회 회의 및 역량강화

- 지(분)회 미비위원회 위원 회의 정례화
- 미비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수련회
- 미비위원회 회의 진행 시 사전 역량강화 교육 배치
- 실천투쟁 중심 미비위원회 운영

2) 작은사업장 조직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 금속사업장에 대한 금속노조 계급 대표성 확보를 위함
- 금속영역 5인 미만 / 영세사업장 조직사업에 대한 울산지역 기초자료 조사

3) 공단조직화 사업

- 공단지역 금속사업장 현황 조사 및 전략 공단 선정
- 정기적 ‘주간실천 공단조직화 선전전’ ‘법률, 산재 상담 등 금속노조 상담부스 운영’
- 일상적 금속노조가입 선전사업 확대, 강화
- 공단기획조직사업

4) 노조상담 및 신규노조 안정화 지원

- ‘원샷 노조설립 상담에서 노동조합 운영까지’
- 신규노조 안정화를 위한 노동조합 운영, 지부의무교육 매뉴얼 완비 및 교육
- 신규노조 간부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교재 마련, 교육-수련회

5) 복수노조 대응 투쟁

- 복수노조사업장 대표자 연석회의 구성
- 공동대응, 공동투쟁력 강화

【 교육위원회 】

1. 사업방향 및 목표

- 1) 지부 전 조합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위원회 위상 재고
- 2) 지부 교육위원회 강사단 구성
- 3) 노조 교육위 수임사업 집행
- 4) 전조합원 교육체계, 내용 준비(12기 내 완성)

2. 주요사업

- 1) 지부-지회 교육담당자 네트워크 형성
 - 지부 산하 조직 간부 및 조합원 교육 현황조사
 - 지회교육사업 방향 수립 및 교육 지원
- 2) 지부 교육 강사단 구성 및 역량강화
 - 노조 의무교육, 지부의무 교육내용 및 교안 준비
 - 교육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수련회
 - : 기본교육 이수(노동자 세계관, 한국노동운동사, 산업전환과 금속노조)
 - : 교육방법 이수(참여형 교육, SWOT 분석에 기초 사업계획, 투쟁계획 짜기 등)
 - 지회 교육주체 발굴
- 3) 간부 및 조합원 교육
 - 노조 수임교육사업(신임임원 의무교육, 조합원 의무교육) 집행 책임
 - 노동중심의 산업전환을 위한 금속노조 20만 총파업 교양해설 사업.
 - 신교노조 의무교육프로그램 업데이트
 - 노조간부 역량강화 교육(간부론, 계급관, 사회변혁관 등)
 - 정기적, 지속적, 안정적 지부 전체 조합원 교육사업을 위한 전일적 교육체계 준비
- 4) 교섭위원 교육
 - 산업전환과 노동조합 교육 진행
- 5) 교육내용 개발
 - 새 시대를 준비하는 새형의 민주노조운동
 - 노동자 중심의 세상을 선도하는 변혁적 노동운동
 - MZ세대가 책임지는 민주노조운동

【 청년위원회(준) 】

1. 사업방향 및 목표

- 1) 12기 내 지부 청년위원회 출범(신설)
- 2) 청년간부 발굴, 육성 및 네트워크 구성
- 3) MZ세대 특성을 고려한 조직, 토론 문화 형성
- 4) 가맹단위 청년조합원 연대사업 전개

2. 주요사업

- 1) 청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 운영
 - 기존 위원회 사업 방식을 탈피한 실사구시한 청년위 준비위원회 운영
 - 청년위원회 이름 공모 사업
 - 매월 역사, 현안, 시대트렌드 등을 주제로 청년조합원 토론회 진행
 - 청년조합원이 직접 구상하고 직접 설계하는 청년조합원 모임 진행
- 2) 청년간부 역량강화 사업
 - MZ세대 조합원과 한국현대사와의 만남 / 역사기행 사업
: 동학혁명성지순례, 4.3제주민중항쟁, 5.18광주민중항쟁 등
 - 노동운동 선배와 함께하는 테마(역사, 계급관, 변혁관, 인생관) 교육
예시1.) 청년조합원 전태일 열사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결심하다
예시2.) 청년조합원 1980년 5월 18일에 ‘그 시절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상황극)
예시3.) 청년조합원 눈에 비친 좌파란? 민주노조운동이란? 노동자정치세력화란?
- 3) 민주노총 가맹단위 청년조합원과의 교류사업
(우물밖예 금속노조 / 세상을 책임지는 금속노조)
 -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청년위원회 연계 사업
 - 금속노조 밖의 민주노조 청년조합원과 소통 사업

【 여성위원회 】

1. 사업방향 및 목표

- 1) 여성위원회 주체 형성
- 2) 민주노총, 금속노조 수임사업
- 3) 지역여성단체 연대 및 공동투쟁

2. 주요사업 계획

1) 지부 여성위원회 주체 조직

- 지부 여성위원장(비상근) 인선
- 지부 여성위원회 구성
- 지회 여성간부 간담회

2) 민주노총, 금속노조 수임사업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사업/ 제도 개선 투쟁 전개

3) 지부운영위 성평등 교육 실시

4) 울산지역 여성단체와의 연대, 공동행동 추진

V. 2022년 임단협 투쟁 방침 수립 일정

1. 단체교섭 투쟁 기조

첫째, 조합의 교섭방침과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위한 금속노조 20만 총파업 투쟁에 적극 복무

둘째, 구조조정을 분쇄! 민주노조 사수! 투쟁 승리를 위한 울산지부 투쟁을 적극 배치

셋째, 중앙교섭, 집단교섭 미참여 사업장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공동투쟁의 토대를 마련

넷째, 임단투시기 간부교육, 조합원 교육 강화

2. 2022년 요구방침 및 요구안

1) 금속노조 요구방침

- ① 통일요구는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교섭 등 모든 교섭단위 요구안에 포함한다.
- ②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 교섭 요구에 중앙교섭 요구를 반드시 포함한다.
- ③ 교섭단위별 요구안은 조합 승인 절차를 거쳐 노조 지침에 따라 전조직적으로 일괄 발송한다.
 - ✓ 중앙교섭 요구는 조합 대의원대회, 지부 요구는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
 - 사업장 요구는 지부에서 심의해 조합에 보고
 - ✓ 요구 지침에 따라 중앙교섭·지부교섭·사업장보충교섭 요구를 하나의 묶음으로 일괄 발송함. 사업장보충교섭 요구안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 이후 추가 발송.
 - ✓ 조기교섭 돌입에 따라 사업장 요구안을 선 발송한 단위는 조합 요구안 확정 즉시 추가 발송.
- ④ 단협 교섭이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공동요구 중 필수요구를 반드시 포함한다.
- ⑤ 임금인상 요구 시 조합이 정한 요구액을 하향할 수 없다.

2) 요구안

(1) 통일요구

① 산업전환협약

【산업전환대응】

- ① 조합과 회사는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 및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시기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투명한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책임성 있는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한다.
- ② 제1항과 관련한 의제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2. 신기술 도입 관련 직무 교육·훈련
3. 노동안전 및 인권보호
4. 기후위기 대응
5. 공정거래

③ 조합과 회사는 구체적인 산업전환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할 기구를 **2022년 내**에 운영하고 세부방안은 사업장별로 정한다.

④ 조합과 (사용자협의회 및) 회사는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노사를 넘어 정부가 함께하는 산업·업종·지역별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며,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보호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다.

⑤ 회사는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 요구 방식 :

- 중앙교섭 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쟁취한 단위 : 기존 합의에 ⑤항 추가 신설을 요구함.
- ④항 미쟁취 단위 : 2021년 교섭에서 산업전환협약 또는 비슷한 제목과 취지의 합의를 했지만 ④항의 내용(정부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에 나서고, 기업과 노동자 지원·보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다)을 쟁취하지 못한 사업장은 ⑤항뿐 아니라 ④항도 반드시 다시 요구.
- 산업전환협약을 아예 쟁취하지 못한 단위 : 신설 요구 ⑤항을 포함한 전체 산업전환협약을 요구함. 다만 ③항의 경우 올해 교섭에서 2022년 상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을 합의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이 2022년 내에 운영하도록 요구함.

- ⑤항 신설 취지 : 정부는 최근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재편과 일자리 전환 지원정책을 강화·구체화하고 있어,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특히 기활법 상 사업재편계획 승인 절차에는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 및 투자 계획’, ‘사업재편에 따른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재편계획을 제출하도록 명시. 이같이 고용과 관련된 사안을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위협하되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의 사업재편에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⑤항을 산업전환 협약에 추가해 조합과 사전 합의 절차를 못 박고자 함.

- ④항 쟁취가 중요한 이유 : 산업전환협약 요구는 사업장 차원에서 산업전환 대응을 노사가 공동으로 계획하자는 목적과 함께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산업전환에 개입할 경로를 노사관계를 통해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아 설계됨. ④항이 바로 후자를 담보하는 요구 조항. 이미 일부 지역에서 노사 간 산업전환협약 합의의 힘을 토대로 지역 층위 산업 정책 개입들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음. 노조는 산업전환협약 체결 사업장에 전환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부 정책 도입의 필요성 등 산업전환협약의 의미와 후속과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기획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아울러 지난해 말 정의당과 함께 발의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음. 중앙 차원에서는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산업전환협약 ④항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중앙교섭 조인식에서 ‘금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의로운 미래전환을 위한 금속 노사 대정부 요구’ 문안을 확정된 바 있음. 이 요구는 △금속 사업장 산업전환 대응 정부 지원 확대 △정의로운 전환에 부합하는 지원 정책 기조 수립 △노동이 참여하는 중층적 협의체 마련 등을 담고 있음. 다만 지난해 교섭에서 ④항의 내용을 포함해 산업전환협약을 쟁취한 교섭단위는 중앙교섭 참가사업장을 포함해 100곳 수준이어서 정부나 전국의 지자체를 움직일 만큼의 힘을 발휘하기에는 부족한 수준. 이에 올해 ④항 쟁취 사업장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

② 위험성 평가

현행(금속산별협약 31조)	개정안
【위험성 평가】 ① 회사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매년 조합(지회,분회)과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② 회사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노사동수가 참여하며, 조합측 인원내 대한 회의참석 시간 및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단, 위험성 평가 실시기구,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한다.	【위험성 평가】 ① 회사는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연 1회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노동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② 회사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함께 수

	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③ 회사는 잠재적으로 예측가능한 유해 위험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맡는다. 2. 위원회는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사항 심의·의결한다. 3. 본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회사는 위험성 평가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합 측 위원의 활동을 보장하고,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활동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	--

- 【위험성 평가】는 금속노조 2021년 모범단협안 필수 권고 조항으로 포함돼 있음. 아울러 중앙교섭에서는 금속산별협약 제31조를 갱신하자는 요구.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 등 안전보건상 예측 가능한 모든 위험요인을 제거해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임. 사업주는 연 1회 정기 위험성 평가를 노동자 참여하에 실시해야만 하고, 작업환경이나 작업조건의 변화 또는 산업재해 발생시 추가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2017년 금속노조의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투쟁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 과정에 노동자가 위험요인을 파악할 때나, 개선대책 수립 시 그리고 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개정됨. 하지만 개정 산안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는 명시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또한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 참여 권리를 통해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해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현장을 개선해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인 권리가 제대로 쟁취되지 않고 있는 실태가 다발하고 있음. 노동자의 법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금속노조는 전조직적으로 <금속노조 위험성평가 주요 실천지침>을 결정, 구체적인 실천과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단협으로 노조 및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쟁취해야 함. 이를 위해 ‘노사 공동 위험성평가 실시’를 못 박고, 세부 실행 방안 및 노동자 참여권의 세부 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노사 공동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노조 측 위원의 활동시간을 유급으

로 확보해야 함.

(2) 중앙교섭 요구

① 금속산업 최저임금

현행	개정안
제20조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9,250 원과 월 통상임금 2,090,500 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 및 관계사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④ 적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	【 금속산업 최저임금 】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250 원과 월 통상임금 2,316,500 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현행 유지) ③ (현행 유지) ④ 적용기간은 <u>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u> 한다.

○ 중앙교섭 참가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를 제기

○ 목표와 방향

(안정성-연대성) 저임금 금속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 및 임금 격차 해소
(조직확대) 미조직 금속산업 노동자 조직화 및 금속노조 영향력 확대
(산별임금체계) 금속노조 산별임금체계 진전

○ 요구안 취지

가. 금속산업 최저임금의 의의

- 산별최저임금은 1차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산업 내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음. 뿐만 아니라 산별최저임금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금속 산업에 대한 금속노조의 통제력을 확대하는 기능도 가짐.
- 산별최저임금과 법정최저임금은 성격, 기능, 결정방식, 정책구사 주체 등 다양한 면에서 구별됨. 법정최저임금은 저임금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핵심 국가 정책수단으로 임금제도가 아니라 국민생존권을 보장하는 복지제도 그 때문에 법정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은 노동3권이 적용되지 않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반면에 산별최저임금은 교섭·투쟁을 통해 노사 간에 합의하는 임금제도. 산업내 미조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들이 산별노조 가입을 통해 절박한 생계문제를 해결하고 계급 단결의 기초를 확보하는 수단. 따라서 산별최저임금은 특히 계급 단결과 조직 확대를 위해 중요한 노동조합의 임금정책.

나.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의 결정 기준의 변화 필요성

- 산별최저임금과 법정최저임금의 성격이 다르므로 산별최저임금 요구와 법정최저임금 요구의 구성원 리도 달라야 함. 그러나 지금까지 금속노조에서는 민주노총의 법정최저임금 요구안과 금속노조의 산별최저임금 요구안을 일치시켜왔음. (2011년, 2020년, 2021년 제외)
- 이는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법정최저임금이 충분히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와 관련이 있음. 산별최저임금은 법정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선에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성질 때문에 법정최저임금은 산별최저임금의 전제로서 기능함. 그런데 법정최저임금이 충분히 현실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와 무관하게 산별최저임금 요구를 독립적으로 제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전선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었음.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먼저 현실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2004.02.13. 제10차 임시대의원대회) 이런 결의를 바탕으로 그간 금속노조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법정최저임금과 연동시켜 법정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투쟁에 힘을 집중시켰음.
- 그런데 2022년의 상황은 과거와 변화한 지점이 있음. 지난 10년 동안 금속노조의 구성이 매우 다양해짐. 그로부터 임금체계, 임금구성, 임금수준 등의 차이가 발생. 이런 차이의 확대를 저지할 필요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음. 따라서 이제 금속노조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산별노조다운 임금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임.

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한 격차 축소 기준

- 문재인 정부 초기 법정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속산업 최저임금의 영향이 크게 확대되었음. 「2019 금속노조 임금체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정최저임금 및 금속산업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사업장 임금이 그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1%에 달함. 형식적으로 직접 적용되는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과 일부 지역지부집단교섭 참가 사업장 이외에도 많은 사업장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이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 이는 금속노조 사업장의 임금인상 대비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지면서 금속산업 최저임금이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초임 및 저근속 조합원의 임금을 따라잡은 것. 그래서 초임 및 저근속 조합원의 임금과 금속산업 최저임금이 연동되는 상황이 늘어났음.

- 이처럼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뿐 아니라 금속노동자의 초임을 상향시켜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역할자로 서서히 발전하고 있음.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은 노조 임금인상 요구 수준(고정급 기준 224,327원 인상)보다 낮으면 안 됨.

라.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요구

- 이상의 논의에 따라 금속노조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250원과 월 통상임금 2,316,5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요구함.
- 이는 통상시급 기준 1,000원, 통상월급 기준 226,000원을 인상하는 요구이며, 2022년 금속노조 임금 인상 요구 수준 (고정급 기준 224,327원 인상)보다 하향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충족.

마. 금속산업 최저임금의 실질화

- 아울러 중앙교섭 참가사업장뿐 아니라 불참사들도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를 제기하고자 함. 금속산업 최저임금이 임금격차 축소의 수단으로써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무기로써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 이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 특히 지난해 중앙교섭에서 ‘관계사 노동자’ 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확보한 만큼 전체 사업장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쟁취하고 적용을 강화하는 것의 사회적 의미는 더욱 커진 상황임.
- 요구 방식에 있어서는 사업장 상황에 맞게 △ 중앙교섭 요구안을 문구 그대로 요구하는 방안, △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는 문구를 요구하는 방안, △ ‘신입 초봉의 임금을 금속산업 최저임금 이상으로 한다’ 는 문구를 요구하는 방안 등을 유연하게 요구할 수 있음.

㉠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현행	개정안
제 42 조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① 회사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제 42 조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① 회사는 <u>계약 관계 및 형식에 관계없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u>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사내하청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이에 대해 지배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교육시설 사용 등을 요청할 때 조합과 합의하에 그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한다. ④ 회사는 본 조항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	--

- 금속노조는 산별협약으로 사내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 가입과 활동이 고용불안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보장은 원청의 의사가 하청업체 사업주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에 본 조항을 강화하여 소위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 “계약 관계 및 형식에 관계없이” 라는 문구는 교섭상대방인 사용자가 용역계약의 주체가 아닌 경우까지 포함하기 위함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교섭상대방인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경영하는 장소적 시설을 뜻함.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미치는 장소적 범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그 의미에 관하여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봄.
- 아울러 2, 3항은 개정 노조법 제5조 2항에 신설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단협에 반영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음.

(3) 지부집단교섭 요구

① 산업전환협약(기존 협약의 관련 조항 재정비를 전제로 요구함)

② 위험성 평가(기존 협약의 관련 조항 재정비를 전제로 요구함)

③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중앙교섭 불참 사업장)

④ 임금인상

【임금인상】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월 기본급 142,300 원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정기 호봉승급분 제외)

가. 임금인상 요구의 목표

- 생활임금 확보 :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임금을 해소한다
- 연대임금 원칙 : 노동자간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고 전체 금속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의 토대를 마련한다
- 분배구조 개선 : 자본에 치우친 노동소득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개선한다

나. 임금인상 요구의 방향

- **(고려사항)** 금속노조 임금인상 요구는 △ 첫째 2021년 금속노조 임금수준 실태조사의 결과와 2021년 금속노조 임금인상 결과를 기초로 △ 둘째 2022년 예상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분을 참고하고, △ 셋째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제시
- **(요구안 마련의 기준)** 임금인상 요구는 노동자간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성안하는 것이 타당. 금속노조는 중장기적으로 임금인상 요구와 합의의 기준을 고정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 중. 기존의 기본급 기준의 임금인상 요구 정책은 기본급에 따라 연동하는 고정상여금이나 정률수당의 있고 없음, 크고 작음의 차이로 인해 기본급 인상액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임금인상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한계를 드러냄.
- **(고정급 중심의 임금정책)** 고정급 중심의 임금정책은 첫째, 기본급과 달리 상여금 지급률이나 정률수당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격차가 고정급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어 사업장 간 임금격차 해소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둘째, 기본급에 비해 임금인상 효과에 대한 이해가 쉬워 임금인상 수준 비교가 보다 용이해짐. 이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의 근거와 동력을 제공해 줄 것. 셋째, 고정급을 중심으로 임금격차가 축소될 경우 이 통일성을 바탕으로 산별임금교섭과 산별임금체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커짐.
- **(요구기준)** 다만 기본급으로부터 다른 임금항목이 계산되는 대다수 사업장의 임금체계를 고려할 때 당장 요구기준을 변경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한편으로 각 사업장에서 고정적인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점차 기본급으로 통합해 기본급과 고정급의 차이를 줄여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 변동급을 점차 고정급으로 단순화시켜 나가는 사업장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금속노조 임금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로.

다. 임금인상 요구의 근거

- **(2021년 고정급 추정)** 2021년에 실시한 금속노조 임금수준 실태조사 결과 (208개 사업장 135,078명 참여) 사업장의 월 고정급 평균은 3,533,875원임. 한편 2021년 단체교섭 결과에 따른 고정급 인상분은 84,308원. 따라서 2021년 고정급은 3,618,183원으로 추산.

$$\begin{array}{ccccc}
 \boxed{3,533,875\text{원}} & + & \boxed{84,308\text{원}} & = & \boxed{3,618,183\text{원}} \\
 \text{2020년 고정급} & & \text{인상분} & & \text{2021년 고정급} \\
 \uparrow & & \uparrow & & \\
 \text{2021년 임금실태조사} & & \text{2021년 임금교섭 결과} & &
 \end{array}$$

- **(2022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 전망)** 경제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연간 증가율로 한 나라의 경제규모, 즉 국민소득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국민소득 전체가 커졌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전체 소득 중 임금 소득 몫이 줄어든다는 의미. 물가상승률은 물가지수의 연간 증가율로 노동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 생계비가 오르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떨어진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함. 따라서 적어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보다 임금인상률이 더 커야 노동소득 분배가 개선됨.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3.0%, 2022년 물가상승률 전망은 3.1%이므로 6.1%보다 임금인상률이 더 커야 함.
- **(2021년 실질임금 하락)** 한편 지난 2021년 초 경제성장률 전망은 2.9%였으나 실제로는 4.0%를 웃도는 성장세를 보였고 물가상승률 전망도 0.9%였으나 실제로는 2.5%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임. 반면 2021년 금속노조의 명목임금상승률은 2.4%에 그쳐 실질임금이 0.1%p만큼 하락.
- **(2022년 임금인상 요구 근거)** 이에 고정급을 기준으로 2022년 6.2%(경제성장률 3.0% + 2022년 물가상승률 3.1% + 2021년 실질임금 하락 0.1%p)의 임금 인상률 달성이 필요함. 이 고정급 인상분이 ‘기본급 인상분’과 ‘기본급에 연동하는 고정급 인상분’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므로 고정급 인상분 224,327원을 ‘기본급’과 ‘기본급에 연동하는 고정급’의 비율인 1.5765로 나눈 142,295원이 기본급 인상의 최저선이 됨. 여기에 십원단위를 반올림해 기본급 142,300원 인상을 요구함.

$$\begin{array}{ccccccc}
 \boxed{3,618,183\text{원}} & \times & (& 3.0\% & + & 3.1\% & + & 0.1\% &) & = & \boxed{224,327\text{원}} \\
 \text{2021년 고정급} & & & \text{2022년} & & \text{2022년} & & \text{2021년} & & & \text{2022년} \\
 & & & \text{경제성장률} & & \text{물가상승률} & & \text{실질임금하락} & & & \text{고정급 최저인상} \\
 & & & & & & & \text{분} & & &
 \end{array}$$

$$\begin{array}{ccccccc}
 \boxed{224,327\text{원}} & \div & 1.5765 & = & \boxed{142,295\text{원}} & \div & \boxed{142,300\text{원}} \\
 \text{2022년} & & \text{기본급에 연동하는} & & \text{2022년} & & \text{2022년} \\
 \text{고정급 최저인상} & & \text{고정급 비율} & & \text{기본급 최저인상} & & \text{기본급 최저인상}
 \end{array}$$

- **(12기 1년차 대의원/지회장 설문조사)** 금속노조는 매년 대의원 설문조사를 통해 요구 수준에 대한 대의원 의견을 수렴해 왔음. 이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거시적 조건뿐만 아니라 개별 교섭단위에서 교섭을 진행하면서 축적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경험을 임금인상 요구에 반영하는 경로임. 대의원들의 임금인상 요구 설문 결과는 단순한 희망액이 아니라 전년도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확인된 사업장/지역 수준의 경영환경, 지불능력 등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자료가 됨.

- 대의원/지회장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2022년 임금인상 요구안 마련을 위한 대의원/지회장 설문조사 결과

요구기준	평균값	최빈값	중앙값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 (N=339)	138,112 원	100,000 원	130,000 원
고정급을 기준으로 요구 (N=307)	211,208 원	150,000 원	180,000 원

N : 유효데이터 수

- 기본급 기준 142,300원은 대의원/지회장 설문조사 결과의 기본급 인상 요구 평균값과 큰 차이가 없음이 확인됨.
-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금속노조는 2022년 임금인상 요구를 기본급 기준 142,300 원을 요구함.**
- **(최저기준이라는 의미)** 한편 임금인상 요구는 하향할 수 없는 최저선이며 사업장 조건에 따라 상향가능함. 특히 상여금이 대폭 기본급화되어 상여금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연봉제를 실시하는 등으로 임금의 대부분이 기본급인 경우처럼 기본급 인상에 따른 고정급 인상 효과가 거의 없는 사업장이 그 대상이 됨. 기본급 인상에 따른 고정급 인상 효과와 무관하게 기본급을 모두 같은 수준으로 획일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정률 고정상여금이나 정률 수당이 작은 사업장은 기본급 인상 이외의 고정급 인상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하는 데 반해 해당 수당이 큰 사업장은 기본급 인상 이외에도 고정급 인상분 상당의 추가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됨.
- 정률 고정상여금이나 정률 수당이 작은 사업장은 많은 경우 조직력이 약하고 임금 총액이 작은 사업장이기도 해서 기본급 정액인상은 오히려 임금격차를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음. 이런 상여금과 수당을 미리 선반영한 고정급 정액인상은 이런 우려를 크게 줄일 수 있음. 금속노조가 견지해 왔던 정액인상 방침은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정률인상을 지양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함. 따라서 정액인상 원칙도 실생활의 안정적 기초가 되는 고정급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현재의 임금구조에 부합하며, 따라서 기본급과 고정급의 차이가 거의 없는 사업장은 요구액을 상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정액인상 방침에 부합하는 것임.
- 따라서 금속노조의 기본급 요구액만을 기준으로 삼기에 현실적으로 임금구조가 맞지 않은 사업장은 위 논리를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것을 권고함. 예를 들어 기본급 비중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금속노조 조합원 평균이 아닌, 해당 사업장 조합원의 평균 통상급·고정급의 6.2%를 계산해 이를 사업장 내 기본급 정액 인상 요구로 삼을 수 있을 것.

⑤ 확대간부 교육시간 보장(필수)

【확대간부 교육시간 보장】

- ① 회사는 금속노조에서 실시하는 조합간부(조합·지부·지회단위 간부 및 대의원)를 대상으로 하는 2박 3일(24시간) 교육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 ② 2박3일의 유급교육시간은 조합이 자유롭게 분할 적치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 사용 시 교육 참가 대상 및 사용시간을 사전에 통보한다.

(4) 사업장 공동 요구

- ① 임금인상 요구(집단교섭 참가 사업장은 집단교섭에서 다룬다)
- ② 통일요구(산업전환협약 / 위험성 평가)
- ③ 중앙교섭 요구(금속산업 최저임금 /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 ④ 필수요구
 - 확대간부 교육시간 보장(필수)

【확대간부 교육시간 보장】

- ① 회사는 금속노조에서 실시하는 조합간부(조합·지부·지회단위 간부 및 대의원)를 대상으로 하는 2박 3일(24시간) 교육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 ② 2박3일의 유급교육시간은 조합이 자유롭게 분할 적치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 사용 시 교육 참가 대상 및 사용시간을 사전에 통보한다.

-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참가(불참사 필수)

【사용자단체 가입】

회사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의 중앙교섭(과 울산지역지부 집단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

- 협약갱신(※ 기존 협약의 관련 조항 재정비를 전제로 요구함)

【협약 갱신】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는 유효기간 말료 전에 갱신요구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갱신요구안 제출한다를 갱신요구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필수)
- 유효기간 말료일 전 일표기를 삭제한다.(권고)

-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기존 협약의 관련 조항 재정비를 전제로 요구함)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1. 회사는 조합의 노동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과 사업장 전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회사 발전에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여, 조합의 다음과 같은 활동을 보장한다.
 - 1)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기초 조사활동 포함 상, 하반기 각 3일
 - 2) 위험성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활동, 실행위원회에 대한 사전교육 및 평가 기간 20일
 - 3)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위한 기초조사 활동 등 실행위원회에 대한 사전교육 및 평가 기간 10일
 - 4) 건강검진을 위한 기초조사 활동 등 해당 기간
 -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준비 및 결과 홍보 활동 분기별 각 7일
 - 6) 민주노총(지역본부 포함), 금속노조(중앙, 지부)가 주관하는 노동안전보건 사업 회의 및 교육시간
 - 7) 월 1회 노사합동 안전점검 해당 시간
2. 회사는 조합이 1항의 1), 2), 3)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협조를 요청할 시 이에 적극 지원한다.
3. 회사는 조합이 사업장내의 각종 위험,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유롭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기존 협약의 관련 조항 재정비를 전제로 요구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회사는 자발적인 재해 예방업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둔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조합원 대표가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 조합원으로 한다.
3.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하는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중

대재해가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작업중지를 명하고 작업자를 대피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에 필요한 노동안전보건 교육수강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보장하며 비용을 지급하고, 교육 참여 소요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6.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되며, 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⑤ 권고요구

- 산업전환·구조조정 대응(권고)

- **교섭대상 확장** : 금속노조 2021년 모범단협 제12장(단체교섭)의 [교섭대상] 조항에 있는 항목 중 ‘신사업진출·신기술도입 시 고용안정, 교육 훈련, 노동강도에 관한 사항’, ‘탄소배출저감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 신설 요구. [교섭대상] 조항 자체가 없는 사업장은 조항 추가 신설을 요구함.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연동됨. 노동부와 법원은 법에 교섭대상이 규율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임의적 교섭사항을 넓게 보면서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 따라서 기후위기/기술발전 대응하고 나아가 산별노조 교섭의제 확대까지 고려해 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단협 개정이 필요. 지난해 산업전환협약도 같은 취지. 참고로 2020년 조사 기준 금속노조 사업장 단협 288개 중 [교섭대상]이 있는 단위는 158개에 불과하며 완성차3사 지부 중에는 기아차만 존재.

- **단체협약 적용 범위 확장의 기틀 마련** : 단협 적용 범위와 관련된 조항(조합원 자격, 조합원의 범위 등)에서 특정 직군을 배제하고 있다면(예 : 현장직에 한한다, 사무직 제외 등) 이를 삭제하거나 “조합원의 범위는 조합 규약, 지회 규칙(또는 지부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함. 이는 단협 적용 범위에 대한 조합의 관장력을 확보함으로써 복수노조 상황에 대비하는 것과 더불어 산업전환,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존에 단협 적용대상이 아니었거나 조합원에 포괄되지 않았던 노동자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자는 취지.

- **고용안정 관련 조항 사항** : 금속노조 2021년 모범단협 제5장(고용안정) 수준으로 사업장 단협을 상향하는 요구를 제기함.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강조점을 두되 주되게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신기술 도입], [신설공장], [해외공장] 조항에 초점을 맞춰 요구함.

○ **교섭대상확장**

【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교섭의 형태, 방식,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에 관한 사항
5. 인사 절차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7. 임금, 노동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8. 인권보호와 성평등에 관한 사항
9. 여성노동권, 돌봄권에 관한 사항
10.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1.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12. 경영성과의 공정분배에 관한 사항
13. 신사업진출 · 신기술도입 시 고용안정, 교육 훈련, 노동강도에 관한 사항
14. 탄소배출저감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15.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사항
16. 기타 직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 **단체협약 적용 범위 확장의 기틀 마련**

【협약의 적용범위】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모든 규정을 조합원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파견, 계약직, 임시직, 도급, 일용직, 시간제 등 근로형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또는 사업장)내의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 고용안정 관련 조항 사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①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종업원을 해고하려 할 때는 적어도 90일 이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이 때 회사는 경영악화의 사유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현수준의 고용유지를 위한 해고 회피방안, 최후의 수단으로서 해고 대상 선정기준과 방법, 해고 대상자 수와 예정일, 보상금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합에 제공한다.
- ② 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란 “경영실패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경우”를 말한다.
- ③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에 앞서 회사는 경영진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한 자구노력 및 손해배상, 인건비 이외 비용 절감, 불요불급한 부동산 등 회사자산의 매각 등을 선행하여야 하며, 그 이후 연장노동시간 제한과 정상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중단, 교육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 배치나 사외 파견, 일시휴업, 순환휴업, 근무교대제의 개편 등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 ④ 3항에서 규정한 고용유지 노력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해고회피 노력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최소한 2년 이상 현 수준의 고용유지가 이루어지고, 그밖에 노동조합이 제시한 해고회피 방안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해고회피 노력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⑥ 성실한 해고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노동자의 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과 합의하에 합리적인 해고대상 선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정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별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다.
- ⑦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회사는 근속년수 10년 미만인 자는 3개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자는 6개월 전에 그 해고를 예고해야 한다. 해고수당(보

상금)은 6개월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자는 12개월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법의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등을 신청하여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전직훈련 및 창업훈련을 실시한다.

⑧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이후 2년 동안은 해당 업무를 파견노동자나 임시직 등 비정규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

⑨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이후 2년 이내에 신규채용을 하고자 할 경우, 이들 정리해고자들을 우선적으로 재고용한다.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① 회사를 매각,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 하고자 할 때 회사는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한 뒤 조합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분할, 합병, 양도 등) 발생 시 소속 변경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변경시 회사는 조합원들이 소속될 회사의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를 보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합과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③ 회사는 회사를 매각,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하고자 해당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전에 계약내용을 노동조합에 공개하고 동의를 얻어야하며, 계약체결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①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발생하는 해고 또는 감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6개월 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그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의 사전 합의를 얻어야 하며, 감원이 발생할 시, 6개월 이상의 전직 훈련과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②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해고 또는 감원이 발생할 시 일체의 체불임금을 통화로서 청산하고, 직원의 생계보장과 직장 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평균임금의 6개월분 이상을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

③ 회사는 회사의 업종전환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법상 인력재배치 지원금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신기술 도입】

새로운 기술 또는 기계설비를 도입하거나 작업방식을 바꾸려 할 때 회사는 적어도 9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고, 신기술 도입의 타당성과 고용조건, 노동조건, 노동강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조합에 제공한 뒤 조합과 합의 하에 시행한다.

【신설공장】

- ① 회사는 공장 신설계획 수립 시 즉각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신설공장 이동 시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은 12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3개월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 ② 국내 신설공장의 인원 채용 시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한다.

【해외공장】

- ① 회사는 해외공장 신설 및 증설 시에는 즉시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우선하여 고용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 6개월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 ② 회사는 해외 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

【정년퇴직】

정년퇴직은 조합원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직전 연도의 연말까지로 한다.

○ 퇴직한 년도 노동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 보장

【연차 유급휴가】 단협조항에 아래 문구를 추가

정년퇴직자가 마지막 근무년도에 8월 이상 출근할 경우 그해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퇴직시 회사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이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노동자가 출근을 산정기간(년)의 말일에 퇴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무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과 그에 대한 수당 지급 금액을 포함하여 정산한다. → 사업장 관례상 정년 해 근무에 대한 연차발생을 인정하면서 해당 연차 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 기초 평균임금에 반영해 온 경우 그 내용을 이와 같이 단협에 명시.

3. 교섭 및 투쟁 방침

1) 울산지부 2022년 교섭방침

- (1) 지부집단교섭 ⇨ 사업장 보충교섭 순으로 진행한다
※ 사업장 보충교섭 돌입 시기는 지부 쟁대위 결정에 따라 돌입한다.
- (2) 임금교섭 ⇨ 지부 쟁대위 결정에 따라 돌입한다.
- (3) 집단교섭 미참여 대각선 교섭 사업장은 집단교섭 시작 이후 돌입한다.
- (4) 모든 교섭단위는 통일요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2) 울산지부 집단교섭 형식

① 임금

- 임금(기본급)은 금속노조 임금인상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 임금 인상 요구는 하향할 수 없는 최저선이며 사업장 조건에 따라 상향 가능 함

② 교섭군

- 단일 교섭군으로 한다.

③ 교섭 일정

- 중앙교섭: 주 1회 진행 / - 울산지부 집단교섭: 주 1회 진행

④ 교섭위원

- 지부집단교섭위원은 지부 교섭대표(지부임원+지회교섭위원)으로 구성한다.

3) 집단교섭 미참여 사업장, 대각선 교섭

- 조합의 일치성을 높이기 위해 미참여 사업장은 울산지부 관장 아래 대각선 교섭을 진행한다.

4) 울산지부 투쟁방침

(1) 2022년 산별교섭 요구 개요

- 통일 요구 : 산업전환협약, 위험성 평가
- 중앙교섭 요구 : 금속산업최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 지부집단교섭 요구 : 임금인상, 확대간부교육시간보장, 협약갱신(갱신요구의사표시), 안전보건활동 보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사업장 공동 요구 : 확대간부 교육시간 보장(필수), 산업전환·구조조정 대응(권고),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권고), 퇴직 연도 노동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 보장(권고),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참가(불참사 필수), 협약갱신(갱신요구의사표시), 안전보건활동보장,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기타사업장별 현안요구

(2) 2022년 단체교섭 투쟁 방침

- 금속노조 대정부 요구 및 통일요구 투쟁에 적극 복무한다.
- 집단교섭은 통일요구 중심으로 교섭하되 통일요구 합의 없이 임금에 대한 사업장 보충교섭을 진행하지 않는다.
- 통일요구, 지부공동 요구를 기본 전선으로 교섭과 투쟁을 진행한다.
- 지부 집단교섭을 중심으로 사업장 보충교섭, 대각선 교섭, 공동교섭 등 다양한 교섭 전술을 구사하되 집단교섭 사업장 임금을 제외한 사업장 보충교섭 돌입시기는 집단교섭 돌입 직후 교섭에 돌입한다. 단, 임금은 통일요구 합의 후 지부 쟁대위의 결정에 따라 돌입한다.
- 집단교섭 미참여 사업장은 공동의 교섭 전술을 배치한다.
- 미타결 사업장은 지부 집중 투쟁으로 돌파하며,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해 전조직적으로 대응한다.
- 공동투쟁과 공세적 교섭을 위해 최대한 시기를 집중한다.

(3) 시기별 투쟁 계획

- 구체적인 시기별 투쟁계획 및 수정계획은 차후 지부운영위를 통해 논의한다.

구 분	시 기	투쟁전술	비 고
준비기	3월~4월	△ 투쟁방침 결의(3.14 정기대의원대회) ▷ 지회별 투쟁방침 공유 (3월 중순 ~ 순회간담회) ▷ 전 조합 임단투 교육(4월~5월) ▷ 집단교섭 돌입(4월 중순~) ▷ 대각선사업장 교섭 돌입(4월 중순~)	4월 금속노조투쟁선포식

교섭기	5월~6월	▶ 전 조합원 임단투 교육(4월~5월) ▶ 확대간부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5월) ▶ 사업장 보충교섭 교섭 등 돌입(5월) ▶ 지회별 임단투 순회 출정식(6월) ▶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6월말)	5.1절 노동자대회 20만총파업 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
총력투쟁	7월~8월	▶ 지부 전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 ▶ 20만 금속노조 총파업 성사	8.15 자주통일노동자대회
마무리	9월	▶ 미타결 사업장 지부 집중투쟁	
하반기 투쟁	10월~12월	▶ 민주노총 총력투쟁 ▶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투쟁 ▶ 대국회 압박투쟁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4. 타결 방침

1) 중앙교섭 합의 없이 지부·지회 타결 없다.

○ 중앙교섭 합의 없이 중앙교섭 합의 전 타결 불가.

2) 모든 단체교섭을 체결할 때는 합의절차를 준수하고 조합 승인을 얻는다.

○ 모든 임금·단체협약은 위원장 명의로 체결한다.

○ 교섭단위별 합의는 아래 절차를 따른다.

- ▶ 중앙교섭 : 의견접근 ⇨ 중앙위원회에서 의견접근안 승인 ⇨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 조인식(위원장 체결)
- ▶ 지부교섭 : 의견접근 ⇨ 지부교섭단 및 지부운영위 심의 ⇨ 중앙집행위원회 승인 ⇨ (조합원 찬반투표) ⇨ 조인식(위원장 체결)
- ▶ 사업장보충교섭 : 의견접근 ⇨ 지부운영위 심의 ⇨ 조합에 승인요청서 제출(△교섭 및 합의 경과 △의견접근안 △지부운영위 심의 일시와 결과 △찬반투표 예정일 적시) ⇨ 위원장 승인 ⇨ 조합원 찬반투표 ⇨ 조합에 직인신청서 제출 ⇨ 조인식(위원장 체결) ⇨ 임단협 합의서 전문 조합에 제출 및 DB System 등록

○ △임금·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단협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 △노조와 합의한 사항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들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 없음(규약 제73조, 지회 모범규칙 제38조). 따라서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하며, 협상의 명칭과 무관하게 단체교섭으로 간주해 위 합의 절차를 준수.

3) 임·단협 승인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 불승인 : 중앙교섭 합의 전 의견접근한 경우 불승인. 중앙교섭 합의 후 의견접근하더라도 △기존 단체협약의 현저한 후퇴 △고정급 저하 △무분규 합의 문구를 포함 △통일요구를 아예 발송하지 않거나 교섭에서 다루지 않은 경우 불승인. 지부 운영위에서 불승인 심의 시 조합에 즉각 보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업장별 검토 후 후속 처리 방안 결정. 불승인 사업장은 찬반투표와 조인식 등 이후 절차를 중지.

○ 미승인 : 중앙지부집단교섭 타결 후 노력했음에도 불가피하게 통일요구를 쟁취하지 못한 채 의견접근한 경우, 단협 전문(금속노조)이 미흡한 경우, 금속산별협약 제16조(조합비 등 일괄공제)를 쟁취하지 못한 경우 지부운영위는 미승인 심의하고 조합에 보고. 찬반투표·조인식은 진행 가능.

○ 구조조정 사업장 및 노조파괴공작·부당노동행위로 조직력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2018년 10월 2일 10기 3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구조조정사업장 타결방침을 준용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별도로 승인 여부를 판단.

○ 미승인, 불승인 사업장 처리방안은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신규사업장 첫 체결 단협과 복수노조 사업장은 해당 지부에서 판단하여 승인절차 진행.

※ 지부 자체 계획에 따라 위 승인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수 있으나 기준 약화는 금지.

의결주문

제출된 '12기 1년차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지부 교부금 산정방식

- 1) 2022년 1월부터 2022년 07월까지 지역지부 1인당 조합비 평균액은 23,500원으로 산정합니다. 지역지부의 전체 조합원은 92,000명입니다.
- 2) 1개월 전체 지부 몫은 $92,000\text{명} \times 23,500\text{원} \times 0.17 = 367,540,000\text{원}$ 입니다.
(지부교부금은 18%이나, 지역공동사업비 1%를 제외한 비율로 계산합니다)
- 3) 전체 지부 몫에서 최저교부금이 지원됩니다. 4개지부에 월 6,000,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전체 지부 몫에서 6,000,000원이 지급되면 361,540,000원이 남게 됩니다.
- 4) 남은 금액을 전체 납부 조합원 수로 나눠 1인당 평균 지부교부금을 구하면 3,930원이 나옵니다.
- 5) 같은 방식으로 2022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금인상률 3%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1인당 평균 지부교부금은 4,050원입니다.
- 6) 최저교부금을 받는 지부의 월 수입은 최저교부금 + (1인당 평균지부교부금 X 지부(납부)조합원수) 이 됩니다.
- 7) 최저교부금을 받지않는 지부의 월(한달)수입은 1인당 평균지부교부금 X 지부(납부)조합원수입니다.
- 8) 지부(납부)조합원수 산정시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 9) 최저교부금 대상 지부와 지급금액입니다.

인원	금액	대상지부
2,000명 이하	2,500,000원	구미
2,500명 이하	1,500,000원	전북
3,000명 이하	1,000,000원	부양, 포항

[지부교부금 계산 방법정리]

구분	2022년 1월~2022년 07월 (월 수입)	2022년 08월~2022년 12월 (월 수입)
최저교부금 0	최저교부금+(3,930원×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교부금+(4,050원×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교부금 x	3,930원 × 지부(납부) 조합비	4,050원 × 지부(납부) 조합비
※ 지부(납부) 조합원수는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을 제외하고 편성하여야 합니다.		

지역공동사업비 편성 및 산정방식

1. 지역지부에 속한 조합원(조합비)의 경우

- 2022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역지부 1인당 조합비 평균액은 23,500원으로 산정합니다. 지역지부의 전체 조합원은 92,000명입니다.
- 1개월 전체 지역공동사업비는 $92,000 \text{명} \times 23,500 \text{원} \times 0.01 = 21,620,000 \text{원}$ 입니다. 전체 지부 뭉에서 최저공동 교부금이 지원됩니다. 최저공동교부금은 전체 지역공동사업비의 6.0% 정도입니다. 6.0%를 제외한 금액인 20,322,800원을 전체 납부 조합원 수로 나뉘어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를 구하면 221원이 나옵니다.
- 지역지부의 지역공동사업비 월 수입은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 $\times$ 지부(조합비 납부)조합원수)이 됩니다. (납부 조합원 수 중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 같은 방식으로 2022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금인상을 3%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는 228원입니다.
- 최저공동사업비 대상 지부와 지급금액입니다.

금액	최저공동사업비	대상 지부
50만원 미만	100만원 지급	구미
150만원 미만	50만원 지급	경주, 대구, 부산양산, 포항

[지역지부 지역공동사업비 산정방식]

구분	2022년 1월~2022년 07월 (월 수입)	2022년 08월~2022년 12월 (월 수입)
최저공동사업비 0	최저공동사업비+(221원 $\times$ 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공동사업비+(228원 $\times$ 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공동사업비 x	221원 $\times$ 지부(납부) 조합비	228원 $\times$ 지부(납부) 조합비

※ 지부(납부) 조합원수는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을 제외하고 편성하여야 합니다.

2. 기업지부에 속한 조합원(조합비)의 경우

- 2022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기업지부 1인당 조합비 평균액은 29,200원으로 산정합니다. 기업지부의 전체 조합원은 90,000명입니다.
- 1개월 전체 지역공동사업비는 $90,000 \text{명} \times 29,200 \text{원} \times 0.01 = 26,280,000 \text{원}$ 입니다. 전체 지부 뭉에서 최저공동 교부금이 지원됩니다. 최저공동교부금은 전체 지역공동사업비의 6.0% 정도입니다. 6.0%를 제외한 금액인 24,703,200원을 전체 납부 조합원 수로 나뉘어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를 구하면 274원이 나옵니다. (납부 조합원 수 중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 지역지부의 지역공동사업비 월 수입은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 $\times$ 지부(조합비 납부)조합원수)이 됩니다. (납부 조합원 수 중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 같은 방식으로 2022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금인상을 2%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는 280원입니다.

[기업지부 지역공동사업비 산정방식]

2022년 1월~2022년 07월 (월 수입)	2022년 08월~2022년 12월 (월 수입)
274원 $\times$ 지부(납부) 조합비	280원 $\times$ 지부(납부) 조합비

※ 지부(납부) 조합원수는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을 제외하고 편성하여야 합니다.

12기 1년차 예산(안)

【일반회계 수입 예산(안)】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세 부 내 역	금 액
관	항	목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교부금	교부금	교부금	3,930원 × 7,500명 × 7개월 = 206,325,000원 4,050원 × 7,500명 × 5개월 = 151,875,000원	358,200,000원
부과금	부과금	부과금		0원
기타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		0원
	잡수입	잡수입		0원
총계 358,200,000원				

【특별회계 수입 예산(안)】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수 입 액		
관	항	목	내역	금액	비고
투쟁 기금	투쟁 기금	이월금	11기 2년차 잔액 이월	109,857,466	
		투쟁기금	11기 2년차 일반회계 잔액 이월	2,946,155	
		본조지원금	투쟁사업비		
		기타수입	이자수입, 해지환급금		
		소계		112,803,621	
미조직 기금	미조직 기금	이월금	11기 2년차 산별기금 교부액 잔액이월	17,008,977	
		복수노조지원금	복수노조지원금	2,500,000	전년도 지원금액
		기타수입			
		소계		19,508,977	
합 계				132,312,598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일반회계 지출부 예산】

기간 :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과 목		목 번	12기 1년차 예산 내역 (2022년 1월 1일~ 12월 31일)	12기 1년차 (12개월)	총액대비 예산율(%)	11기 2년차 (12개월)	집행율(%)	
관	항							목
운 영 비	유지비	관리비	1	사무실 관리비 등 월 700,000원×12개월 동절기 지부장실 난로 주유(1, 2, 3, 11, 12월 5개월×50,000원) = 250,000원	8,650,000	2.41%	8,400,000	39%
		차량유지비	2	주유, 보험, 수리 등(스타렉스, 카니발)	20,000,000	5.58%	12,000,000	82%
		신문도서비	3	신문, 도서, 자료구입 등	800,000	0.22%	500,000	6%
		소모품비	4	복사기 임대비, 소모품, 사무용품, 토너 등	12,000,000	3.35%	10,000,000	78%
		통신비	5	통신비, 전화비, 우편비용 등	6,000,000	1.68%	4,000,000	45%
		비품비	6	바탕구입비(컴퓨터, 모니터, 의자 등).	11,000,000	3.07%	10,000,000	60%
		인쇄비	7	각종 자료 인쇄	2,000,000	0.56%	1,000,000	0%
		기타유지비	8	커피 등 기초식품, 외부인사 방문, 관공서비 등	3,000,000	0.84%	1,500,000	8%
	복리 후생비	복리후생비	9	사무국 식비 월 154,000× 8인 ×12개월= 14,784,000원 철농, 당직, 식비 등 700,000원 ×12개월= 8,400,000원 사무국 건강검진 220,000원× 3인= 660,000원 사무국 근무복 75,000원× 8인= 600,000원 사무국 직무활동비 월 150,000원×3명×12개월= 5,400,000원 사무국 코로나 방역 지원(자가진단키트, KF94마스크 등) 월 40,000원×1인×12개월=5,280,000원 인쇄물 사용자제에 따른 태블릿PC 구매 시 비용지원 400,000원×8명=3,200,000원	38,324,000	10.70%	29,484,000	63%
			10	지부장 450,000원 × 12개월 = 5,400,000원 수석부지부장 400,000원 × 12개월 = 4,800,000원 사무국장, 부지부장2명 350,000원 ×12개월= 12,600,000원	22,800,000	6.37%	23,300,000	100%
관의소계				124,574,000	34.78%	100,184,000	71%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여비	출장비	11 출장비		11,000,000	3.07%	10,000,000	44%
회의비	총회	12	공고, 투표용지, 포스터, 선거관리비 등	6,000,000	1.68%	6,000,000	60%
	대의원대회	13	정기대의원대회 및 임시대대 등	27,000,000	7.54%	23,000,000	52%
	운영위원회	14	회의비 등	6,000,000	1.68%	6,000,000	20%
	집행위원회	15	회의비 등	4,000,000	1.12%	3,000,000	29%
	기타회의비	16	기타회의의 등	2,000,000	0.56%	2,000,000	43%
수련회비	교섭의원 수련회	17	교섭의원 교육 및 수련회등	10,000,000	2.79%	5,000,000	35%
	총무사업비	18	출납수당 40,000원*12개월, 부서사업비, 회계교육, 감사준비교육 등	4,000,000	1.12%	4,000,000	25%
부서사업비	조직사업비	19	조직사업비, 부서사업비, 투쟁사업비 등	28,000,000	7.82%	23,000,000	99%
	노안사업비	20	부서사업비	9,000,000	2.51%	7,000,000	58%
	법규사업비	21	법률학교 등	4,000,000	1.12%	신설	
	교육사업비	22	부서사업비	10,000,000	2.79%	9,000,000	61%
	선전사업비	23	부서사업비 소식지, 대자보, 현수막 등 영상홍보사업 등	20,000,000	5.58%	16,000,000	96%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문화사업비	24	조합 문화역량 구축 공동체 문화확산 사업, 영상 제작	15,000,000	4.19%	4,000,000	24%
연대 사업비	대외협력비	25	타조직 연대 등	15,000,000	4.19%	7,000,000 (+3,000,000)	98%
위원회	통일위원회	26	통일위 사업비	9,000,000	2.51%	6,000,000	74%
	정치위원회	27	정치위 사업비	6,000,000	1.68%	6,000,000	57%
	여성위원회	28	여성위 사업비	4,000,000	1.12%	2,000,000	96%
	미/비위원회	29	미/비위 사업비	17,000,000	4.75%	15,000,000 (+2,000,000)	94%
	청년위원회	30	청년위 사업비	8,000,000	2.23%	신설	
집회 행사비	단협위원회	31	단협위 사업비	4,000,000	1.12%	3,000,000	94%
	감사위원회	32	감사위 사업비 (감사위 직무활동비 포함)	3,540,000	0.99%	2,500,000	32%
	집회행사비	33	집회, 투쟁 행사비	4,000,000	1.12%	3,000,000	0%
	관의소계			226,540,000	63.24%	157,000,000	68%
예 비 비	공동사업비	34					
	예비비	35	예비비	7,086,000	1.98%	5,117,000 (-5,000,000)	0%
합계				358,200,000	100.00%	267,801,000	69%

의결주문

제출 된 금속노조 중앙위원을
승인해 주십시오.

12기 1년차 중앙위원 배정

1. 12기 1년차 중앙위원 배정기준

지부	선거인단	중앙위원수	여성 할당	비정규 할당	일반
경기	8,516	4	0	0	4
경남	17,992	8	1	0	7
경주	4,090	2	0	0	2
광주전남	10,079	5	1	0	4
구미	1,145	1	0	0	1
대구	3,074	1	0	0	1
대전충북	4,939	2	0	0	2
부산양산	2,332	1	0	0	1
서울	5,312	2	0	0	2
울산	7,197	3	0	0	3
인천	4,994	2	0	0	2
전북	2,230	1	0	0	1
충남	13,519	6	1	0	5
포항	2,553	1	0	0	1
기아차	28,589	14	1	1	12
한국지엠	7,613	3	0	0	3
현대차	48,619	24	2	1	21
현대중공업	8,386	4	0	0	4
쌍용차	18	1	0	0	1
만도	39	1	0	0	1
지부합계	181,236	86	6	2	78

□ 울산지부 배정 금속노조 중앙위원 명단

구분	번호	이름	소속 및 직책
정위원	1	오훈도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
정위원	2	정진희	울산지부 부지부장
정위원	3	김기호	울산지부 사무국장

안건5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 승인 건

의결주문

제출된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을 승인해 주십시오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안건 5.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 승인 건

1.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선출 기준

단위	인원	비고
조합 임원	10	
지부별 배정	38	조합원수 비례 배정
여성 할당	10	
비정규 할당	3	해당 위원회위임
합 계	61	

1) 민주노총 중앙위원은 조합원 3,000명당 1명이며 민주노총 의무금납부 조합원 (2021년 1월 19일 ~ 2022년 1월 10일 평균) 182,440명(미전환사업장 포함)을 기준으로 할 때 금속노조에 61명(여성할당 10명 포함)이 배정됨.

2) 이중 민주노총 의무금 납부 기준으로 미전환사업장 조합원 수는 257명(풍기산업 70 / 수산중공업 80 / 삼미금속 107)이므로 중앙위원은 배정하지 않음.

3) 61명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배정함.

① 여성할당 10명 (전체 16.3%)은 여성조합원 2,000명 이상인 현대차 지부 2명 배정하고 2,000명 미만인 그 외 지부는 여성 조합원수가 큰 순서대로 총 8명을 1명씩 배정한다.

② 비정규할당 3명(전체 4.91%)은 비정규위원회에 위임한다.

③ 여성, 비정규할당 중앙위원을 제외한 48명은 조합 임원 10명을 우선 배정한다.

④ 나머지 38명은 지부 및 직할지회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단위별로 조합원 수를 특정값으로 나눈 뒤 반올림. 특정값은 결과값의 총합이 38명이 되도록 맞추는 방식. 특정값=4,800명)

⑤ 후보중앙위원은 조합 부서장 및 여성사업 담당자로 배정하되 순번대로 배정한다.

※민주노총 파견중앙위원 지부별 배정 기준

- 지부별 조합원 수는 2021.11.05. 금속노조 대의원배정 기준 조합원 수

지부명		조합원수	전체 배정	대의원 구분		
				일반	여성 조합원수	여성 할당
경기		8,516	3	2	1,441	1
경남		17,992	4	3	658	1
경주		4,090	2	1	554	1
광주전남		10,079	3	2	682	1
구미		1,145	0	0	116	0
대구		3,074	1	1	356	0
대전충북		4,939	1	1	375	0
부산양산		2,332	0	0	254	0
서울		5,312	2	1	1,655	1
울산		7,197	3	2	597	1
인천		4,994	1	1	349	0
전북		2,230	0	0	181	0
충남		13,519	4	3	443	1
포항		2,553	1	1	15	0
기아차		28,589	7	6	871	1
한국지엠		7,613	2	2	191	
현대차		48,619	12	10	2,336	2
현대중공업		8,386	2	2	298	0
만도		40	0	0	0	0
쌍차		17	0	0	0	0
미편제	현대차 울산비정규직	528	0	0	40	0
	기아차 화성비정규직	645	0	0	329	0
	신일정밀	121	0	0	0	0
합계		182,352	48	38	11,741	10

2.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선출 기준

단위	인원	비고
중집	39명	
지부 배정(일반)	253명	조합원수 비례 배정
여성할당	55명	미전환사업장 여성할당 3명 포함
비정규할당	18명	해당위원회 위임
미전환사업장	0명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합계	365명	
----	------	--

1)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선출 기준은 500명당 1명이며 민주노총 의무금납부 조합원 (2021년 1월 19일 ~ 2022년 1월 10일 평균) 182,440명(미전환사업장 포함)을 기준으로 할 때 금속노조의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은 총 365명임. 민주노총이 금속노조에 설정하는 여성할당 비율(15%)을 기준으로 여성할당 대의원은 55명. 후보 대의원은 20%인 73명임.

2) 이중 민주노총 의무금 납부 기준으로 미전환사업장 조합원 수는 257명(풍기산업 70 / 수산중공업 80 / 삼미금속 107)이므로 대의원은 배정하지 않음.

3) 365명은 지부(직할지회 포함) 조합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정.

① 여성할당 55명은 지부별 여성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지부별로 여성조합원 수를 특정값으로 나눈 뒤 반올림. 특정값은 결과 값의 총합이 55명이 되도록 맞추는 방식. 특정값=147)

② 비정규할당 18명(전체 5%이상)은 비정규위원회로 위임한다.

③ 중앙집행위원 39명을 배정한다.(조합 임원 10명 + 지부장 20명 + 부서장 9명)

④ 나머지 253명은 지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지부별로 조합원 수를 특정값으로 나눈 뒤 반올림. 특정 값은 결과 값의 총합이 253명이 되도록 맞추는 방식. 특정값=788)

⑤ 후보대의원 73명은 지부별 1인씩 총 20명을 지부 이름 가나다순으로 배정한다. 나머지 51명은 지부 인원수에 비례해 배정하되 지부 이름 가나다 순서로 돌아가며 순번을 매긴다.

※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지부별 배정 기준

- 지부별 조합원 수는 2021.11.05. 금속노조 대의원배정 기준 조합원 수

지부명	조합원수	전체 배정	대의원 구분		
			일반	여성 조합원수	여성 할당
경기	8,516	19	12	1,441	7
경남	17,992	28	25	658	3
경주	4,090	9	6	554	3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광주전남		10,079	17	14	682	3
구미		1,145	2	2	116	0
대구		3,074	6	4	356	2
대전충북		4,939	9	7	375	2
부산양산		2,332	4	3	254	1
서울		5,312	15	7	1,655	8
울산		7,197	13	10	597	3
인천		4,994	9	7	349	2
전북		2,230	4	3	181	1
충남		13,519	21	19	443	2
포항		2,553	3	3	15	0
기아차		28,589	44	40	871	4
한국지엠		7,613	11	10	191	1
현대차		48,619	78	67	2,336	11
현대중공업		8,386	13	12	298	1
미편제	현대차 울산비정규직	528	1	1	40	0
	기아차 화성비정규직	645	2	1	329	1
합계		182,352	308	253	11,741	55

□ 울산지부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명단

구분	번호	이름	소속 및 직책
일반	1	최용규	울산지부 지부장
일반	2	황승연	울산지부 부지부장
여성할당	1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 울산지부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명단

구분	번호	이름	소속	직책
정대의원	1	배윤자	현대그린푸드 울산지회(여성할당)	사무장
정대의원	2	박송숙	서연이화지회(여성할당)	여성부장
정대의원	3	지현주	현대글로벌비스울산지회 에프유분회(여성할당)	분회장
정대의원	4	김병훈	덕양산업지회	지회장
정대의원	5	이영석	서연이화지회	지회장
정대의원	6	이종근	에스아이씨지회	지회장
정대의원	7	이상원	고강알루미늄지회	지회장
정대의원	8	박춘성	정명지회	지회장
정대의원	9	박유종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지회장
정대의원	10	오흔도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
정대의원	11	정진희	울산지부	부지부장
정대의원	12	황승연	울산지부	부지부장
정대의원	13	김기호	울산지부	사무국장
정대의원	14	최용규	울산지부(당연직)	지부장

2.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파견대의원 선출기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운영규정(부분)

제14조(당연직 대의원과 대의원 배정기준)

1. 지역본부 운영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2. 대의원수는 각 연맹 지역조직 또는 직가입노조가 포괄하고 있는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하되, 단수가 배정기준수의 과반수 일 때는 1명을 추가한다.
 - ① 조합원 1,000명 미만의 가맹조직은 100명당 1명
 - ② 조합원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의 가맹조직은 1,000명까지는 10명, 그 이상 조합원수에 대하여는 150명당 1명
 - ③ 조합원 2,000명 이상 4,000명 미만의 가맹조직은 2,000명까지는 17명 그 이상 조합원수에 대하여는 225명당 1명
 - ④ 조합원 4,000명 이상 8,000명 미만의 가맹조직은 4,000명까지는 26명 그 이상 조합원수에 대하여는 337.5명당 1명
 - ⑤ 조합원 8,000명 이상 16,000명 미만의 가맹조직은 8,000명까지는 38명 그 이상 조합원수에 대하여는 506명당 1명
 - ⑥ 조합원 16,000명 이상 32,000명 미만의 가맹조직은 16,000명까지는 54명 그 이상 조합원수에 대하여는 759명당 1명
 - ⑦ 조합원 32,000명 이상 64,000명 미만의 가맹조직은 32,000명까지는 75명 그 이상 조합원수에 대하여는 1,138명당 1명
3. 대의원수 배정기준이 되는 가맹조직 및 직가입노조의 조합원수는 정기대의원대회일 30일 부터 거꾸로 1년간 납부한 맴비의 월 평균액에 의한 조합원수를 말한다. 중간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가입기간 납부한 맴비의 월 평균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수를 정한다.

제15조(대의원의 선출방식과 겸직의무)

- ① 가맹조직과 그 가맹조직의 산하조직은 자율적으로 정한 방식으로 지역본부 대의원을 선출하되, 대의원대회 이상의 의결기관에서 선출해야 한다.
- ② 민주노총 중앙 파견대의원은 지역본부 대의원을 겸직한다.

제16조(여성대의원 할당율)

- ① 가맹조직 및 직가입 노조는 당해 조직이 포괄하고 있는 전체 조합원수에서 여성조합원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여성조합원 비율 이상 여성대의원을 선출한다.
- ② 여성조합원 비율이 50% 이상인 가맹조직은 60% 이상 여성대의원과 여성중앙위원을 선출한다.

제17조(대의원의 임기)

- ①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정기대의원대회일로부터 다음 정기대의원대회전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대의원은 운영위원의 직위를 상실 할 때까지를 그 임기로 한다.

제18조(대의원대회의 기능)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직선임원의 불신임 건을 제외하고 총회와 동일

한 권한을 갖는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파견 대의원

- 금속노조울산지부 배정인원: 34명(2022년 1월 맴비납부 조합원수 대비)
- 최용규지부장, 임송라지회장(지역본부 부본부장) 이상 2명은 당연직 대의원
- 울산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파견대의원 정수: 36명

울산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2022년 파견대의원 명단 확정 (안)

1. 11기까지 배정 기준으로 정함(총연맹파견대의원 + 지회장으로 구성)
2. 울산지부 전체 조합원수 대비 여성조합원 수는 12%(910명)
대의원 배정인원에서 여성할당 대의원 수를 22%, 8명으로 정함 (8/36)
 - 1) 일반명부 총 26명
 - 민주노총 파견대의원(13명)은 당연직에 속한다.
 - 16명에 대해서는 지회장중에 배정한다.
 - 2) 여성명부 총 5명(총연맹파견대의원3명)
여성조합원 다수 지회에서 5명 선정
두울지회 1명 / 동남정밀지회 1명 / 말레동현울산지회 1명 /
울산현대모비스지회 1명 / 서연씨엔에프지회 1명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 울산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 본부 파견 대의원 명단

구분		이름	직책	소속	비고
정대의원	1	김영희	여성부장	말레동헌울산지회	여성,지역본부파견
정대의원	2	김미희	인권부장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여성,지역본부파견
정대의원	3	김은영	조합원	동남정밀지회	여성,지역본부파견
정대의원	4	박미경	조합원	서연씨엔에프지회	여성,지역본부파견
정대의원	5	신민서	부지회장	두울지회	여성,지역본부파견
정대의원	6	배윤자	사무장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여성,총연맹파견
정대의원	7	박송숙	여성부장	서연이화지회	여성,총연맹파견
정대의원	8	지현주	지회장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에프유)	여성,총연맹파견
정대의원	9	최병호	지회장	동남지회	지역본부파견
정대의원	10	김민근	지회장	동남정밀지회	지역본부파견
정대의원	11	류재룡	지회장	두울지회	지역본부파견
정대의원	12	황양규	지회장	대흥공업지회	지역본부파견
정대의원	13	김수현	지회장	대륙금속지회	지역본부파견
정대의원	14	김민기	지회장	말레동헌울산지회	지역본부파견
정대의원	15	이용훈	지회장	부국산업지회	지역본부파견
정대의원	16	최명우	지회장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지역본부파견
정대의원	17	윤성만	지회장	서연씨엔에프지회	지역본부파견
정대의원	18	손한락	지회장	서진산업사내하청울산지회	지역본부파견
정대의원	19	정호근	지회장	서진산업지회	지역본부파견
정대의원	20	송기호	지회장	센트랄모텍울산지회	지역본부파견
정대의원	21	김태훈	지회장	SHB사내하청지회	지역본부파견
정대의원	22	전승한	지회장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지역본부파견
정대의원	23	임종환	지회장	한주금속지회	지역본부파견
정대의원	24	안상호	지회장	현대모비스물류지회	지역본부파견
정대의원	25	김병훈	지회장	덕양산업지회	총연맹파견
정대의원	26	이영석	지회장	서연이화지회	총연맹파견
정대의원	27	이종근	지회장	에스아이씨지회	총연맹파견
정대의원	28	이상원	지회장	고강알루미늄지회	총연맹파견
정대의원	29	박춘성	지회장	정명지회	총연맹파견
정대의원	30	박유종	지회장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총연맹파견
정대의원	31	오흔도	수석부	울산지부	총연맹파견
정대의원	32	황승연	부지부장	울산지부	총연맹파견
정대의원	33	정진희	부지부장	울산지부	총연맹파견
정대의원	34	김기호	사무국장	울산지부	총연맹파견
정대의원	35	최용규	지부장	울산지부	지역본부임원(당)
정대의원	36	임송라	지회장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지역본부임원(당)

의결주문

제출 된 울산지부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오.

금속노조 울산지부 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규정 27조(임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2. 수석 부지부장 3. <u>부지부장 2명</u> 4. 사무국장	규정 27조(임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2. 수석 부지부장 3. <u>부지부장 3명</u> 4. 사무국장

※해설 및 경과

- 울산지부 조합원 확대에 따른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지부 임원(부지부장) 배정 규모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 됨

- 6차 지부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부지부장 정수를 1명 추가해서 3명으로 개정하는 안을 지부 정기대의원 대회에 상정하기로 함

- 부지부장 선출 인수를 약간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과거 부지부장 선출 정수를 약간명으로 했을 때 선출규모에 대한 이견이 자주 발생하여 2명으로 부지부장의 숫자를 고정했던 점을 감안.

이후 울산지부 조합원수 확대에 따른 전망을 미리 고려해서 지부 조직운영에서 부지부장 선출 정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기로 하였음.

의결주문

감사위원을 선출해 주십시오.

울산지부 감사위원 선출 규정

제5절 감사위원회

제25조(감사위원회)

1. 지부 감사위원회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5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부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지부 및 지회 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3.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4. 분기별 감사 결과를 지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 승인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5. 지회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회 감사는 지부 감사와 타 지회 선임 감사, 해당 지회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울산지부 감사위원 선출 관련 경과

- 울산지부 조직확대에 따른 원활한 사업 및 회계 감사를 위해서 12기 울산지부 감사위원은 3명으로 선출할 것을 7차 울산지부 운영위원회(2022.02.21.)에서 논의, 결정하였음
- 2022년 3월 2일 감사위원 선거공고, 3월 8일 14시까지 아래 3명의 동지들이 감사위원으로 입후보 하였음.

울산지부 12기 감사위원 후보

기호	성명	소속 지회	약력
1	고 봉 철	서연씨엔에프지회	-서연씨엔에프지회 1~3기 사무장
2	김 주 환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3~5기 사무장 - 10기 울산지부 감사위원 - 11기 울산지부 감사위원
3	이 상 순	한국프랜지지회	- 10기 울산지부 감사위원 - 11기 울산지부 감사위원



의결주문

별지로 제출 된 결의문을
채택해 주십시오.

의결주문

기타안건

참고자료

울산지부 규정

울산지부 규정

제정: 2001년 3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30일
개정: 2008년 3월 3일
개정: 2016년 12월 5일
개정: 2020년 4월 20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31조와 제47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라 한다.

제3조(사무소) 울산지부의 사무소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울산지역본부 사무실 내에 두도록 한다.

제4조(설치) 울산지부는 지역지부로서 울산광역시 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활동) 지부는 조합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지부 총회,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 집행
- 조합, 산하 지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 지부 단위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2장 조직

제6조(구성)

- 지부는 울산지역 내의 금속노동자로서 금속노조에 가입한자로 구성한다.
- 사업장 단위 지회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지부 소속으로 한다. 단, 사업장 단위 이하의 단위(영업소, 사업소 등) 혹은 독자 지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회 이하의 단위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 이전의 본조 소속으로 할 수 있다.

3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8조(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2. 지부의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9조(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감사위원회
7. 기타 규약에 규정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절 총회

제10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대회의 의결 혹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소집공고)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 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0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3.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4. 잠정합의안 가결

제2절 대의원대회

제13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는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회단위 조합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2. 정기대의원대회는 조합 정기대의원대회 후 3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 3) 전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총회소집공고에 준한다.

제15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대의원 배정기준)

1. 대의원 배정은 다음과 같이한다.
 - 1) 조합원 수 600명 미만인 지회는 20명당 1명을 선출하고 단수 11명을 적용한다.
 - 2) 600명 이상 1200명 미만 사업장은 30명당 1명을 선출하고 단수 16명을 적용한다.
2. 지회 임원과 지회 집행위원을 제외하고 지부 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

제17조(대의원 소환) 지부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 단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지부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 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18조(대의원대회 기능)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부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지부 임원
2. 지회장
3. 1항, 2항을 최소범위로 하고 지부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인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제20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1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포상 및 징계결의 요청에 관한 사항
2. 조합 대의원, 지부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확정에 관한 사항
3. 지부 규칙해석에 관한 사항의 1차 기관이 된다.)
4. 지부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5. 신분보장 심의와 건의에 관한 사항
6. 조합 쟁의기금 요청에 관한 사항
7. 지부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교섭과 쟁의에 관한 사항
9.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2조(구성) 집행위원회는 임원, 각종 위원회 대표자,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그 임무는 별도로 정하는 처무규칙에 의한다.

제23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3. 각종 회의 상정할 안건 및 회의 준비
4.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지부 및 지회의 쟁의에 관한 사항
6. 제반 지부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부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8.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제5절 감사위원회

제25조(감사위원회)

1. 지부 감사위원회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5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부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지부 및 지회 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3.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4. 분기별 감사 결과를 지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 승인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5. 지회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회 감사는 지부 감사와 타 지회 선임 감사, 해당 지회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부의 선거를 관리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한다.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제5장 임원

제27조(임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2. 수석부지부장
3. 부지부장 2명
4. 사무국장

제28조(임무)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 3)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4) 지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 5)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6) 지부 사무국 각부.차장의 임면 제청권을 갖는다.
 - 7)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12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 3)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 4) 감사에 응한다.

제29조(선출) 지부 임원 중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부지부장 선출은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30조(임원의 보궐선거)

1. 지부 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0기 임원 임기는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임원의 탄핵)

- ①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각 선출 기간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 ② 탄핵소추는 선출기관 성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선출기관 성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3조(단체교섭) 지부의 단체교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지부단위 교섭의 교섭권과 협약 체결권을 갖는다.

제34조(단체협약의 체결) 지부의 단체협약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부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35조(쟁의) 지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기타

제36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부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37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75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38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지부운영규칙) 지부는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부운영에 관한 지부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경과조치)

1. 이 규정은 신설되는 지역지부에 우선 적용된다. 기존의 기업단위 노조가 지부로 전환하는 경우는 규약을 우선 적용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조합 규약과 지부 모범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개정하도록 한다.
2. 지회장의 중앙위원 배정
 - 조합원 수가 10,000명 이상인 지회의 경우 지회장을 중앙위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3. 지회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은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단,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에 위배되는 지회운영규칙사항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 순으로 적용한다.
4. 지부 대의원 배정기준
 - 규정 제16조는 지회 규칙 제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지부 대의원의 배정은 '지부 대의원 수 확정을 위한 배정기준'에 따른 대의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지부 운영규칙으로 세부 배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